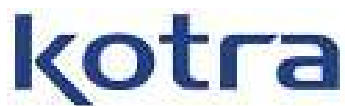


뉴질랜드

정보수정일자: 2009. 12. 31

작성처: 오클랜드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1
- 정치사회동향 /2
- 한국과의 주요이슈 /7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8
- 주요 산업 동향 /11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20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24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5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27
 - 대한수입규제동향 /31
 - 관세제도 /33
 - 주요인증제도 /34
 - 지적재산권 /37
 - 통관운송 /38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40
- 외국기업 투자동향 /46
- 우리기업 투자동향 /49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52
- 진출형태별 절차 /56
- 투자입지여건 /59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61
- 조세제도 /65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66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69
- 물가정보 /70
- 바이어발굴 /71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73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76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77
- 이주정착 가이드 /78
- 출장가이드 /83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102
- 유관기관 웹사이트 /105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명	뉴질랜드(New Zealand)
위치	대양주 남단
면적	270,534 km ² (남한의 2.7배) (북섬 11만 6,000 km ² , 남섬 15만 1,000km ²)
기후	온난해양성 기후(1월 평균 20도, 7월 평균 11도)
수도	웰링턴(Wellington) - 1865년 오클랜드에서 천도
인구	4,306천 명(09년 4월)
주요 도시	Auckland(131만), Christchurch(38만), Wellington(38만), Hamilton(19만)
인종	유럽인 250만(70%), 마오리 52만(15.8%), 아시아인(7%), 폴리네시아인(6.5%), 기타(0.7%)
언어	영어, 마오리어(원주민어)
종교	기독교 약 51% ('86년 73%), 비기독교 5% (86년 1.4%) -성공회 14%, 가톨릭 13%, 장로교 10%, 감리교 3%
건국일	1840. 2.6 (영국 총독과 마오리 대표간 Waitangi 조약 체결)
정부 형태	의원 내각제
국가 원수	영국 Queen Elizabeth II
수상	John Key (국민당 당수)

나. 경제 지표

GDP	US\$ 1,264억
경제 성장률	-1.0%
1인당 GDP	US\$ 26.8천
실업률	4.2%
소비자 물가상승률	1.9%('09년 6월)
화폐단위	NZ Dollar(NZ\$)
환율	NZ\$1 = US\$0.637 (2009년 6월 평균)
외채	US\$ 591억
외환 보유고	US\$ 203억
산업 구조	1차 산업(6.7%), 제조업(14.9%), 전기수도(1.8%), 건설(4.8%), 도소매 숙박(16%), 교통, 통신(10.5%) 금융-비즈니스 서비스(25.3%), 사회 서비스(11.7%), 기타(8.3%)
교역 규모	US\$ 650억 (수출 US\$ 306억, 수입 US\$ 344억)

자료: EIU 2009. 6월 ('08년 기준), World Trade Atlas

다. 주요 교역 품목

수 출	낙농 제품, 육류, 목재, 양모, 수산물
수 입	기계류, 전기전자, 차량, 원유, 철강, 플라스틱

라. 한-뉴질랜드 관계

특수 관계	1950년 한국전에 뉴질랜드 군인 6,020명이 참전, 45명이 전사함. 북한과는 2001.3.26 수교하였으나, 대사관을 설치하지는 않았음.
체결 협정	대사급 수교('62),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67.7), 어업협정('78.3) 국제운수소득 면세협정('78.12), 이중과세 방지협정('81.11) 항공협정('93.8), 사증 면제협정('94.8), 임업협력 협정('97.4), 과학기술 의정서('97.9), 취업관광사증 협정('99.5), 형사사법 공조협정('00.3), 방산물자 품질보증 약정('00.11), 범죄인 인도조약 ('01.5), 영화공동제작 약정 ('05.11) 경찰협력약정('06.6), 농림부간 협력약정('07.4)
무역 규모	한국 수출 US\$ 9억 1,660만, 한국 수입 US\$ 9억 7,945만('08)
교역 품목	한국의 수출: 석유제품,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철강 한국의 수입: 목재, 육류, 축산가공품, 기타석유화학
투자 교류	우리나라는 2009년 상반기 말 기준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및 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총 신규법인 수 250건 US\$184,267천 규모의 대뉴투자를 함(신고기준으로는 총 441건, US\$318,825천). 뉴질랜드는 2009년 상반기 말 기준 치즈 제조업을 중심으로 식품 제조업과 전기 및 전자, 도소매업 등 66건 US\$ 38,179천의 대한 투자 실적 (신고기준)을 기록하고 있음
교 민	2006년 3월 실시한 인구 통계 조사(5년 주기)에 의하면 뉴질랜드 교민 은 모두 30,792명으로, 2001년도 조사 시의 19,096명에 비해 61.8% 증가한 수치를 보임. 이는 뉴질랜드 내 아시안 인구 중 중국(147,570명) 과 인도 (104,583명)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것이며 전체 인구의 약 0.7% 를 차지하는 비율임

2. 정치 사회 동향

가. 국가 조직

1) 행정부

뉴질랜드는 연방이 아닌 단일국가(Unitary State)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부가 따로 없는 중앙정부-기초 지방단체의 2원 정부체제(Two-Tier System)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원제의 의원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원 내각제로 3년마다 실시되는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며 수상이 임명한 의원이 각료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장관들은 정부 의사결정의 주도 역할을 하며 국무위원들은 정책 입안 및 정부주도의 법률안 제출과 행정 관장 및 세출 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사무차관(Chief Executive) 제도를 도입하여 장관(Minister)은 의원이 겸직하고 실무는 사무차관이 담당하고 있다. 지방 행정조직은 12개 Region, 15 개의 City, 59개의 District (74개 Territorial Authorities)로 각각 지방의회(Council)가 있으며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 사법부

뉴질랜드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한 상소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등 4심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 특정분야의 법률문제를 다루는 특수법원으로 Small Claims Tribunal, Labor Court, Maori Land Court, Children & Young Persons Court, Family Court Division, Dispute Tribunal 등이 있다.

판사는 우리와 달리 변호사로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정의 추천 절차를 거쳐서 임용하며 실제로는 최소 15년 이상 변호사 경험이 있는 자들이 임용되는 게 관례화되어 있다.

뉴질랜드에는 한국과 같은 검찰청이 따로 없고 수사권은 경찰에 일임되어 있으며, 정부 기관의 법률 업무는 왕실 변호사(Crown Solicitor)란 기관이 담당하며 수사권은 없다. 다만, 한국적인 의미에서의 검사 역할, 즉 기소 변호사(prosecutor)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한 변호사 사무실이 그 업무를 맡아 하게 된다.

우리와는 달리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의 기능인 정부에 대한 최대의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의회

단원제 의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용하고 있고 총선은 3년마다 실시되고 의원 정수는 120명이다. 다만, 2006-2008 회기에는 특수 사정상 121명으로 운영되었다.

의원 선출은 MMP(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1890년 이후 오랜 정당 정치 역사를 반영한 것으로 초기에는 자유당과 혁신당이 집권한 바 있으며, 현재는 노동당과 국민당(자유당과 혁신당 통합)이 교차 집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총선은 3년마다 비밀투표로 실시되며 18세 이상인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1년 이상 거주)는 누구나 투표가 가능하며, 유권자들은 정당에 한 표, 선거구의 후보자에게 한 표씩을 행사하는 혼합비례선거제도(MMP;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를 채택하고 있다.

전국구 의석 배분은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하나라도 배출하거나, 정당투표에서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득표율에 비례하여 전국구 의석을 할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2008.11.8일 실시된 38대 총선에서는 국민당이 45%의 지지를 얻어 58석을 차지하고 노동당은 34%의 지지를 얻어 43석을 차지하였으며, 그린당 7%(9석), 행동당 3.7%(5석), 마오리당 2.4%(5석), 연합미래당 0.87%(1석), 진보당 0.9%(1석)으로 결정되었다.

국민당은 이로서 자체 58석과 국민당과 연합할 행동당(5석), 연합미래당(1석)를 포함해 64의석을 차지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는데 이번 총선의 특기 사항은 외국인 이민에 반대해 온 New Zealand First Party가 정당득표율 4%에 이르나, 지역구 당선자가 전무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하나도 배정받지 못해 국회진출이 좌절되었다는 것이다.

의회구성은 의장(Speaker), 부의장(Deputy Speaker), 위원회 전체의장(Chairman of Committees), 사무총장(Clerk of the House), 정무장관(Minister of State) 그리고 18개에 달하는 분과 위원회(Select Committee)로 되어 있다.

나. 정치 제도

1) 정치 체제

뉴질랜드는 의원내각제 국가이나 일부 영연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명목상 국가원수는 영국 여왕 Queen Elizabeth 2세가 겸임하는 입헌군주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국가원수는 뉴질랜드 각의의 제청에 따라 임명되며 임기 5년의 총독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형식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뉴질랜드 총독(Governor-General)은 2006년 8월 취임한 아난드 사티아난드(Anand Satyanand)로 최초의 유색인 총독이다.

2) 선거 제도

개별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및 전국구 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매 3년 마다 총선이 있고 현재의 집권당인 국민당은 2008. 11. 8 총선에서 승리하여 9년 만에 집권에 성공했다.

선거권은 뉴질랜드 국적/영주권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1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한 모든 만 18세 이상의 사람에게(단 1개월 이상 해당지역 선거구에서 거주해야 함) 부여되고,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가진 시민권자(영주권자 제외)에게만 부여된다.

3) 의회 민주주의 전통 유지

1852년 영국의 의회는 The New Zealand Constitution Act를 제정함으로써 뉴질랜드 의회 민주주의 기초를 다지는 초석이 된 바 있으며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통해 국정이 운영되고 있고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바 있다.

불문법 국가로 성문헌법은 없으며 New Zealand's Constitution Act 1986 이외에 영국법률(Imperial Acts)과 역사적인 성문법(Magna Carta, Habeas Corpus Act 1679 등)이 헌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영국법률들은 뉴질랜드 국내법 Imperial Laws' Application Act 1988에 열거되어 있다.

4) 의회구성 (Parliament 또는 House of Representatives)

임기 3년의 단원제 및 비례대표제로 구성되어 있고 의석 총수는 120석(지역구 67석, 전국구 53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식 소선거구제에서 92년 9월 및 93년 11월 국민투표를 거쳐 현행 지역 비례혼합 대표제(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약칭 MMP)를 도입하였다.

정당별 득표 및 의석 확보 현황(2008년 총선 결과)

정당 명	정당 득표	지지율	지역구	전국구	총 의석
National Party	1,053,398	44.93	41	17	58
Labour Party	796,880	33.99	21	22	43
Green Party	157,613	6.72	0	9	9
ACT New Zealand	85,496	3.65	1	4	5
Māori Party	55,980	2.39	5	0	5
Jim Anderton's Progressive	21,241	0.91	1	0	1
United Future New Zealand	20,497	0.87	1	0	1
New Zealand First Party	95,356	4.07	0	0	0
기타 11개 군소정당	58,105	2.47	0	0	0
총계			70	52	122

자료: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 (www.elections.govt.nz)

5) 정당 제도

각료 명단

구 분	장 관 명	부 처 명
국무위원	John Key Bill English Gerry Brownlee Simon Power Tony Ryall	총리 (문화, 예술, 정보부 겸직) 부총리, 재무, 기간시설 경제개발, 에너지/자원, 럭비월드컵(부) 법률, 정의, 상업, 기업, 재정(부) 보건, 국무
	Dr. Nick Smith Judith Colins Anne Tolley Christopher Finlayson David Carter	환경, 기후변화, ACC 경찰, 교정, 퇴역군인 교육, 대학교육, 교육심의 와이타이조약, 예술, 문화와 유산 농업, 생물안전, 산림
	Murry McCully Tim Groser Dr. Wayne Mapp Steve Joyce Hon. Georgina te Heuheu	외교, 스포츠/레크레이션, 럭비월드컵 무역, 보존, 외교(부), 기후변화(부) 국방, 과학/기술, 경제개발(부), 대학교육(부) 교통, 정보통신, 재정(부), 기간시설(부) 재판, 퍼시픽아일랜드, 군축, 무기통제, 마오리(부)
	Paula Bennett Phil Heatley Pansy Wong Dr. Jonathan Coleman Kate Wilkinson	사회개발, 고용, 장애인, 청소년 어업, 주택 소수민족, 여성, ACC(부), 에너지/자원(부) 이민, 관광(부), 보건(부) 노동, 식품안전, 이민(부)
비 국무위원	Maurice Williamson Nathan Guy John Carter	건축, 관세, 통계, 중소기업 내무, 지리정보, 문서기록보관, 국립도서관, 정의(부) 민방위, 노인, 경주, 지자체(부)
연립정당 각료	Rodney Hide Heather Roy Dr. Pita Sharples Tariana Turia Peter Dunne	지자체, 규정개정, 상업(부) 소비자, 국방(부), 상업(부) 마오리, 교정(부), 교육(부) 커뮤니티와 자원봉사, 보건(부), 사회개발과 고용(부) 세무, 보건(부)

주: *** 국무위원(장관의 직함이 부처 명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자료: 내각부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2009년 9월 기준)

양당체제로 운영되며 여타 군소정당이 있고 지난 1996년 10월 총선에서 비례대표제(MMP)가 도입되어 국민당과 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하던 양상에서 탈피, 군소정당과 연계한 연립정부 구성이 계속되고 있다. 주요 정당인 노동당과 국민당의 성향은 노동당의 경우 중도 좌파 성격이며 국민당은 중도우파 성격을 보이고 있다.

6) 국회 조직

- 의장(Speaker): Jonathan Hunt(노동당)
- 사무총장(Clerk of the House): David McGee
- 정무장관(Leader of the House): Michael Cullen
- 14개 상임위원회(Select Committee)
 - Commerce / Education and Science / Finance and Expenditure /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 Government Administration / Health / Justice and Electoral / Law and Order / Local Government and Environment / Maori Affairs / Primary Production / Regulations Review / Social Services / Transport and Industrial Relations

다. 국내정치 동향

현 국민당 정부는 2008년 11월 8일 집권에 성공함으로써 9년 여에 걸친 노동당의 집권을 종식시켰으며 정부 출범 후 100일 계획을 발표, 노동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0일 계획의 일부로 내세운 정책 중 일자리 나누기 운동이라 할 수 있는 2주 9일 근무제의 도입이 있는데, 이는 통상 2주에 10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하루를 쉬게 하고 하루치 급여를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써 1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00인 이상 사업장이 전국 1600개에 불과한 실정이라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배 우선을 원칙으로 했던 노동당 정부와 달리 전통적으로 성장을 우선시해온 국민당 정부는 이외에도 도로 및 학교 건설, 초고속 광통신망 확충 사업 등의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데, 정권 초기임을 감안한 듯 여론도 별다른 반발은 없는 상황이며, 주요 야당인 노동당도 9년 집권 후의 공백기를 맞아 내부 결집을 강화하는데 우선하고 있어 정치적 이슈는 현재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라. 사회동향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뉴질랜드 역시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서 한때 모기지 세일이라 불리는 경매에 부쳐지는 주택이 급증했으나 최근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인하로 인한 모기지 대출이자의 하락으로 다소 안정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하락과 주택대출 금리의 하락으로 2008년 말 3.5%에 이르렀던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많이 줄어들어 2009년에는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민당 선거공약 중의 하나였던 개인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서민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5%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던 실업률은 2009년 최고 8%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사회불안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근무시간 단축제도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기존의 사회복지 정책이 후퇴하거나 축소될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회는 매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뉴질랜드 FTA 협상

2009년 3월 3일~4일 이틀에 걸친 이명박 대통령의 뉴질랜드 국민방문 시 뉴질랜드 존 키 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공식 개시가 선언되었고 이에 따라 6월에 1차 협상(8-12일)이 서울에서 열렸으며, 2차 협상은 9월(14-18일)에 웰링턴에서 개최되었다.

2007년 11월 완료된 한-뉴 민간공동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대뉴수출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등이며, 대뉴수입은 목재류, 육류, 축산가공품 등 1차 산업제품으로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어 FTA 체결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남반구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한국과의 농산물 재배시기 역시 정반대로서 우리 농업에 주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더구나 쌀 등 곡물의 생산이 없고 키위, 낙농 등 오히려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큰 농업분야가 많다고 할 수 있어 이미 양국 농림부간 협력약정이 체결되어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한·칠레 FTA, 한·미 FTA 및 쇠고기 협상의 타결로 대한민국 수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상이 공식적으로 개시됨에 따라 늦어도 2010년 중반까지는 타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뉴질랜드가 중국과 2008년 4월 FTA를 체결하면서 주요 수출 공산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신속한 타결이 예상되고 있다.

나. 영화산업협력 강화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방문 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대성그룹이 New Zealand Institute of Screen Innovation(NZISI)과 양해각서를 체결, 향후 영화제작 전반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양국간 최초 공동제작 영화인 '소울메이트'의 제작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

뉴질랜드는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인 '반지의 제왕' 및 '킹콩'의 특수효과와 컴퓨터 그래픽을 담당한 웨타스튜디오의 기술력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촬영지로서 각광받고 있는데 이미 다수의 한국 방송 및 영화가 뉴질랜드에서 후반 작업 및 로케이션 촬영을 해오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자국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5년 헬렌 클락 수상의 방한 시 양국 정부와 방송위원회는 실질적인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 2006년부터 매년 우리나라의 방송 기술자 및 프로듀서를 대상으로 후반작업 및 기획과정에 대한 뉴질랜드 현지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다. 교역 규모 및 무역 구조

양국 교역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지닌다. 우리나라가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97년 기준 양국 교역량은 10억 달러에 달했으나 '98년 아시아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잠시 감소하였다가 이후 점차 회복하였다.

2008년 기준 한국의 대뉴 수출은 8억 2,480만 달러로 뉴질랜드의 10대 수입 대상국이며, 대뉴 수입은 11억 2,170만 달러로 뉴질랜드의 6대 수출 대상국이다.

라. 교역 품목

우리나라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은 목재와 낙농 제품, 육류 등 1차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출 품목은 자동차, 전기 전자 제품을 비롯한 공산품이 주류를 이루는 보완적 교역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입 품목은 목재와 원목, 알루미늄, 양피, 펄프, 카세인, 치즈, 어류, 가죽, 소고기, 양모 등이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철강, 화학 제품, 자동차, 타이어, 전자통신 제품, 컴퓨터, 종이, 플라스틱 원료, 가전 제품, 중장비, 섬유 등이 주류를 이룬다.

마. 반덤핑 규제

현재 반덤핑 규제를 우리나라 제품은 없으나, 과거 2001년 6월 냉장고 및 세탁기, 2005년 1월 오일필터 등 3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받은 사례가 있다.

냉장고 및 세탁기의 경우 2006년 6월로 5년간 지속되어 왔던 규제 기간이 종료되었고 덤핑 제소 업체의 추가 제소가 없어 반덤핑 규제가 해제되었으며, 오일필터는 2006년 12월 뉴질랜드의 현지 생산 업체가 문을 달음으로써 자동적으로 반덤핑 규제가 해제되었다.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 성장률

2000년대 초 수년 간의 호황 이후, '05, '06년에는 경기 순환적인 성장 둔화가 있었다. 그러나 2007년에는 국제 낙농 제품 시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원유 수출도 급증하여 세계 경제 위축에도 불구하고 3.2%라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시현하였다.

2008년 상반기 EIU는 뉴질랜드 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기 위축에 따라 1.8%로 예상했으나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2008년 최종 경제성장률은 -1.0%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09년에는 더욱 하락, -2.6%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IU, 2009년 7월 Country Report)

나.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은 2006년 3.4%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2007년 들어서 금리를 각각 0.25% 포인트씩 네 차례나 인상한 바 있다.

금리 인상에 따라 2007년 물가 상승률은 2.4%로 안정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이 상승하여 급매물 부동산이 출시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타면서 소비자의 지갑을 닫게 만드는 악순환이 야기된 바 있다.

2008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침체와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금리를 '08.7~'09.4월 기간 중 3%로 대폭 인하 했으며 이에 따라 물가도 2009년 6월 기준 1.9%를 나타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 환율

뉴질랜드는 1985년 환율 변동제를 도입하였는데, 2005년 미 달러 대비 NZ\$ 0.68 수준의 환율이 2007년 말 NZ\$ 0.77까지 올랐다. 2008년 3월 한때 NZ\$ 0.81까지 치솟았으나, 하반기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때 NZ\$0.5 수준으로 급락 후 점차 반등하여 2009년 9월 14일 기준 NZ\$ 0.70을 기록하고 있다.

EIU는 뉴질랜드 금융 당국이 이자율을 2009년 말에 1.8% 수준까지 인하할 것이며, 이에 따라 뉴질랜드 달러화의 대미 환율도 2009년 말에는 NZ\$ 0.45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80년대 이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06년 -US\$ 94억, '07년 -US\$ 106억, '08년 역시 -US\$112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동 적자 규모는 GDP의 약 8%를 차지하는 수치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2009년 7월 EIU 전망치에 따르면, 2009년도 경상수지 적자 역시 GDP의 6.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 수출

2007년 수출은 '06년 대비 20.1%가 증가한 US\$ 269억에 이르렀고, '08년에는 US\$ 305.8억으로 '07년 대비 13.4%가 증가했다. 호주가 최대 수출 대상국이며, 전통적인 교역국인 미국, 일본과 중국, 한국, 영국에 대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최대 수출품인 치즈, 분유 등 낙농 제품은 US\$ 66억으로 전체의 21.4%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육류 제품(소, 양), 광물연료, 목재류 순으로 수출된다. 호주에 전기, 전자 제품을 비롯하여 원유, 금 등이 수출됐으며 낙농품은 필리핀, 일본, 호주 등에, 양고기는 유럽, 냉동 쇠고기는 미국, 영국, 독일 등에 주로 수출된다. 2008년 동남아로의 수출 급증은 낙농품 수출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바. 수입

2007년 총 수입액은 '06년 대비 16.8% 증가한 US\$ 308억이며, '08년 수입액은 '07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US\$ 343.6억을 기록했다. 2008년도 주요 수입국을 보면 호주가 US\$ 62억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US\$ 45억), 미국(US\$ 32억), 일본(US\$ 28억)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최대 수입 품목은 원유, 정제유 등 광물 연료로 전체의 17.8%인 US\$ 61억이 수입됐으며 다음이 기계류 제품(US\$ 44억), 자동차(US\$ 36억), 전기 제품(US\$ 28억)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중 광물 연료 수입액은 US\$ 61.1억으로 '07년 동기 대비 3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 금융위기에 따른 정부의 경기부양책

뉴질랜드 정부는 국내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2009년 4월 1일자로 개인소득세 감면을 실시했으며, 단기 부양책으로 국가 인프라 투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휴일제도(tax holiday)의 도입도 추진 또는 계획 중이다.

특히 지난 5월에 발표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5억 뉴달러 규모의 자금을 전국의 학교 시설 개선, 임대주택 보급 및 도로망 확충 등에 배정, 국가 기간시설 확충을 통한 경기부양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8% 가까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업률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 운동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2주에 9일 근무하기 제도를 도입, 종업원수 100명 이상인 전국 1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 중이다.

이 제도는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2주 중 하루를 쉬면서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서 정부 경기부양책의 주요 제도로 떠올랐으나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수 자체가 적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은행 역시 8.5%('08년 6월)에 달하던 기준금리를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4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를 통해 2.5%로 낮추며 경기부양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과 주택 구매물이 줄어드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향후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어 2009년 말 1.8%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으나 이럴 경우 미 달러화에 대한 뉴질랜드 달러의 가치하락이 가속화되어 수입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

'09년9월7일 재무부가 발표한 월간 경제지수 보고서는 2/4분기가 경기위축의 마지막 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3/4분기에는 소폭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회복 전망은 세계경기회복과 함께 이민의 증가로 인한 인구유입,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한 소비자 신뢰지수 등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따라 지난 2/4분기 9년 이래

최고치인 6%를 기록한 실업률 역시 최초 전망치인 8%에서 소폭 개선된 7.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가계 부채율과 둔화된 임금인상률 등이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는 요소이며, 낮아진 모기지 금리로 인한 주택 투기의 증가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뉴질랜드 산업 구조 및 특성

GDP by Industries

대분류	소분류	비중	
1차 산업	농업	5.03	7.28
	임업,광업,수산업	2.25	
2차 산업	제조업	12.54	18.72
	전기,수도,가스	1.78	
	건설업	4.40	
3차 산업	도매업	7.09	74.00
	소매업,숙박,요식업	7.40	
	교통,통신업	10.37	
	금융,보험,사업중개업	28.50	
	재정 및 국방	5.01	
	개인 및 공동체 서비스	12.61	
	기타	3.02	
합계		100.0	

주: '09년 3월 기준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이상적인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목축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선진 낙농 국가이다. 전 국토의 54%가 목초지, 28%가 삼림, 5%가 경작지, 기타 13%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업은 1978년에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한 바 있다.

목축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과 임업 등 1차 산업이 산업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양고기, 소고기, 양모, 낙농 제품 및 가죽 등을 생산하여 국내 소비는 물론 해외 수출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수출 주종 품목을 이루고 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양과 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사슴, 염소, 타조, 라마 등의 사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원예 작물도 수출 품목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의 증가가 눈에 두드러지고 있으며 굴, 홍합, 전복, 대형 새우 등을 양식하는 양식업도 유망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수출에서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반면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GDP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며,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농업 보조금이 없으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여타 국가의 제품들과 겨룰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강한 농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 1995년 발효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 협정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농산품 및 수출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크게 축소하고 있어 뉴질랜드 수출 품목의 해외 시장 수출 기회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뉴질랜드 통계청의 2009년 1/4분기 자료에 의하면, 산업별 GDP 구성은 1차 산업이 7.3%, 2차 산업이 18.7%, 3차 산업이 7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주요 산업 정책

주요 산업인 농업과 축산업 등을 관장하는 정부 기관은 농림부((MAF: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로 1998.3.1 부로 뉴질랜드 농업부와 임업부가 통합되어 새로 출범하였다. 주요 임무는 경제 성장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사람과 동물, 식물의 건강과 안전 및 자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뉴질랜드는 농업 등 1차 산업이 경쟁력이 있는 반면 제조업은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어려운 점을 인식하여, 중공업이나 경공업 등 제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생명공학, 정보통신, 영화 분야 등 환경 훼손이 적고 자국의 경쟁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에 따라 과거 국민당 시절에 관세 인하 및 조기 철폐 정책 추진으로 빈약한 구조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폐쇄하는 사례가 많았다. Toyota, Ford, Honda, Mazda 등의 자동차 조립 공장도 자동차 수입 관세 철폐로 97년 이후 4개 공장이 모두 폐쇄되어 약 2만여 명의 실직자를 양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뉴질랜드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최대 가전 제품 생산 업체 Fisher & Paykel 사마저 2008년 10월 세탁기 제조공장을 태국으로 이전하였으며, 냉장고 사업 부문 역시 2009년 상반기 태국으로 이전을 완료, 8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등 몇 안 되는 대형 제조업체들의 공장 해외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어 실업률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다. 주요 산업 동향

뉴질랜드 경제는 2001년 하반기부터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2004년 말까지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테러 등 관광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변수에도 불구하고 이민자가 증가했고, 제조업과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업이 호조를 띄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 경제 성장률이 4%를 넘어선 바 있다.

이와 같은 성장은 수출 부문에서 낙농 제품, 육류, 목재 등 주력 수출 품목이 10% 이상 증가한 것에 기인하였으며, 내수 부문에서는 주택 경기 활황에 따른 건설업과 관광업 등 서비스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들어 이민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고환율이 수출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실질 경제 성장률이 2.8%로 내려 앉았으며 2006년 말에는 2.2%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6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내수 경기가 활황을 맞고 국제 낙농 제품 시세가 급등하면서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증가하여 2007년에는 3.4%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2008년에는 고유가, 고환율 및 하반기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성장률이 주저앉아 -1.0%를 기록했으며 2009년에는 더욱 내려간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7. EIU Country Report 추정)

라. 광물 및 에너지 산업

뉴질랜드 에너지 산업은 뉴질랜드 GDP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8,000명의 고용 인력으로 총 고용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는 자급자족이 가능하며 에너지 자급률은 70%에 달한다.

주요 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보면 석유 48%, 전기 27%, 석탄 7%, 가스 8% 등이며 풍력 및 지열 등 재생 에너지가 기타 에너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력 생산현황

(단위: 기가와트)

		2007				2008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재생에너지	수력	6,058	5,332	6,214	5,801	5,270	4,764	6,132	5,926
	지열	784	799	876	895	849	878	1,127	1,109
	풍력	146	200	283	291	258	221	264	304
	목재	78	79	74	83	84	78	74	82
	바이오가스	52	51	52	53	49	50	52	51
	소계	7,119	6,460	7,499	7,122	6,509	5,991	7,648	7,471
화력	가스	1,970	3,178	3,273	2,706	2,449	3,072	2,640	1,849
	석탄	766	978	595	590	1,020	1,611	1,081	735
	석유	0	0	0	0	26	96	0	1
	재생열	18	12	12	12	12	12	12	12
	소계	2,721	4,168	3,881	3,308	3,506	4,791	3,733	2,596
총계		9,840	10,628	11,380	10,430	10,015	10,782	11,381	10,067
재생에너지 비율		72%	61%	66%	68%	65%	56%	67%	74%

자료: 경제개발부

30개 지역에 산재한 124개의 수력 발전이 전력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한 바 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4년 기준 64.7%로 떨어진 상태다. 수력 발전은 지형 구조상 낙차가 크고 유속이 빠른 남섬에 집중되어 있다.

남섬에는 80여 개의 댐이 있고 북섬에는 중부 지역의 타우포와 와이카토 강에 편중되어 있다. 가장 큰 수력 발전소는 남섬의 MANAPOURI 발전소로 600MW 급으로 연간 38억 8,700만KW의 전력을 생산한다. 남섬에서 생산된 전력은 해저 케이블을 이용하여 수요가 많은 북 섬으로 공급된다.

화력 발전소는 9개 지역에 45개소가 가동 중이나 점차 쇠퇴 일로에 있고, 지열 발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력 수요의 약 18%(2008년 기준)를 충당하고 있다. 지열 발전소는 북섬 중부 지역의 타우포, 로토루아 지역에 위치하며 가정용 전력으로 사용되는데 1958년 건설된 와이라케이 발전소와 1989년 건설된 OKAIE 발전소가 있다.

전력 생산은 Meridian, Genesis, Mighty river power 등 3개 공기업(SOE)과 Contact, Trust Power 등 2개 민간 기업이 하고 있다.

석유는 북섬 남서부 해안 돌출부에 소재한 타라나키에서 생산되며 전체 소비량의 46%를 자급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마우이 유전(82%)을 비롯한 6곳에서 생산되어 가정용, 석유화학 공장,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며, 일부 수출도 하고 있는데 NEW PLYMOUTH에 천연가스 발전소가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에너지난에 대처하고 고갈이 예상되는 마우이 유전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유전 개발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중반부터 뉴질랜드 최대 에너지 회사 Contact Energy와 정부 기업인 Mighty River Power가 공동으로 NZ\$ 8,000만을 투입하여 시추 및 개발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우리나라 현대하이스코도 2008년부터 남섬 남단의 심해저 원유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분기별 원유 생산 및 수출입 현황

(단위: PJ)

		2007				2008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원유 및 콘덴세이트									
생산		9.4	13.3	28.9	36.1	35.4	35.4	31.4	25.4
수입		45.4	51.6	53.0	50.1	57.4	47.3	50.6	58.0
수출		7.1	11.2	21.9	35.1	32.5	35.7	30.3	21.6
석유제품									
생산	일반휘발유	13.3	14.4	13.4	13.5	14.4	14.5	13.7	14.4
	고급휘발유	3.0	2.7	3.3	3.3	2.8	3.4	3.7	2.9
	디젤유	15.2	18.2	21.5	17.8	19.2	20.0	17.0	18.8
수입	일반휘발유	9.2	9.8	6.6	10.4	8.2	7.8	7.1	7.3
	고급휘발유	2.8	3.8	2.6	2.7	3.0	2.7	1.8	2.4
	디젤유	14.0	9.2	6.4	11.0	8.0	12.5	5.8	11.6

자료: 뉴질랜드 경제개발부

뉴질랜드는 남한의 2.7배에 달하는 국토를 가지고 있으나 광물 자원은 풍부하지 않은 편이다.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가 생산된다는 점에서 매우 기대할 만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나 양이 충분하지 못하며, 여타 자원으로는 금, 철 성분의 모래, 점토, 골재 등이 일부 채굴되는 정도이다.

석탄은 채굴 가능 매장량이 86억 톤으로 최대 동력 자원이며 30%가 남섬 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석유 고갈에 대비해 대체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석탄 생산 및 수출입 현황

(단위: 킬로톤)

	2007				2008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생산	1,386	1,251	1,100	1,099	1,319	1,514	1,195	1,106
역청탄	694	427	467	431	514	766	617	451
아역청탄	622	755	584	595	719	666	517	567
갈탄	69	69	49	73	86	83	61	88
수입	185	242	180	122	63	147	216	181
수출	701	425	460	428	705	736	689	431

자료: 경제개발부

천연 액화가스, 합성석유, 원유 생산량은 뉴질랜드 소요량의 3분의 1에 달한다. 원유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어 북섬 왕가레이(Wangarei)에 있는 유일한 정유 공장 마스덴 포인트(Marsden Point)에서 정제하여 사용하며 일부는 해외 수입 제품을 이용한다.

천연가스는 Taranaki 지역에서 생산되는 최대의 탄화수소 자원이나 북섬에서만 사용되고 있고 생산량의 절반이 합성석유 같은 석유화학 제품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4분의 1은 전력 발전에 나머지는 상업 및 주거 지역에 공급되고 있다.

분기별 천연가스 생산량

(단위: PJ)

	2007				2008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생산량	37.4	49.0	51.3	43.1	40.3	47.8	45.7	39.6
저장량	0.4	0.4	0.5	0.3	0.5	0.6	0.7	0.8
LPG 생산량	1.3	1.5	1.6	1.2	1.1	1.2	1.0	0.9
플레어	0.2	0.4	1.5	1.9	2.2	2.2	1.5	1.1
손실 및 자체사용	0.9	0.9	1.3	1.3	0.9	0.9	1.1	1.2
가스공급량(내수)	34.7	45.8	46.5	38.5	35.6	42.9	41.3	35.7

자료: 뉴질랜드 경제개발부

개혁 및 개방화 정책의 시행으로 모든 부문의 에너지 산업이 민영화되었으며 정부의 규제나 간섭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전기 가스 송배전 등의 자연적인 독점을 규제하고, 환경 영향 평가와 에너지 효율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정도이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원관리법(The 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을 통해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뉴질랜드의 주요 현안은 매년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배출 가스를 규제하는 것이다. 뉴질랜드는 교토협약 체결국으로 2008~2012년간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는 입장이다.

마. 교통, 관광업

운송 부문은 뉴질랜드의 경제 활동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뉴질랜드가 인구 수는 적지만 널리 분포되어 있고, 구불구불한 지형과 총 길이가 2,011km이나 되는 남북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다.

교통은 산업 혈액의 효율적인 구축 여부가 중요한 과제가 되어 왔으며 주요 교역국들과의 교역을 원활하게 지탱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뉴질랜드에는 항구와 공항으로 연결되는 약 93,000km의 통합 도로망과 4,200km의 철로가 건설되어 있다.

기간 시설들은 많은 초기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 관계로 대부분 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건설되고 운영되었다. 하지만 8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는 거의 민영화되었다.

항공 부문에서도 1983년 이후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다. 1986년 뉴질랜드 항공사의 외국인 소유에 대한 해외투자 제한 법규가 사라져 뉴질랜드의 주요 3개 공항과 지방 공항들은 유한 책임 회사로의 점진적인 구조 조정을 실시했다. 1998년에는 오클랜드, 웰링턴 국제 공항과 지방 공항의 민영화가 단행된 바 있다.

뉴질랜드의 철도 시스템은 인구 밀집 지역과 3개의 inter-island rail ferry를 연결하고 있으며 90년 10월까지 정부 기관인 New Zealand Railways Corporation에 의해 운영되었다. 1993년 9월 핵심 사업은 뉴질랜드 컨소시엄과 해외에 매각되었고 현재 Tranz Rail 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뉴질랜드 대외 교역의 약 90퍼센트가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항구 물동량 처리는 30여 개의 외국계 회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1인당 항공기 및 파일럿의 보유 비율이 아주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대형 항공기는 국제 및 국내의 화물과 승객을 수송하고 있으며, 헬리콥터 같은 경비행기들은 농업, 관광 등에 활용되고 있다.

AIR NEW ZEALAND와 QANTAS를 포함한 총 29개의 국제 항공사가 화물과 승객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선은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등 주요 지역을 운항하고 있다. Hamilton, Palmerston North, Queenstown and Dunedin 등은 타즈만 해의 횡단에 필요한 공항으로 이용되고 있다.

2001.9.11 사태로 Air New Zealand가 큰 재정 위기를 맞게 되자 뉴질랜드 정부는 US\$ 8억 8,500만에 달하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82%를 공매하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항공사의 누적 적자가 심화되고 국영 항공사로서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자, 뉴질랜드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주식 시장을 상장하고 2003년 6월 US\$ 1억 5,000만의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하여 재차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관광 산업은 뉴질랜드의 주요 성장 산업으로 GDP 기여도가 직·간접적으로 10%에 달한다.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 환경, 즐길 수 있는 야외 레포츠 등이 뉴질랜드를 인기 있는 관광지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2008년 1년간 이하 단기 체류 목적으로 뉴질랜드를 방문한 방문객 수는 246만 명으로 '07년 동기 대비 0.3%가 감소했으며 국별 순위는 호주가 97만 6000명으로 전체의 39.7%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 영국이 28만 5,000명으로 11.9%를 차지했다. 한국은 2007년 대비 20.4% 줄어든 7만 9,000명으로 3.2%를 차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6번째를 기록했다.

주요 국가/지역별 방문객 현황

(단위: 천 명, %)

국 가	2008			2007		
	방문객	순위	비중	방문객	순위	비중
호 주	976.2	1	39.7	950.2	1	38.7
영 국	285.1	2	11.6	292.7	2	11.9
미 국	212.4	3	8.6	216.0	3	8.8
중 국	112.4	4	4.6	120.8	5	5.0
일 본	102.5	5	4.2	121.7	4	4.9
한 국	79.1	6	3.2	99.4	6	4.1
독 일	62.3	7	2.5	59.8	7	2.4
캐나다	53.3	8	2.2	47.8	8	1.9
싱가포르	28.8	9	1.2	26.8	9	1.1
네덜란드	25.5	10	1.0	25.9	10	1.1
총 계*	2,458.5		100	2,465		100

주: 총계는 기타 국가 포함 2008년 총 방문객 숫자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바. 농림, 수산업

뉴질랜드는 제조업이 빈약한 반면 낙농업이 활발하다. 낙농업은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의 98%는 협동조합이자 세계 5위의 낙농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폰테라 협동조합(Fonterra Cooperative Group)을 통해 수출된다.

뉴질랜드의 낙농업이 경쟁력이 있기도 하지만 더욱 주목할 것은 강력한 카르텔인 동 조합을 들 수 있다. 이 조합은 낙농업의 발전을 위해 뉴질랜드의 가장 큰 유가공업체 2개와 뉴질랜드 낙농청(New Zealand Dairy Board)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어 뉴질랜드 낙농 제품의 수출 통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요 제품 및 원료를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려 할 경우 이 기관을 통해 구매해야 하며, 이로 인해 가격 및 물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주요 낙농 제품으로는 분유, 치즈, 버터, 식품 원료 등을 들 수 있으며 대규모 가공 시설과 결합한 효율적인 목축 시스템, 연구 개발에 대한 많은 비용의 투자, 혁신적인 마케팅을 자랑하고 있다.

폰테라 협동조합은 매출 면이나 가공되는 우유의 양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유가공업체로 우유의 경우 95%를 수출한다. 뉴질랜드의 유제품 수출 비중은 전세계 유제품 교역량의 30%에 이르고 있으며 시장 영향력이 막강하다.

뉴질랜드의 우유 생산량은 연간 12억kg 이상이며 젖소는 434만 마리(2008년 6월 기준)로 지난 10년 동안 30%나 증가했다. 1만 1,500개의 낙농 농가가 평균적으로 보유한 젖소 마릿수는 364마리에 이른다.

육우는 1995년 6월 520만 마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412만 마리로 감소하였고, 양은 1980년대 후반 6,500만 마리까지 증가한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여 2008년 6월 기준 3,389만 마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뉴질랜드 통계청 2009.2)

뉴질랜드가 생산한 우유의 약 98%는 폰테라 조합에서 취급하며 나머지는 Westland Dairy와 Tatura Foods가 차지하고 있다. 폰테라는 세계 120개국에 1만 7,0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140억 달러의 연간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외에 염소 젖, 아이스크림, 치즈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규모 수출업자들도 있다. 치즈는 분유, 버터 제품의 뒤를 잇는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 3위 제품으로 생산량의 90%가 수출된다.

염소 젖 또한 뉴질랜드의 수출 상품으로 인기가 있다. 북섬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해밀턴 소재 Dairy Goat Co-Operation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생아용 염소 가공유를 생산한다. 5년 만에 700만 달러에서 4,000만 달러로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가장 큰 수출 시장인 대만을 중심으로 남미 및 중동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노인용 분유를 개발해 새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국토의 52%가 목초지인 뉴질랜드는 온화한 기후,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강수량 등 이상적인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농업과 목축업, 원예 산업이 발달해 왔다. 이들 산업은 뉴질랜드 경제의 중요한 요소로, 특히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사슴, 염소, 타조 등 새로운 가축이 사육되고 있으나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육류와 각종 낙농 제품 생산을 위한 양과 소 위주의 축산업이 주류를 이룬다.

뉴질랜드의 주요 농업 제품 수출 실적

(단위: US\$ 백만)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낙농품	2,787	3,336	3,664	4,071	5,585	6,565
육류	2,409	3,024	3,292	3,023	3,186	3,721
목재	1,213	1,391	1,348	1,385	1,539	1,544
과일, 너츠	575	893	827	762	954	1,072
어류	622	748	798	774	811	863
양모류	521	567	564	547	580	527
펄프	255	360	346	406	490	464
음료	243	348	429	494	689	754
기타 식품	259	338	434	445	485	425

자료: World Trade Atlas 2009.4

1970년부터 원예 농업도 수출에서 큰 몫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뉴질랜드 농축산업의 강점은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정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는 가운데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질랜드 정부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는 자국의 농축산업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GATT Uruguay Round Agriculture Agreement)가 이행되면서 농업 보조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세계 시장을 향한 진입 장벽 해소라며 반기고 있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원예작물 수출에서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키위의 수출이 2008년 7억 3000천만 달러를 기록, 2007년 대비 21%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 사과, 배 등 과일류(2008년 2억 6600만 달러)도 꾸준히 수출되고 있어 농가 소득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사. 임업

국토의 약 30%(810만Ha)가 광활한 산림 지역이기 때문에 임산자원이 풍부하고 이 중 640만Ha는 천연림, 170만Ha는 조림지로 전체 목재의 95% 가량이 조림지에서 생산된다. 목재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목재 수입의 60% 이상을 뉴질랜드산 소나무(뉴송)에 의존하고 있고 나머지를 미국과 러시아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2008년 주요 수출국 별 목재수출형태

(단위: NZ\$천불, FOB)

국가	Logs	Lumber	Wood Pulp	Paper & Paper board	Panel Products	기타	합계
호주	100	164,758	121,599	172,893	93,601	253,898	806,848
중국	240,863	79,716	137,013	32,291	30,433	14,102	534,417
일본	88,831	43,970	89,798	8	183,086	90,830	496,523
한국	296,402	14,261	68,471	15,609	17,581	1,923	414,246
미국	-	155,442	2,307	10,841	27,631	68,320	264,541
인도네시아	1,759	20,048	68,828	4,862	14,436	16,284	126,217
필리핀	-	12,785	6,372	40,229	23,423	6,676	89,486
인도	68,100	1,573	826	1,227	5,223	10,005	86,945
베트남	1,953	45,743	4,021	1,267	13,577	9,498	76,059
대만	7,826	26,843	26,527	8,104	5,083	285	74,667
합계*	722,429	721,633	579,892	384,158	414,074	585,044	3,443,951

*주: 합계는 기타 국가 포함 2008년 총수출금액임

자료: 뉴질랜드 농림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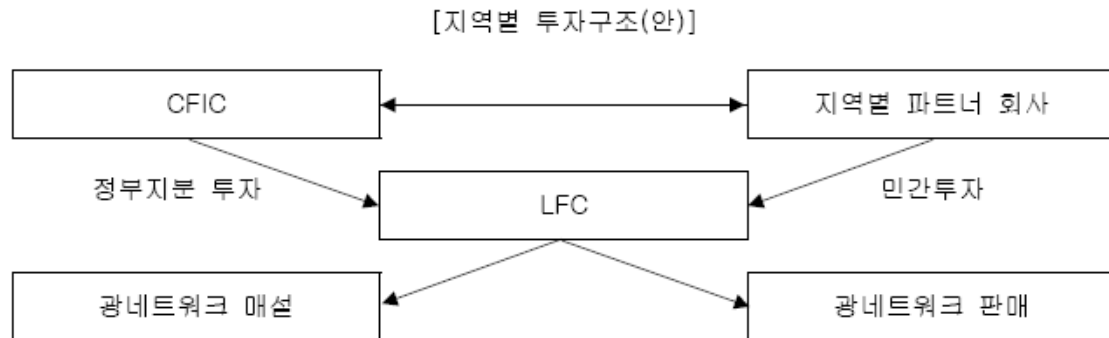
아. 정보 통신 산업

뉴질랜드 정부는 현재 OECD 20위권에 머물고 있는 뉴질랜드 브로드밴드 인터넷 환경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자 2009년 3월 광케이블 인터넷 확충계획안(Fibre-to-the-Home, FTTH)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2015년경까지 25개 주요 거점도시에 최우선순위사용자인 사업장, 의료기관, 학교 및 신규개발지역을 위주로 광케이블을 1차 매설하고 2019년까지 전체 국토의 75%를 100Mbps의 인터넷 속도가 가능하도록 광통신망을 매설하게 되며 이를 위해 정부가 8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민간투자 역시 20억 달러를 끌어들이는 계획이다.

8억불에 달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정부는 국영 Crown Fibre Investment Co(CFIC)를 2009년 6월 중순까지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이 회사가 각 지역별 민간 파트너 회사를 선정, Local Fibre Cos(LFC)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9년 8월경부터 10월까지 Request for Proposal을 접수하며, 2010년 1월 사업자를 선정,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다.



뉴질랜드의 통신 환경은 국내외 통신 Gateway를 지원하는 대용량 광통신망과 자유롭고 자율적인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어 투자를 위한 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다. 지난 89년에 처음으로 통신 시장을 개방한 이후 민영화 작업에 착수하여 국영 Telecom New Zealand(한국 KT에 해당)가 1990년 8월에 민영화되어 유무선 통신업이 기업 간 치열한 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뉴질랜드 IT산업은 통신 서비스가 42.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소프트웨어와 개인용 PC 시장 순으로 비중이 크다. 특히 통신용 하드웨어의 판매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뉴질랜드 통신 시장과 IT 산업의 미래는 성숙 시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정부의 예산 확충 등 공공 부문의 프로젝트 활성화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임을 암시한다.

또한 뉴질랜드의 IT 산업은 기업은 물론 가정과 학교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적은 인구 규모와 높은 PC 보급률로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해 있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큰 폭의 수요 증가보다는 IT 수요 증가와 대체 수요에 따른 완만한 성장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동 통신 시장은 Telecom New Zealand와 영국계 Vodafone이 양분하고 있는데 전체 이동 통신 가입자 수가 전체 인구의 92%에 달하는 380만 명에 이르렀다. 최근 Vodafone이 젊은 층을 집중 공략하여 이 중 절반이 넘는 210만 명의 가입자 수와 55%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경쟁사이자 통신 공룡인 Telecom New Zealand를 앞서고 있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무역 협정 체결 국가

뉴질랜드는 2008년 4월 중국과의 FTA 체결에 성공하였으며, 10월부터 발효되었다. 또한 아래 5개국 및 ASEAN 국가와는 FTA에 준하는 협정을 맺고 상호 경제 협력 및 관세 장벽 완화 등의 혜택을 공유하고 있다.

- 호주: Australia and 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1983년 체결)
- 싱가포르: New Zealand and Singapor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2001)
Tans 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2005)
- 태국: New Zealand and Thailand Closer Economic Partnership (2005)
- 칠레: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2005)
- 브루나이: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2005)
- ASEAN: Asean-Australia/NZ Free Trade Area (2008 협상 타결, 2009 하반기 발효예정)

나. 현재 자유무역 협상 중인 국가

대상국	협상 개시 일자 및 체결 일자	추진 현황
말레이시아	2005.3~	- 2009.6 월: 협상 타결. '09 년 말 FTA 에 최종 서명할 방침.
GCC	2007.6~	- 2006 년 말 기준, 주재국의 8 번째 수출 대상 지역임 - 낙농품 및 양고기를 중심으로 한 GCC 지역에 대한 수출 성장 률은 전체 성장률 3.7%를 크게 상회하여 지난 6 년간 평균 10%에 달함으로써 전략적 중요성 증가 - 관세, 서비스, 투자, 정부 조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을 진행 중임
한국	2009.3~	- 2007.11 월: 한-뉴 FTA 민간공동연구 완료 - 2008.4 월: 양국 대표 라운드 테이블 - 2008.9 월/11 월: 예비협의회 교환 개최 - 2009.3 월: 양국 FTA 협상 공식 개시 선언 - 2009.6 월: 1 차 협상 - 2009.9 월: 2 차 협상
홍콩	2009.5~	- 2001.1 월 Closer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을 시작했으나 2002 년 말 다섯 번의 협상을 끝으로 잠시 중단됨 - 2009.5 월 협상을 재개하여 3 차 협상이 '09 년 8 월 24 일 웰링턴에서 열림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다. 뉴-중국 FTA 주요 내용

1) 협정의 의미: 서방 국가 중 최초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뉴질랜드는 3년여에 걸친 15회의 협상을 통해 서방 국가 중 최초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 2008년 4월 초 뉴질랜드 측에서는 총리를 포함 150여 명이 넘는 대규모 통상 사절단이 중국을 방문, 북경 인민회관에서 FTA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협정안은 뉴질랜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10월 정식 발효되었으며 최대의 수혜 산업인 농·수·축산 분야 관련 기업들은 이를 계기로 대 중국 수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 뉴질랜드, 연간 NZ\$ 1억의 관세 절감 효과

뉴질랜드의 대 중국 수출은 2007년 기준 US\$ 14억으로 2006년 대비 18.3%의 높은 수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호주, 미국, 일본에 이어 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4년부터 2006년 3년간 뉴질랜드의 대 중국 수출에 대한 연평균 관세액 규모는 NZ\$ 1억1,800만에 달했으나 이번 협정으로 인해 이 중 95%에 달하는 품목이 관세 철폐의 혜택을 보게 돼 연간 NZ\$ 1억1,500만의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전체 대 중국 수출의 35%를 차지해 온 관세율 5% 이하 적용 상품에 대한 관세가 협정 발효와 함께 즉시 폐지되고 전체 수출품 중 6%를 차지하는 양모 제품에 대해서는 2009년 1월부터 관세가 사라진다. 유아용 분유를 포함한 31%의 품목은 2012년부터 관세가 철폐되고, 대다수 낙농 제품을 포함한 나머지 30% 역시 2016년부터 품목별로 점차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뉴질랜드-중국 관세 철폐 일정 및 품목

관세 철폐 시기	뉴질랜드 수출		뉴질랜드 수입	
	수출 비중	주요 상품	수입 비중	주요 상품
2008년 10월	35.30%	fibreboard 일부, 어분, 구리 및 알루미늄 고철, 점결탄 및 철용재	38.60%	수입품의 37% 가 이미 무관세
2009년 1월	6.00%	양모 수출품 중 75% (8년에 걸쳐 관세 철폐 예정)		
2012년 1월 2013년 1월	31.20%	유아용 분유, 카세인, 요거트, 냉동 생선, 메탄올, 동물성 지방 및 기름, 사과, 와인	35.30%	철, 백색가전, 플라스틱류, 가구, 타이어, 필기구
2014년 1월			4.20%	섬유, 일부 의류, 신발 및 카펫
2016년 1월	4.60%	고기 내장(식용), 오렌지, 오렌지 주스, 집유기, 양고기, 쇠고기, 키위, 양가죽	21.50%	의류 및 신발
2017년 1월	2.50%	버터, 치즈, 우유		
2019년 1월	15.20%	전유 및 탈지유 가루		

자료: NZ 외무부

3) 서비스 산업, 인력 교류 및 투자 관련 비관세 장벽 철폐

관광, 유학, 건설 및 운송 분야 서비스업 진출에 대한 양국 간 비관세 장벽을 없애기로 합의했으며 특히 양국 간 해외 법인 설립 시 일정 부분 이상을 현지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 조항 등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인력 교류와 관련된 협의 사항으로는 양국 모두 임시 입국 또는 임시 취업비자와 관련해 심사 소요 일수를 10일 이내로 줄임으로써 신속한 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국은 뉴질랜드인의 사업 목적상 입국에 대한 투명한 비자 심사를 보장하고 체류 기간을 종전의 90일에서 6개월까지 연장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는 교육, 환경, 컴퓨터, 사진 및 건설 분야 중국 숙련 기술 인력들의 입국 기준 및 체류 기간을 대폭 완화했는데 일정 자격 요건 충족 시 최초 3년간의 고용이 허가되며 이후 필요가 인정되면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일부 분야에서 심각한 숙련 기술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뉴질랜드는 이와 관련된 중국 인력들이 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할 경우 1,000명 범위 내에서 3년간의 체류를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이들의 뉴질랜드 장기 체류 기회를 보장한다.

양국 간 투자 진출 관련 합의 사항은 양국의 투자자들이 각 나라에서 국내 투자자들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는 것과 최우선 수혜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양국이 만약 제3국에 대해 해외 투자 관련 특혜를 주었을 경우 자동으로 이와 동일한 특혜가 서로에게 주어 지는 것을 의미한다.

4) 시사점

□ 중국 상품의 뉴질랜드 시장 장악 한층 가속될 듯

2007년 기준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의 제2위 수입국(US\$ 38억)인 중국은 저개발국으로 분류돼 자유무역협정 전부터 정상 관세율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수출품에 비해 1~2% 가량의 특혜 관세를 적용 받고 있었다. 협정의 체결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연간 US\$ 3억 이상의 수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관세가 모두 폐지되는 중국산 플라스틱류 및 철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 뉴질랜드 수출액이 각각 US\$ 6000만, US\$ 5000만으로 전체 수출품 중 5, 6위를 차지 하는 품목이다. 연간 US\$ 1,400만을 수출하고 있는 타이어의 경우도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 뉴질랜드 낙농 제품의 대 중국 수출 가속화로 관련 제품 가격 급등 우려

대 중국 수출품의 20%를 차지하는 낙농 제품 수출은 2007년도에 '06년 대비 16%의 높은 신장세를 기록하였는데 이 같은 추세는 2012년 유아용 분유 및 요거트의 관세가 철폐되고, 2019년까지 낙농 제품 전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면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뉴질랜드 주요 수입 품목 중 목재, 원유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낙농 제품은 최근 국제 시세의 급등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중국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낙농 제품 소비가 급증하여 뉴질랜드 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높은 가격과 공급 부족으로 장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철폐와 별도로 중국인의 뉴질랜드 입국 및 취업 기회, 투자 기회 역시 대폭 넓어지게 되어 양국간 인적 교류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특히 인구 420만 명에 불과한 뉴질랜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정 체결은 중국이 서방 국가와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의 아시아 대양주 시장 지배력 강화의 첫 신호탄이다.

라. 한-뉴 FTA 협상

2009년 3월 3일~4일 이틀에 걸친 이명박 대통령의 뉴질랜드 국민방문 시 뉴질랜드 존 키 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공식 개시가 선언되었다.

2007년 11월 완료된 한-뉴 민간공동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대뉴 수출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등이며, 대뉴 수입은 목재류, 육류, 축산가공품 등 1차 산업제품으로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어 FTA 체결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남반구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한국과의 농산물 재배시기 역시 정반대로서 우리 농업에 주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더구나 쌀 등 곡물의 생산이 없고 키워, 낙농 등 오히려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큰 농업분야가 많다고 할 수 있어 이미 양국 농림부간 협력 약정이 체결되어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한·칠레 FTA, 한·미 FTA 및 쇠고기 협상의 타결로 대 한국 수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상이 공식적으로 개시됨에 따라 늦어도 2010년 중반까지는 타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뉴질랜드가 중국과 2008년 4월 FTA를 체결하면서 주요 수출 공산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신속한 타결이 예상되고 있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수출

□ 2008년 수출은 US\$ 305.8억으로 '07년 대비 13.4%증가

주력 시장 중 호주, 중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19.9%, 23.2% 증가하였으며 태국(43%), 인도네시아(26%), 말레이시아(42%), 싱가포르(23%) 등 2007년에 이어 동남아 수출 꾸준히 증가하였다.

수출의 34%를 낙농품(21.4%), 육류(12.2%)가 차지하며 주요 낙농품 시장은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 동남아, 중남미 및 일부 중동 국가이고 육류는 영, 미로 33%를 수출하고 있으며 대 한국 수출 비중은 4%(1.5억 달러) 내외이다.

목재류는 일본(2.8억), 호주(2.6억), 중국(2.4억), 한국(2.3억), 미국(1.7억) 순으로 수출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국 및 품목

(단위: US\$ 백만, %)

국 가	'07	'08		품 목	'07	'08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 계	26,958	30,579	13.4	총 계	26,958	30,579	13.4
호 주	5,928	7,109	19.9	낙농품	5,585	6,565	17.6
미 국	3,102	3,091	-0.4	육 류	3,186	3,722	16.8
일 본	2,474	2,568	3.8	광물연료	1,091	2,146	96.7
중 국	1,439	1,774	23.2	목재류	1,539	1,544	0.4
영 국	1,200	1,211	0.9	기계류	1,399	1,331	-4.8
한 국	977	979	0.3	기타	766	1,122	46.3
인도네시아	575	722	25.6	과일 너츠	954	1,072	12.4
말레이시아	481	681	41.8	알루미늄	1,115	1,021	-8.4
독 일	553	650	17.3	수산물	811	863	6.4
싱가포르	509	622	22.1	단백질류	778	832	7.0

자료: World Trade Atlas

나. 수입

□ 2008년 수입은 US\$ 343.7억으로 '07년 대비 11.2%증가

호주(18.0%), 중국(13.2%), 미국(9.4%), 일본(8.2%)이 수입 시장의 절반 가량인 48.8%를 점유하고 있다.

호주로부터의 수입품은 원유, 연료유, 자동차, 기계류, 종이류, 의약품 등이며 중국은 PC류, 전자제품, 의류, 가구류, 신발, 철강제품, 미국의 경우 PC류, 항공기, 일본은 자동차, 연료유, 기계류 등의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유가 영향으로 원유/정제유 수입이 급증했는데 주요 원유 수입국은 카타르, UAE, 인도네시아 등이며 연료유는 싱가포르, 호주, 일본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다.

주요 자동차 수입국은 일본, 독일, 호주가 각각 47%, 15%,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산 자동차(승용차)의 경우 2007년 1억 4400만 달러의 수입실적을 기록한 이후 2008년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16.8%감소한 1억 2000만 달러, 시장점유율 5.76%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국 및 품목

(단위: US\$ 백만, %)

국 가	'07	'08		품 목	'07	'08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 계	30,893	34,365	11.2	총 계	30,893	34,365	11.2
호 주	6,369	6,207	-2.5	광물 연료	4,462	6,113	37.0
중 국	4,121	4,519	9.7	기계류	3,949	4,423	12.0
미 국	3,002	3,241	7.9	자동차	3,793	3,633	-4.2
일 본	2,911	2,827	-2.9	전기 제품	2,746	2,807	2.2
싱가포르	1,586	1,583	-0.2	플라스틱	1,148	1,214	5.8
독 일	1,443	1,467	1.68	광학/의료기기	837	918	9.6
말레이시아	835	1,455	74.2	의약품	755	792	4.8
카타르	303	1,073	254.8	종이 제품	729	740	1.4
태 국	828	939	13.2	철강 제품	589	673	14.2
한 국	876	916	4.7	항공기	630	620	-1.6

자료: World Trade Atlas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개 관

□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연간 약 US\$ 20억에 육박

2003년 US\$ 11억에 불과하던 양국 교역 규모가 5년간 두 배 가까이 성장하여 2008년에는 US\$ 19억에 이르렀으나 2009년 상반기는 '08년 동기 대비 7% 가량이 감소, 양국 간 무역 역시 전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간 교역 규모 변동 현황

(단위: US\$ 백만)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1~6
대뉴 수출	620	670	673	699	824	394
대뉴 수입	879	891	967	1,171	1,121	391
교역 규모	1,499	1,561	1,640	1,870	1,945	785

자료: 한국무역통계

우리나라는 농수산물에 주로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며, 만성적인 무역 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다.

나. 무역

1) 수출

□ 2009년도 상반기 수출은 석유 제품, 자동차, 중전기, 무선통신기기 등이 주도

석유제품과 자동차 제품이 2009년 상반기 중 1억 66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42.3%를 차지하며 최대 수출 품목 군으로 부상했으며 다음으로 기타중전기 2900만 달러, 어류 2700만 달러, 무선통신기기 2200만 달러 등이 주요 수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의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주력 품목인 자동차, 무선 전화기, 철강 등의 수출 부진과 함께 뉴질랜드의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수입물량의 감소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對 뉴 수출 주요 품목

(단위: US\$ 백만, %)

품 목	'08	'09.1~6월		품 목	'08	'09.1~6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 계	824.0	394	-7.2	연체동물	22.3	7.2	6.5
석유제품	161.3	119.8	6.2	기타석유화학제품	9.4	6.9	-52.6
자동차	354	46.8	-16.6	건설광산기계	16.1	6.7	-75.5
기타중전기	117.0	29.0	28,230	레일및철구조물	12.4	6.3	569.6
어류	50.3	26.9	38.4	건전지및축전지	18.4	6.2	-50.0
무선통신기기	48.1	22.0	-8.3	철강관및철강선	8.5	4.6	-23.2
철강판	666	14.1	-29.3	영상기기	31.5	4.4	60.8
합성수지	11.7	9.2	-53.0	플라스틱제품	5.2	4.2	-26.6
고무제품	44.3	8.2	-15.2	정밀화학원료	55.0	4.0	-7.9
항공기및부품	38.8	7.7	1,102.3	주단조품	7.1	3.7	40.3
종이제품	17.4	7.7	-39.0	회전기	0.6	3.2	6,731.4

자료: 한국무역통계 / MTI 3단위 기준

2) 수입

□ 2009년 상반기 전체 수입의 74%(2억 8900만 달러)가 농림수산물

목재 및 축산가공품이 각각 1억 2260만 달러, 6340만 달러를 차지했고, 육류(525만 달러)와 곡실류(2780만 달러) 등 기타 1차 산업 제품을 포함하면 총수입의 92% 가량이 농림수산물이다.

2009년 상반기 중 수입은 35.7% 감소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기침체로 인한 원자재 수요 및 소비가 줄어 주요 수입품인 목재, 육류, 축산가공품이 평균 44% 가량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對 뉴 수입 주요 품목

(단위: US\$ 백만, %)

국 가	'08	'09.1~6월		품 목	'08	'09.1~6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 계	1,122	391	-35.7	산식물	12.0	8.3	-37.3
목재류	392.4	122.6	-37.8	수산물	24.0	7.5	11.0
축산가공품	170.7	63.4	-39.2	축산부산물	8.2	6.6	11.8
육류	175.5	52.5	-55.6	철강판	56.6	5.8	74,066
곡실류	61.2	27.8	-1.3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2.6	4.4	111.6
기타석유화학제품	59.1	17.8	12.7	종이제품	2.9	3.5	-43.5
제지원료	27.5	16.5	-43.5	농약및의약품	0.5	0.9	-42.7
알루미늄	16.6	11.2	-12.0	식물성물질	2.1	0.9	103.0
기호식품	24.5	9.9	9.6	식물성재료	0.8	0.9	-22.9
합금철선철 및 고철	13.8	9.4	-34.0	건전지및축전지	3.9	0.8	185.1
가죽	13.3	8.6	-41.0	어류	1.9	0.8	-26.3

자료: 한국무역통계 / MTI 3단위 기준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규제 동향 및 특징

1) 수입 규제 개요

뉴질랜드는 농업과 축산업, 임업 등 1차 산업 중심의 특징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으며 제조업이 매우 취약하여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통해 주요 공산품 수입과 자국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 및 낙농 제품의 수출에 노력하고 있으며, 90년 이후 수입 관세 일부를 철폐하거나 인하하여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인접국인 호주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태국, 칠레, 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캐나다와는 이와 유사한 무역경제협력협정(TEC: Trade &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이들 국가의 상당수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혹은 특혜 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 보호와 고용 유지를 위해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다. 준거 법률은 The 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 1988 및 The Temporary Safeguard Authorities Act 1987 등이 있다.

2) 대한 수입 규제 현황(2009년 9월 기준)

2001. 6. 10 한국산 냉장고 및 세탁기가 반덤핑 판정을 받은 이후, 2004. 7. 20 반덤핑 제소된 오일필터가 2005. 1. 14 최종 덤핑 판정을 받았다.

냉장고 및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기간(5년)이 경과된 후 추가 제소가 없어 2006년 6월에 해제되었으며, 오일필터는 현지 생산 공장이 문을 닫음에 따라 2006년 12월 규제 사유가 해소되어 반덤핑 규제가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덤핑 규제는 해당 품목이 없다.

나. 2009년도 수입 규제 전망

2008년도 GDP 성장률이 -1.0%로 추계(EIU)되는 가운데 2009년에도 성장률이 급격히 저하되어 약 -3.2%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12~18개월간 지속적인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있다.

2008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8.8% 수준인 10억 9000만 달러인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뉴질랜드 달러화 약세로 인한 수입원가 상승 및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하락 등으로 인해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2009년과 2010년에 소폭 개선되어 각각 -6.7%, -6.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규제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극히 일부의 제조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는 뉴질랜드는 자국 내 생산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무관세 정책을 펴는 등 개방적인 수입환경을 유지해오고 있다.

1) 수입 규제 예상 품목

무역 자유화를 통해 자국의 이득이 크다는 점에서 수입 규제가 특별히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일부 현지 제조업체의 로비와 산업 보호 차원에서의 규제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 뉴질랜드 수출은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연료 등으로 자국 산업 및 기업과 이해 대립이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2009년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가능성은 낮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 냉장고, 세탁기 등에 대한 덤핑제재를 초래했던 현지 유일의 백색가전제품 제조공장이 중국, 태국 등지로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상태이다.

2) 통상 정책 방향

뉴질랜드는 주요 공산품의 수입과 자국 농산물 수출을 위해 개방적인 경제 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공산품 중 자국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의 수입 관세율은 최고 12.5%에 달했으나, '09.7월부터 10%로 인하 되었다.

기존의 호주 이외에 2005년에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태국 및 ASEAN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2008년 4월에는 서방 국가 중 최초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어 동년 10월 발효되었다. 또 2008년 8월에는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어 현재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2009년 3월에는 한-뉴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는데, 양국간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로 인한 이득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르면 2010년 상반기 중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 수입 규제 현황

1) 수입 규제 부과(조사) 현황(2001년 이후)

품 목	국 가	유 형	관 세	판정일
Hog Bristle Paintbrushes	Chin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9.03.16
Galvanised Wire	South Afric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8.08.18
Canned Peaches	South Afric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8.02.11
Diaries	China, Hong Kong Indonesia Malaysia Korea	Dumping	Imposed on goods from Malaysia and China	2007.10.08
Certain Bound Stationery	Malaysia	Dumping	Imposed on goods from Malaysia	2007.09.12
Oil Filter *	Indonesi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부과)	2006.04.29
Galvanised Wire	Malaysi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5.11.15
Oral Liquid Paracetamol	Ireland	Dumping	Decision Pending	2005.03.30
Oil Filters	Korea, China, Indonesia, Thailand	Dumping	Current	2005.01.14
Galvanised Wire	Malaysia	Dumping	Imposed on Malaysia	2004.04.27
Reinforcing Steel Bar	Malaysia, Thailand	Dumping	Current	2004.03.25
Canned Peaches	Greece, EU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3.12.15
Portland Cement	Thailand	Dumping	Not Imposed	2003.11.30
Canned Peaches	Greece	Dumping	Current	2003.07.14
Canned Peaches	EU	Subsidy Review	Current	2003.07.14
Hog Bristle Painbrushes	Chin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3.07.14
Glass Wool Insulation	Taiwan	Dumping	Not Imposed	2003.04.24

품 목	국 가	유 형	관 세	판정일
Hog Bristle Paintbrushes	China	Dumping Review	Current	2003.04.23
Galvanised Wire	South Africa	Dumping	Current	2002.12.21
Plasterboard	Thailand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2.12.04
Canned Peaches	South Afric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2.06.11
Hollow Gold Jewellery	Italy	Dumping	Not Imposed	2001.07.22
Washing Machine	Korea	Dumping	종료	2001.06.10
Refrigerator-Freezer	Korea	Dumping	종료	2001.06.10
Tamoxifen Citrate	UK	Dumping	Not Imposed	2001.02.21

주: *표의 오일필터 규제는 현지 제조업체가 생산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었음.

자료: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2)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건수(2009년 9월 기준)

품 목	국 가	유 형	개 시 일
Galvanized Wire	Malaysia	Dumping Review	2009.04.24
Reinforcing Steel Bar and Coil	Thailand	Dumping Review	2009.03.02
Canned Peaches	South Africa	Dumping Review	2008.10.17

자료: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라. 공산품 수입 무관세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공산품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아 대부분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를 폐지하였으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마. 협정 체결에 따른 특혜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인 호주, 싱가포르, 태국, 칠레, 중국 등과 관세 협정 체결 국가인 캐나다에 대해서는 무관세 혹은 저율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이외의 국가에게는 불리한 관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율 자체가 낮거나 무관세 적용 품목이 많아서 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따라서 뉴질랜드와의 FTA협상에서는 투자 여건 개선, 검역 규정 상호 인정 등 비관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저개발국 및 태평양 연안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GSP) 제도를 통해 일반 관세율보다 약간 낮은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줄곧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특혜관세(GSP)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04년 11월부터 일반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소폭의 관세 수혜도 소멸되었다.

바. 유통 구조

수입 제품의 유통 구조는 전문 수입상 -> 중간 도매상 -> 소매상 -> 최종 소비자의 전통적 구조가 일반적이었으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수입 자유화가 확대 시행되는 현재는 도매 또는 대형 소매상이 직접 수입을 겸하면서 유통 구조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수요 업체는 물론 현지 수입 업체들은 대부분 중간 유통 업체 대신 직접 상대국 제조 업체를 접촉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입 물량이 많지 않아 직접 수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전문 수입상의 역할이 크다.

대형 창고형 매장의 체인점들은 A/S 문제, 인력 최소화 등을 위해 수출 업체와 직거래하는 것보다 중간 유통 업자를 상대하려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범람하고 수입 제품 간의 판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직수입을 통한 박리다매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한편 소규모 수요 업체들이 수출상의 최소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는 점에 착안, 여러 곳에서 주문을 받아 수입한 후 다시 최종 수요 업체에 공급하는 수입 에이전트도 증가 추세다.

□ 유통 구조 예시

- 국내 제조 상품의 기본 유통 구조
 - 제조업체(30%)-----> 중간 도매상(30%)-----> 소매상(35%)-----> 최종 소비자
 - 제조업체(50%)-----> 소매상(30%) -----> 최종 소비자
- 수입 상품의 기본 유통 구조
 - 수입상(20%)-----> 중간 도매상(30%)-----> 소매상(30%)-----> 최종 소비자
 - 수입상(50%)-----> 소매상(30%)-----> 최종 소비자

* ()안은 단계별 평균 유통 마진율임

사. 수입 쿼터

뉴질랜드는 교역 자유화를 주창하고 있어 수입 쿼터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비관세 장벽도 거의 없는 편이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분쟁 사례는 많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우리 제품의 수입을 규제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2009.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산에 적용되는 수입 규제는 없다.

1) 수입 규제 사례/ 자동차용 배터리(HS: 8507.10) 반덤핑 규제

- 규제 기간: 1991년 12월 ~ 2000년 2월
- 관련 기업: GNB Technologies (GNB) Century Batteries (NZ) Ltd

- 대상 국가: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 우리 기업: Delkor Corp., Global & Yuasa Battery, Korea Storage Battery
- 조치 경과
 - 1991년 4월 반덤핑 혐의로 피소
 - 1991년 6월 덤핑 조사 착수
 - 1991년 9월 예비 덤핑(40% 덤핑 마진율)
 - 1991년 12월 덤핑 최종 판정(47~48% 덤핑 마진율)
 - 1994년 6월 반덤핑 세율 최고 20%로 하향 조정
 - 1999년 6월 재검토
 - 1999년 8월 반덤핑 관세 12~18% 부과
 - 2008.9월 기준 규제 기간 만료로 반덤핑 규제는 종료됨.

2) 수입 규제 사례/ 연마용 디스크(HS: 6804.22) 반덤핑 규제

- 규제 기간: 1995. 10 ~ 2000. 10. 16
- 관련 기업: Abrasives Manufacturing Ltd
- 규제 대상국: 한국, 대만
- 규제 대상 한국 기업: Dongbo Grinding Wheel Co., Dongil Industries Co., Ltd
- 조치 경과
 - 1995.1월 피 제소
 - 1995.4월 반덤핑 조사 착수
 - 1995.7월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
 - 1995.10월 반덤핑 최종 판정(덤핑 관세 12-16%)
 - 2000.10.17일 해제

3) 수입 규제 사례/ 냉장고(HS: 841810/21) 반덤핑 규제

- 규제 기간: 2001. 6. 10부터 5년간
- 관련 기업: Fisher & Paykel
- 규제 대상국: 한국
- 규제 대상 우리 기업: 삼성, LG, 대우 등
- 조치 경과
 - 2000.11월 피 제소
 - 2000.12월 반덤핑 조사 착수
 - 2001.3월 덤핑 예비 판정
 - 2001.3월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25% - 71%)
 - 2001.6월 최종 판정(32%-55%)
 - 2006.6.11 해제

4) 수입규제사례/ 세탁기(HS: 845011) 반덤핑 규제

- 규제 기간: 2001. 6.10부터 5년간
- 관련 기업: Fisher & Pakel
- 규제 대상국: 한국
- 규제 대상 우리 기업: 삼성, 엘지, 대우 등
- 조치 경과

- 2000.11월 피 제소
- 2000.12월 반덤핑 조사 착수
- 2001. 4월 덤핑 예비 판정
- 2001. 4월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52% - 93%)
- 2001. 6월 최종 판정(52%-93%)
- 2006.6.11 해제

5) 수입 규제 사례/ 오일필터 반덤핑 규제

- 조사 개시일: 2004.7.20
- 잠정 판정: 2004.10.28
- 조사 종료일: 2005.1.14
- 규제 기간: 2005.1.14 ~ 2010.1.14
- 2006년 12월 뉴질랜드 오일필터 생산 공장의 폐쇄로 규제 사유가 없어져 해제

6) 수입 규제 사례/ 다이어리 반덤핑 규제

- 조사 개시일: 2007.3월
- 판정: 2007.8월
- WTO 반덤핑 협약 제5.8항(미소 물량 수입에 대한 조사 종료)에 의거하여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반덤핑제소 취소

5. 관세제도

가. 대부분 무관세 수입

뉴질랜드 농업, 임업 및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며 목재, 소고기 및 낙농제품이 주요 수출 품목이다. 이들 1차 산업은 정부 보조 없이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농산물 및 서비스 등 전 부분의 교역 자유화를 주창한다. 이에 따라 마약류, 무기류, 동식물 같은 수입 금지 품목 및 관련 제품 등은 제외하고, 수입이 자유롭고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7-12.5%대에 이르는 고율관세가 부과되기도 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호주와 싱가포르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관세협정 체결 국가인 캐나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저개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GSP)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소폭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한다. 참고로 한국은 2004년부터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였다.

수입품의 관세 평가는 GATT의 관세 평가 규칙(Customs Valuation Code)에 따라 수입 제품의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나. 추가 관세 인하 계획

뉴질랜드는 2003년 발표한 수입 관세 인하 계획에 의해 2006년부터 의류와 신발, 직물에 대한 관세의 대폭 인하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율은 지난 1999년 이후 6년간 동결되었던 의류, 신발 및 카펫 등에 대한 수입세율도 2006. 7. 1부터 인하되었으며 2009. 7. 1부터 10%로 인하되었다.

그 밖의 수입 관세 부과 대상 품목들의 관세율은 2008년 7월부터 5%로 인하되었으며 2009 년까지도 인하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의류 부문에만 적용되던 종량세는 2005. 7. 1부터 종가세로 환원되었다.

수입 관세 인하 추이

기존 관세율	관세 인하 추이		
	2007.7.1	2008.7.1	2009.7.1
17	15	12.5	10
10	7.5	5	5
5-7.5	5-7.5	5	5

자료: 뉴질랜드 정부(www.beehive.govt.nz)

뉴질랜드 관세와 관련된 사항은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vt.nz)에서 파악할 수 있다.

6. 주요인증제도

가. 개관

인구가 430만 명에 불과한 뉴질랜드는 환경과 사람, 자연을 매우 중시하는 국가로 엄격한 품질 표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 및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뉴질랜드 표준(Standard) 제도의 기본은 인체의 안전에 있으며, 공산품 전반에 걸친 표준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소비자보호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산하의 뉴질랜드 표준원(Standards New Zealand)이다.

이 기관(www.standards.co.nz)을 접속해 관련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고 E-메일이나 전화로도 필요한 자료와 정보, 서식 등을 쉽게 입수할 수 있으며, 인증 절차나 기관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관련 법규로는 표준법(Standards Act 1988)이 있는데, 이 법은 뉴질랜드에서 표준 사용을 촉진하고 장려를 권장하여 제품의 품질 하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외에 뉴질랜드는 품목별로 개별 법이나 규정에 의한 안전 표준을 요구한다. 일종의 Negative System으로 강제 규정인 경우가 아니면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 규정이 많아 품목별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 표준을 신청하는 방법은 우선 뉴질랜드 표준원(Standards NZ)을 접속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표준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유아용 유모차 표준을 입수하려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유료인 경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뉴질랜드 표준 중에서 특이한 것은 S마크 제도로, 이를 획득하는 경우 제품에 S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강제 규정은 아니나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뉴질랜드에서는 제품 하자로 인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제품의 표준 준수 입증 책임이 수입 업체에게 있음을 감안하기 때문에 수출 초기부터 S마크 획득이 요구된다. S마크는 품질 검사 전담 기관인 Bureau Veritas(New Zealand) Ltd에서 실시하며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 자체적인 시험 검사를 거쳐 승인해주나 시험 절차는 제품에 따라 상이하다.

소비자 보호부와 모법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공산품의 표준 취득 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 또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인증이 필요한 대상이 다소 모호하다. 그러나 식품, 의약품, 기계류, 전기 및 가스용품 등은 인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들 제품들도 호주와 유럽, 싱가포르, APEC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뉴질랜드에서 인증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뉴질랜드와 호주는 CER이라는 공동경제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품질 규격 인증 문제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뉴질랜드나 호주 양국 중 어느 한 나라에서 규격 인증을 받게 되면 양국 어느 곳에서건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나. 한국제품 주요인증제도

우리 제품의 해당 사항이 많은 대표적인 품목은 식품과 전기전자 제품, 가스용품, 기계류, 의약품 등인데 주요 분야별로 규제 법규 및 규제 기관 등은 다음과 같다.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보건부(The Ministry of Health)가 관할하고 있으며 수입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는 농림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가 담당한다.

식품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ACCP 시스템(the international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food safety system.)을 준수하도록 하며, HACCP 시스템은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지만 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건부의 정기 식품 안전 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전기전자 및 가스용품은 호주나 유럽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뉴질랜드에서도 인증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으나 뉴질랜드 표준원(Standard NZ)이나 소비자 보호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를 접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계류, 크레인, 중장비 등은 이용자나 개인들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노동부 산하 OSH(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가 제품 및 이용에 대한 안전을 규제하고 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약품법(the Medicines Act 1981)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법(the Misuse of drugs Act 1975)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이 법은 의약품이 안전, 품질, 효능 등에서 수용할 만한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강제하며, 의약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제조, 저장, 유통과 관련된 사람, 장소, 관행 등이 이러한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의약품(medicines) 및 의료기기(medical devices)와 관련된 법의 집행은 뉴질랜드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의 메드세이프(Medsafe)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 표준을 인증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호주를 비롯하여 유럽(EU), 싱가포르, APEC 회원국의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 품목이나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해당되지 않는 품목과 자국의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표준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안전 표준과 관련하여 뉴질랜드는 호주와 TTMRA(Trans-T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라는 상호인증협정(1998.5.1부 발효)을 체결하였고, EU와는 NZ/EU MRA (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를, 싱가포르와는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를, APEC 회원국과는 식품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다. 뉴질랜드 인증 기관 및 관련 부처

- Standards New Zealand
 - 주소: 155 The Terrace Private Bag 2439, Wellington
 - 전화: 64-4)498 5990, 팩스: 64-4)498 5994
 - Email: snz@standards.co.nz
 - Website: <http://www.standards.co.nz>
 -
- Bureau Veritas (New Zealand) Ltd
 - 주소: Level 2, 25 Crowhurst Street, Newmarket, Auckland 1001
 - 전화: 64-9) 520-8790, 팩스: 64-9) 520-5229
 - Website: <http://www.bureauveritas.co.nz>
- Ministry of Health
 - 주소: 133 Molesworth Street, Thorndon, PO Box 5013, Wellington
 - 전화: 64-4) 496-2000
 - 팩스: 64-4) 496-2340
 - Email: Emailmoh@moh.govt.nz
 - Website: <http://www.moh.govt.nz>
-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 주소: 25 The Terrace, PO Box 2526, Wellington
 - 전화: 64-4) 894-0100, 팩스: 64-4) 894-0720
 - Email: info@maf.govt.nz
 - Website: <http://www.maf.govt.nz>
- Medsafe – New Zealand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Safety Authority
 - 주소: Level 6, Deloitte House, 10 Brandon Street, P O Box 5013, Wellington
 - 전화: 64-4) 819-6800, 팩스: 64-4) 819-6806
 - Email: becci_slyfield@moh.govt.nz
 - Website: <http://www.medsafe.govt.nz>

(자료: 뉴질랜드 표준원 www.standards.co.nz), S마크 신청 및 승인 기관(www.bureauveritas.co.nz))

7. 지적재산권

가.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뉴질랜드에서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인 뉴질랜드 지적재산권 등록소(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등록을 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종류는 상표권(trade marks), 특허권(patents), 의장권(design) 등 3가지며 관련 법률로는 저작권법(Copyright Act 1994)을 비롯하여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 및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 등이 있다.

뉴질랜드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적 구제가 우선이다. 저작권법(Copyright Act 1994) 및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에서는 재판을 통한 권리 구제는 물론 제품의 반환 등에 대해서도 열거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NZ\$ 15만(약 US\$ 10만)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에서도 소비자 기만을 이유로 이들 침해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도매 및 소매 부문에서부터 이러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경찰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허 및 상표권과 의장권 침해를 당한 사람은 뉴질랜드 세관에 이들 제품의 반입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나. 특허권

1953년 제정되고 1982년 개정된 특허법에 따라 존속 기간은 제출일로부터 16년(5년 또는 10년 연장 가능)이며 출원 공고는 3개월이다.

다. 상표권

1953년 제정되어 2002년 개정된 상표법은 서비스 마크 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 마크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7년으로 선사용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5년 동안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가 등록 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라. 의장권

1953년 제정되어 1980년에 개정된 바 있다.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등록 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출원일로부터 15년(5년씩 2회 연장 가능) 존속이 가능하다.

마. 관련기관 연락처

- IPONZ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New Zealand
 - 주소: PO Box 9241, Marion Square, Wellington 6141, 205 Victoria Street, Wellington
 - 전화: 64-3)962-2606
 - Email: info@iponz.govt.nz
 - Website: www.iponz.govt.nz

8. 통관/운송

가. 통관 제도

1) 환경보호를 위한 엄격한 통관 및 검역 절차 시행

기생충 및 질병으로부터 국민 경제의 주요 원천인 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엄격한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육류 및 식물 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전 수입 허가 및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으며, 질병 및 기생충에 대한 사후 관리 차원에서 박멸 및 봉쇄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입 규제는 없으나 외국산 농산물의 경우 수입 검역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산 과일 중 검역 규정이 마련된 배는 수입이 허용되나 다른 과일은 수입이 불가능하다. 이는 검사할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 지난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포도, 참외, 인삼, 파프리카 등에 대해 검역 규정 심사 요청서를 뉴질랜드 당국에 제출해 둔 상태이나 뉴질랜드 당국에 검역 규정 신청서가 산적해 있고 최근의 FTA 협상 등으로 인해 심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일반 통관 절차

수입업자는 상업송장 등 관세평가 및 세번 분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허가 및 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물품의 반출 이전에 관세, GST(부가가치세 12.5%) 및 특별 소비세(Excise Duty) 등을 완납하고 세관에서 발행하는 물품 인도증(Delivery Order)을 교부 받아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모든 수입업자는 통관업자를 통하지 않는 경우에 반드시 세관 인터넷 페이지 www.cusweb.co.nz 또는 EDI를 이용하여 전자 문서로 반출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추가로 송장, B/L, Packing List 등의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GST라 불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이의 세율은 12.5%이며 산정 기준 가격은 세관 신고 가격+관세+운송 및 보험료 포함 가격이다.

또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NZ\$ 28.75의 IETF(Import Entry Transaction Fee)라 불리는 수입 통관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여기에는 농림수산부에서 부과하는 NZ\$4의 검역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수입 통관 서류 작성 시 기입 사항은 뉴질랜드 세관이 발행하는 Fact Sheet 7 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통관 종류, 입국 항구, 상업송장 번호, 운송 수단, 수입일자(일/월/년), 물품 상세 내역 등이다.

3) 물품 검사

세관에서는 CASPER라 불리는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수입품을 검사하는데, 평균 검사 비율은 7.5~10% 수준이며 주로 파출 검사를 실시한다.

4) 샘플 통관

무관세 통관은 가격 기준으로 NZ\$ 1,000(약 US\$550)까지만 허용되므로 전시회 출품용이나 상담용 샘플도 송장 가격으로 NZ\$ 1,000이상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로 과거 시장 개척단이 방문했을 때, 우리 업체의 샘플(모조 장신구)이 이러한 문제로 오클랜드 세관에서 통관이 지연된 바가 있었고, 송장 가격을 기준으로 7%의 관세와 12.5%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했다.

따라서 간단한 샘플인 경우 송장 가격을 NZ\$ 1,000 미만으로 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Non-Commercial 로 신고하여 문제 발생 소지를 없애야 한다.

샘플 또는 임시 반입 제품 가격이 NZ\$ 1,000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ATA carnets(임시 통관 요청 서류/각국 상공회의소 발행)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후에 재반출해야 한다.

5) 기타 참고 사항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지 공공기관의 행사(무역관 주관 시장 개척단)에 참가할 경우는 해당 기관의 공문도 샘플 통관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완고한 검사 요원을 만나게 될 경우 원칙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위 4항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나. 운송

1) 개요

주요 항구별 수출 물동량 및 금액

(단위: US\$ 백만, %)

항구(지역)	점유율	금 액		
		2007년	2008년	증감
Whangarei	0.97%	163,249	220,571	25.99%
Auckland Seaport	25.07%	5,001,103	5,673,106	11.85%
Tauranga Seaport	23.21%	4,289,703	5,251,779	18.32%
Taharoa	0.11%	7,966	25,741	69.05%
Gisborne	0.33%	68,590	74,151	7.50%
New Plymouth	10.25%	1,561,655	2,319,951	32.69%
Napier	6.11%	1,451,343	1,383,125	-4.93%
Wellington Seaport	2.31%	507,253	522,064	2.84%
Nelson	2.23%	505,082	504,089	-0.20%
Picton	0.07%	19,335	14,794	-30.70%
Christchurch Seaport (Lyttelton)	8.56%	1,646,769	1,935,879	14.93%
Timaru	2.58%	551,562	583,658	5.50%
Dunedin Seaport	15.13%	2,745,360	3,423,993	19.82%
Invercargill Seaport (Bluff)	3.07%	689,234	693,983	0.68%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뉴질랜드는 총 길이가 2,011km나 되고, 구불구불한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는 적지만 널리 분포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렇게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운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약 9만 3,000km의 통합 도로망과 4,200km의 철로가 가설되어 있다.

대외 교역은 약 90%가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고 나머지 10%가 항공을 통해 이루어 진다. 선박 운송의 경우 30여 개의 외국 회사가 맡고 있으며, 항만 관리, 운영도 이제는 거의 민영화되었다.

2) 컨테이너 비용 (40피트 컨테이너 기준, 2009년 4월 기준)

- 내륙 운송비: US\$ 230 (오클랜드 지역 내 운송비)
- 해상 운송비: US\$ 2,700 (오클랜드->인천 또는 부산)
 - 한국-> 뉴질랜드 해상운송비: 뉴질랜드-> 한국의 경우보다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위 운송비보다 약간 비싼 편임.
- 한국 -> 뉴질랜드간 운송 소요 기간: 약 3주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환경

1) 투자매력도

뉴질랜드는 영연방 국가의 일원으로 기후가 온화하고 인구에 비해 국토면적이 넓다. 원유를 비롯한 사철, 갈탄, 천연가스 등 일부 지하자원이 있으나 수출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못하고 있고 전체 수출의 60% 가량이 소고기 등 육류와 낙농제품 및 임산물에 의존하는 1차 산업 국가이자 선진 낙농국가이다.

인구가 430만 명에 불과하나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연간 2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국가이며 최근에는 반지의 제왕을 필두로 한 영화 등 문화산업에서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관광진흥을 위한 숙박시설의 신축, 확장 및 주요 관광시설 개발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지인 고용, 국산화율, 송금, 재투자 및 수출 의무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투자장벽이 없다.

경기침체 타개와 주종 산업인 임업 및 관광부문 개발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인구수에 비해 도로, 항만, 교통통신 등 사회 기간시설이 비교적 발달해 있어 매우 좋은 투자환경을 갖고 있다.

2)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뉴질랜드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매우 폭넓게 보장되는 국가로 국익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야, 수산 어획 및 농업용 토지에 대한 일부 투자제한을 하는 이외에는 규제가 없어 개방화 수준은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및 헤리티지 재단이 공동 발표한 경제자유지수(IEF) 5위에 올랐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2위에 랭크(세계은행 발표) 되는 등, 창업 및 기업운영에 장애요인이 거의 없으며 창업 소요기간, 행정 절차, 기업등록 비용, 고용과 해고, 투자자 보호에서 월등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한 규제는 심하고 자원개발에 대한 제한이 많을 뿐 아니라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제조업이 진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 투자진출 유의사항

특별한 유의 사항은 없으나 자국의 1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동 부문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외부에서 반입되는 소스(치어, 묘목, 육류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 및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건설부문의 투자증가와 개인 및 기업들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 주목을 끌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의 대부분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도 안고 있다.

4) 투자유치 정책 개황

뉴질랜드는 외국인 투자를 일반부문과 민감부문에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민감부문은 해안 인접토지와 호수, 도서, 농업용 토지 및 수산 어획 등이 해당된다. 일반 부문의 경우 NZ\$ 1억(약 US\$ 7,500만) 이하 규모의 토지에 대한 투자도 별도의 허가 없이 가능하며, 민감부문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허가 및 감독을 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아시아 계를 중심으로 한 이주민(중국이 최대)들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매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2년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경기 활황에 따라 우리나라의 뉴질랜드 부동산개발 투자도 활발해 지고 있는데, 2003년에 진출한 한국의 대주개발은 오클랜드 도심 한 복판에 100 여 세대용 아파트 2동을 2005년과 2008년에 각각 성공리에 분양함으로써 한국형 아파트 문화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대주개발은 뉴질랜드에서 최고층 건물이 될 주상복합건물(부지면적 4,400s/m, 67층, 총 사업비 약 US\$ 5억)을 2009년 초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경제위기로 인해 착공 시기가 다소 늦춰지고 있다.

5) 투자유치 관련 법규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에 대해서는 Overseas Investment Act 2005에 의거, 해외 투자실(OIO: 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허가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 OIO는 자국의 민감 부문과 NZ\$ 1억 이상의 일반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만을 허가 및 감독 대상으로 하고 있다.

OIO가 심사한 외국인 투자관련 사항은 다음장인 “외국인 투자동향”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나. 사회간접자본

1) 전력산업

2008년 기준 연간 총 발전량은 42,245 GWh로 2007년 대비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수력과 풍력 발전이 23,139 GWh로 전체의 54.8%를 차지하고 지열발전은

포함한 화력발전은 18,589 GWh로 4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력생산은 32%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Meridian Energy를 비롯 3개 국영기업(SOE)과 Contact Energy 등 2개의 민간회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약 40개의 발전소가 전력을 전국적인 전력망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밖에 작은 규모의 발전설비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자체 이용 또는 인근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 Meridian Energy(SOE) 32% : www.meridianenergy.co.nz
- Contact Energy 24% : www.contactenergy.co.nz
- Genesis Energy(SOE) 18% : www.genesisenergy.co.nz
- Mighty River Power(SOE) 14% : www.mightyriver.co.nz
- TrustPower 5% : www.trustpower.co.nz

2) 상하수도

물에 대한 수요량은 연간 20억㎥로 추정되는데, 가정용 2.1억, 산업용 2.6억, 축산용 3.5억, 농업관개용 11억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인구의 87%가 공공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빗물 또는 지하수로 자체 공급하고 있다. 산업용은 33%가 상수도로 공급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체 조달하고 있다.

자원 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991)에 따라 수산부(Ministry of Fisheries)와 자원 보호부(Department of Conservation) 그리고 각 지방정부(Council)에 오염방지 감독권이 주어져 산업용 폐수와 가정용 하수에 대한 감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 국제공항 및 항구

1) 국제 공항

뉴질랜드의 국제공항은 3대 도시이자 주요 거점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 한 해 동안 254만 명의 외국인과 198만 명의 내국인이 이들 3개의 국제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uckland 공항(www.auckland-airport.co.nz)은 국내외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한항공을 비롯한 주요 항공사의 취항이 집중되어 있는데, 86개 국제선 및 310개 국내선이 이륙하고 있다. 매년 1천만 명 이상이 이 공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시내에서 21km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35분 가량 소요되며, 국제공항과 국내공항으로 청사가 구분되어 있다.

Wellington(www.wellington-airport.co.nz) 공항은 행정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제선 보다는 국내선 성격이 강하다. Christchurch(www.christchurch-airport.co.nz)공항은 남 섬의 교두보에 위치하고 있고 국내는 물론 국제선 역할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기로는 대한항공이 지난 93년부터, 아시아나 항공이 2003. 10. 27부터 취항한 바 있으나, 승객 감소와 뉴질랜드 달러화 강세 등의 이유로 아시아나 항공은 2005년 3월1일부로 운항을 중단하였다. 2009년 9월 기준 대한항공은 관광 비수기의 영향으로 취항편을 주 5회로 단축 중이나, 성수기인 10월 26일에 접어들면 다시 주 7편 운항 예정이다.

뉴질랜드의 직항노선 국가

아르헨티나(Argentina)	일본(Japan)	대만(Taiwan)	쿡제도(Cook Islands)
칠레(Chile)	말레이시아(Malaysia)	통가(Tonga)	영국(UK)
피지(Fiji)	니우에(Niue)	바누아투(Vanuatu)	인도네시아(Indonesia)
홍콩(Hong Kong)	싱가포르(Singapore)	호주(Australia)	한국(Korea)
서사모아(W.Samoa)	미국(USA)	타히티(Tahiti)	태국(Thailand)
뉴칼레도니아(New Caledonia)		노포크 제도(Norfolk Island)	

자료: Auckland Airport(www.auckland-airport.co.nz)

현지 취항 주요 항공사

항공사	홈페이지	전화번호
Aerolineas Argentinas	www.aerolineas.com.ar	+64 9 379 3675
Air New Zealand	www.airnz.co.nz	+64 9 336 2400
Air Pacific	www.airpacific.com	+64 9 379 2404
Air Tahiti Nui	www.airtahitinui-usa.com	+64 9 308 3360
Air Vanuatu	www.airvanuatu.com	+64 9 367 2324
Aircalin	www.aircalin.nc	+64 9 308 3363
American Airlines	www.aa.com	+64 9 309 9159
Asiana Airlines	us.flyasiana.com	+64 9 256 6681
British Airways plc	www.britishairways.com	+64 9 306 5575
Cathay Pacific Airways	www.cathaypacific.com	+64 9 379 0861
Emirates	www.emirates.com	+64 9 377 6004
EVA Air	www.evaair.com	+64 9 358 8300
Freedom Air	www.freedomair.co.nz	0800 600 500
Garuda Indonesia	www.garuda-indonesia.com	+64 9 366 1862
Japan Airlines	www.jal.co.jp/en/	+64 9 379 9906
KLM & Northwest Airlines	www.klm.com	+64 9 309 1782
Korean Air	www.koreanair.com	+64 9 914 2000

자료: Auckland Airport(www.auckland-airport.co.nz)

2) 국제 항구

북섬의 Tauranga, Auckland, Napier, New Plymouth, 남섬의 Christchurch, Dunedin, Nelson 등이 주요 항구이다. 수출 물량은 뉴질랜드 최대 도시이자 경제활동 중심지인 Auckland 항구가 가장 많으며, 원목 및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북섬 동부의 Tauranga가 두 번째이며, 원유수출기지인 New Plymouth와 남섬 Christchurch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수입 물량은 오클랜드 북쪽에 위치한 Whangarei항이 가장 물동량이 많고 다음 Auckland, Tauranga, 등 북 섬 항구 순으로 수입 상품이 주로 북 섬에 집중됨을 알 수 있다.

주요 항구별 수출 물동량 및 금액

(단위: US\$ 백만, %)

항구(지역)	점유율	금 액		
		2007년	2008년	증감
Whangarei	0.97%	163,249	220,571	25.99%
Auckland Seaport	25.07%	5,001,103	5,673,106	11.85%
Tauranga Seaport	23.21%	4,289,703	5,251,779	18.32%
Taharoa	0.11%	7,966	25,741	69.05%
Gisborne	0.33%	68,590	74,151	7.50%
New Plymouth	10.25%	1,561,655	2,319,951	32.69%
Napier	6.11%	1,451,343	1,383,125	-4.93%
Wellington Seaport	2.31%	507,253	522,064	2.84%
Nelson	2.23%	505,082	504,089	-0.20%
Picton	0.07%	19,335	14,794	-30.70%
Christchurch Seaport (Lyttelton)	8.56%	1,646,769	1,935,879	14.93%
Timaru	2.58%	551,562	583,658	5.50%
Dunedin Seaport	15.13%	2,745,360	3,423,993	19.82%
Invercargill Seaport (Bluff)	3.07%	689,234	693,983	0.68%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라. 국가경쟁력/경제자유지수 및 신용등급

1) 2008년 국가경쟁력 18위 - 국제경영개발연구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뉴질랜드는 전체 조사대상 55개국 가운데 18위를 차지, 2007년 19위에서 1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IMD의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관심대상인 호주는 지난해 12위에서 7위로 5계단 상승해 뉴질랜드와의 격차가 늘어났으며, 미국이 1위를 차지한 반면 싱가포르의 지난해와 같이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31위로 지난해보다 2계단 하락했다.

뉴질랜드는 기업효율 18위 및 정부효율 6위 등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으나 인프라 및 경제성 지표에서는 각각 22위 및 34위를 차지하여 전체 순위가 떨어졌다. IMD는 뉴질랜드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제시했다.

□ 뉴질랜드의 역점과제

- 외국인 투자 유치 장려를 위한 법인세 구조의 변화
- 숙련된 이민자 유치를 위한 정책 채택
- 충분한 에너지 및 용수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
- 도로 및 철도 건설에 대한 투자확대
- 노동 생산성 향상 및 기업 능력 개선

2) 기업환경(세계 10위)-영국 이코노미스트

2009년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전문 연구기관인 EIU는 2009년 1월 기업활동 환경평가에서 뉴질랜드가 평가대상국 82개국 중 10위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했다.

동 조사에서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으며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등이 그 뒤를 이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1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으며, 홍콩(6위) 오스트레일리아(17위), 대만(15위)이 상위권에 있었다.

EIU는 5년에 한번씩 △사회간접자본시설 △대외무역 및 해외자본에 대한 개방도 △국제 테러에 대한 노출 등 10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기업활동 환경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3) 기업하기 좋은 나라(세계 2위)-세계은행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 2위로 선정되었다. 세계은행이 전세계 181개국을 대상으로 기업경영 여건을 조사해 발표한 “2009년 기업활동(Doing Business) 보고서”에서 뉴질랜드는 싱가포르에 이어 기업활동여건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미국, 홍콩, 중국, 덴마크, 영국 등이 잇고 있다.

4) 부패 없는 청렴국가(세계2위)-국제투명성기구

부패를 감시하는 국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가 ‘08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뉴질랜드는 덴마크, 스웨덴과 함께 조사대상 180개국 중 공동 1위에 올라 부패 없는 국가, 투명한 국가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5) 뉴질랜드의 신용등급-피치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2009년 4월 현재 뉴질랜드의 외화표시채권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하고 있다.

마. 투자허가

1) 투자업무 담당기관

뉴질랜드에 대한 투자업무는 인베스트먼트 뉴질랜드가 담당하고 있다. 동 기관은 뉴질랜드 무역산업진흥청(NZTE)의 산하기관으로 KOTRA와 거의 비슷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2) 투자 승인 및 신청서류

뉴질랜드 영주권 소지자 이외의 사람이 NZ\$ 1억 이상을 투자해 사업을 설립하거나 뉴질랜드 회사의 25%이상의 주식을 매매하려 할 경우 그리고 5헥타르 이상의 부동산(땅, 섬, 해안이나 공원)을 구입하는 경우는 해외투자실(OIO)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면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서류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과 해외투자위원회 또는 중앙은행에서 입수가 가능하다.

신청서류에 기재하는 내용은 주로 신청회사의 경력, 사업계획 및 사업구조, 재정상태 및 자금조달 계획, 뉴질랜드에 대한 기여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 창출, 수지 균형, 미개발 자원 개발, 특정 지역의 개발 및 환경 개선 등이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포인트로 알려지고 있다. 승인기간은 약 2~3주 소요되며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실시하는 투자허가에 대한 공고를 통해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외국인 투자법 개정

뉴질랜드 정부는 2004.7.20 기존 외국인투자법(the Overseas Investment Act)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며, 동 법의 개정도 투자제한 보다는 일부 보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외국인 투자위원회(OIC: Overseas Investment Commission)를 폐지하고 토지정보국(LINZ: Land Information New Zealand)을 신설하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료주의적인 절차를 최대한 줄이는 대신, 뉴질랜드의 주요 토지 매각조건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은 2003년 기스본(Gisborne) 근처의 Young Nick's Head 토지를 외국인들에게 매각할 당시 여론의 저항이 심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외국인 투자 누적 총액 NZ\$ 2,931억 규모

뉴질랜드 통계청이 밝힌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액은 2008년 말 기준 NZ\$ 2,931억으로 2007년 말의 NZ\$ 2,710억 보다 7.54% 증가했다.

외국인의 직접 투자 누적 총액은 NZ\$ 922.6억, 포트폴리오 투자 누적액은 NZ\$ 904.8억, 무역신용장 개설, 대출 등 기타 투자 누적액은 NZ\$ 841.9억, 파생상품 투자액은 NZ\$ 232.6억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대뉴 투자액(누적치)

(단위: NZ\$ 백만)

구분		2007. 12월 말	2008. 12월 말
직접 투자	Equity Capital	51,552	49,135
	Other Capital	40,104	43,215
포트폴리오 투자	Equity Securities	16,294	10,140
	Debt Securities	75,397	80,340
기타 투자	Trade Credits	1,623	(C)
	Loans	51,344	61,463
	Deposits	23,997	22,736
	Other Investments	1,392	(C)
금융파생투자	Financial Derivatives	9,297	23,266
총계		271,000	293,172

주: (C)는 confidential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뉴질랜드 통계청은 2007년 이후 외국인 투자 관련 총괄 자료는 발표하고 있으나, 국별 통계는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2008년 3월에 집계된 2007-08 회계연도 기간 중의 외국인 투자액은 모두 NZD274억으로서 전 회계연도의 NZD241억에 비해 13.7% 증가했으며 이는 이 기간 중 이루어진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투자금액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이 기간 중 호주가 투자한 금액은 NZD 78억으로서 2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과 영국이 NZD69억, 65억으로 이 세 국가의 비중이 전체 투자금액의 77.5%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의 투자는 주로 직접 투자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2008 회계연도의 통계를 보면 31%의 투자가 뉴질랜드의 기업인수 등 직접투자를 통해 이루어 졌으나 영국의 경우는 포트폴리오 형식의 투자가 40.0%를 차지하는 등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이 주요 투자국으로서 일본 NZD 93억, 싱가포르 NZD 79억, 홍콩 NZD 33억 그리고 대만이 NZD 23억으로 전체 투자 비중 8.3%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국가 투자(누계) 현황

(단위: NZD 백만)

국가 및 단체명	2004	2005	2006	2007	2008
호주	51,021	55,835	68,783	79,687	87,471
미국	31,851	39,700	41,940	41,476	47,622
영국	39,255	30,377	36,712	38,026	44,294
일본	4,820	5,129	5,818	7,620	9,366
싱가포르	9,287	11,262	9,804	8,042	7,959
네덜란드	3,716	4,725	3,918	4,627	5,037
홍콩	3,881	3,681	3,271	3,251	3,383
케이먼 군도	(c)	839	3,027	4,495	3,035
대만	1,924	2,117	(c)	2,364	2,354
캐나다	1,152	1,306	1,319	1,516	2,166
스위스	1,225	1,534	2,174	2,232	1,944
전체	198,303	214,434	234,670	254,179	275,748

주1: 해당 연도 3월말 기준, (C)는 Confidential로 공개되지 않음

주2: 전체 금액은 해당연도 총 투자금액을 합산한 것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of New Zealand)

나. 전력, 가스 공급 및 농업, 부동산, 금융 부문 투자 높아

뉴질랜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거나 외환 거래에 규제를 두지 않아 정부 기관의 특별한 승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NZ\$ 1억 이상 투자하거나 특별한 토지를 구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토지정보부(Land Information NZ) 내 해외투자실(OIO: 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아래 표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 OIO가 심사, 승인한 외국인 투자 진출 신청서 중 투자 금액이 NZ\$ 1000만(약 US\$ 750만) 이상인 건 112건을 산업별로 나누고 있다.

해외투자실(OIO)의 투자 심사 승인 건수(산업별)

분야	2007년	2008년	합계
부동산 개발	30	26	56
농업	3	8	11
축산업	5	10	15
광업	4	5	9
조림 및 목재가공	4	5	9
제조업	13	9	22
의료, 건강	4	4	8
관광, 숙박	3	3	6
물류, 유통	8	7	15
금융	4	5	9
방송, 통신	5	4	9
기타	7	17	24
합계	90	103	193

자료: 뉴질랜드 국토정보원(www.linz.govt.nz)

위 통계를 보면, 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제조업 투자는 2008년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업·축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주로 100만~700만 달러 정도의 중소규모 투자가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위 표에 대한 세부 정보는 국토정보원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 사이트 초기 화면에서 Overseas Investment > Decisions, Statistics & News > Decisions Summaries Released 편을 차례로 찾아가면 월별·건별 투자 승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해외투자실은 승인된 외국인 투자의 국가별, 산업별, 지역별 세부 현황을 2005년 말까지 집계 발표했으나, 2006년부터 이를 중단하고, 대신에 2006년 11월부터 매월 승인된 건수 및 금액 그리고 주요 프로젝트 내용만을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아래 표는 2001~2005년 기간 중 산업별 외국인 투자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업종별 외국인 투자 현황(2001-2005)

(단위: NZ\$ 백만)

업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1~05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제조업	28	146	12	164	9	647	10	586	10	432	69	1,975
전력/가스/수도	4	37	2	-0.1	2	39	3	1,746	2	0.9	13	1,823
농업	119	791	107	336	69	135	45	86	60	130	400	1,478
부동산서비스	8	-181	28	209	30	114	29	548	39	454	134	1,144
금융/보험	6	47	4	9	6	35	1	68	4	555	21	714
보건	-	-	1	0	-	-	2	108	8	594	11	702
문화/레저	13	-28	10	13	3	6	5	-35	3	473	34	428
임업	59	30	51	-412	40	384	26	266	24	159	200	427
운송/창고	3	19	3	5	3	155	4	116	4	6	17	300
도소매업	6	19	4	-1	4	0	3	139	8	34	25	191
광업	6	5	18	4	36	38	8	87	5	8	73	141
통신서비스	4	0	3	22	4	58	1	51	-	-	12	131

업 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1~05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주거부동산	18	11	24	14	24	16	28	13	20	10	114	65
숙박업	13	5	8	11	8	14	10	-4	12	11	51	38
수산업	1	23	1	0.4	-	-	-	-	-	-	2	24
건설업	2	4	-	-	-	-	1	0	4	6	7	10
교육서비스	-	-	3	0.7	-	-	2	2	-	-	5	3
기 타			1	0	-	-	-	-	-	-	1	0.1
계		928		375		1,641		3,777		2,873		9,594

자료: 해외투자실(Overseas Investment Office)

다. 북섬의 오클랜드 지역에 대한 투자 가장 많아

외국인 투자의 지역별 분포는 북섬과 남섬에 골고루 분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 최대 도시이자 상공업 중심지인 오클랜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가장 활발하고 다음이 북섬의 동북부 지역인 베이오브플렌티로 알려져 있다.

남섬에서는 북단에 위치한 넬슨과 크라이스트처치를 포함하는 캔터베리 지역이 유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 주요 외국 투자 기업 (2007년~2008년)

- 2007년
 - 미국계 Pepsi가 NZD 2억5천만에 Bluebird Foods 인수(오클랜드)
 - 미국-호주기업 연합인 Sirius Finance가 NZD 1억7천만에 Blue Star Print Group 인수(오클랜드)
 - 영국 Antipodean사가 NZD 1억에 쇼핑센터 매입(오클랜드)
 - 호주 Alico HIT사가 NZD 2억2천만에 Strategic Investment Group 인수(오클랜드)
- 2008년
 - 홍콩 Cheng Kong Infrastructure Holdings Limited사의 Vector Wellington Electricity Network지분 100% 인수, 인수금액 NZD 785백만
 - 호주 Origin Energy의 Contact Energy 지분 일부 인수, 인수금액 NZD 52억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우리나라의 투자는 2008년 말 302백만, 기업형 직접투자는 아직 미미

우리나라의 대 뉴질랜드 투자는 80년대 이전의 기록을 갖고 있지만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부터이다. 2008년 말 기준 우리의 투자는 신고기준 420건에 302백만 달러이며 실제 투자는 1억 6920만 달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일반 기업의 해외투자라기보다는 이민 진출의 확대에 따른 이민형, 생활형 투자의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실제 투자액이 건당 평균 57만 2000 달러에 불과한 소규모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민 투자는 2000년 초 뉴질랜드 정부가 이민 문호를 개방, 현지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일종의 의향서만 제시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장기 사업지 비자 정책을 채택하면서 크게 증가했다. 2000년 이후의 투자가가 280건에 1억 5016만 달러로 전체 건수와 금액의 각각 66.6%, 88.7%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민형 투자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서비스업 등의 부문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연도별 대 뉴질랜드 투자 현황

(단위: US\$ 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1980-90	7	1,636,305	215,834
1991	3	4,949	44
1992	1	1,000	3,797
1993	0	0	280
1994	3	1,700	361
1995	6	5,326	2,025
1996	9	10,463	5,875
1997	5	70,889	2,952
1998	0	288	1,570
1999	1	356	417
2000	25	5,306	4,331
2001	67	14,776	7,891
2002	59	28,471	14,026
2003	32	33,357	33,855
2004	14	24,269	16,689
2005	9	24,169	24,828
2006	10	21,545	4,225
2007	35	38,218	32,202
2008	29	15,829	12,118
Total	420	302,556	169,209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나. 우리나라는 임업, 식품, 부동산 개발 등에 주로 투자

뉴질랜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초기에는 현지의 유리한 여건을 활용한 임업, 식품 분야에의 투자가 두드러진다.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목재 분야에 대한 투자가 주목을 받던 중 96년에는 국내 H사가 현지에서 목재생산을 위해 직접 조림사업에 투자했다.

이는 일조량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 많고 강수량 역시 풍부하여 나무가 비교적 빨리 자라는 환경을 잘 활용한 성공적 투자 프로젝트로 평가 받고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나라의 목재 관련 기업이 제 3국을 통하여 약 NZD 5천5백만 규모의 현지 미국계 MDF 제조 기업을 인수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부동산 개발 붐이 일면서 부동산 투자가 새로운 분야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직장인과 유학생 등을 위한 도심지역의 중소형 위주 아파트 건설 붐에 우리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

2005년에 우리나라 중견 건설업체가 오클랜드 시내에 토지를 직접 구입, 단일동의 아파트 건물을 건설하여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으며 현재 시내 중심 요지에 토지를 구입하고 50~60층의 고층 주상복합빌딩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최근에는 도심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교외지역에까지 주택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산업별 투자에 있어 건수로는 농림어업분야와 도소매업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업, 서비스업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 및 2007년에 비해 많이 줄어든 투자규모는 경기침체의 영향 및 까다로워진 이민심사로 인해 주로 이민형 투자에 집중되어 있던 투자가 줄어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별 대 뉴질랜드 투자 현황

(단위: 건, US\$ 천)

분류	2005		2006		2007		200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0	24,828	9	4,225	35	32,201	29	12,118
농림어업	0	2,959	0	1,316	8	6,505	5	2,231
광업	-	-	-	-	-	-	1	2,250
제조업	1	456	-	-	1	73	5	548
건설업	1	4,169	2	638	4	1,349	2	526
도소매업	5	5,228	2	82	4	485	5	4,240
운수창고업	-	-	2	607	4	3,416	-	-
숙박음식업	1	802	0	170	3	329	4	792
서비스업	1	895	1	934	3	8,378	4	919
부동산업	1	10,319	2	478	8	11,382	3	612

주: 건수가 0은 기존 신고 투자건의 추가 투자 경우임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지역별 투자 분포에 대한 세부 자료는 없으나 대부분의 투자가 뉴질랜드 내 최대의 도시이자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있는 북섬의 오클랜드와 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 분야에 따라서 주된 진출지역에 차이가 있는데 조림산업은 북섬 동부의 기스본 지역에, 수산업은 남섬 동부의 더니든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다. 뉴질랜드의 대한 투자는 2008년 말 기준 64건에 3810만 달러 수준

뉴질랜드의 대한 투자는 활발하지 못하며 2008년 말 기준 식품 제조, 전기 및 전자, 도·소매업 등의 분야에서 총 64건에 불과할 정도이다.

금액 기준으로도 대한 투자는 3810만 달러에 불과한데 이는 양국간 교역규모와 경제 여건에도 차이가 있으나 제조업이 부재한 뉴질랜드의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연도별 대한 투자실적

(단위: 건, US\$천)

구분	'62~'99	200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건 수	24	21	10	3	5	1	64
금 액	17,884	17,854	1,669	168	471	57	38,101

자료: 지식경제부

뉴질랜드의 대한투자 주요 기업 현황

회사명(한글)	외투기업최초등록일자	대표업종
화신전선	1990.02.06	전선 및 전기 제품 제조
메타텍스코리아	1999.11.02	산업용기초화합물도매업
캐대쉬	2001.04.06	무역업
지오스국제학교한국사무소	2001.02.07	유학 알선업
에이팩스	2003.01.07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이지웨이	2003.06.17	커피숍
(주)휴이나노바이오테크	2004.04.14	광학측정검사기 일체
레이디빅	2004.12.01	교육상담업, 무역
엘티케이	2005.05.02	전기전자제조
아이애플컨설팅	2005.03.28	어학원, 유학원, 컨설팅
뉴필리즈	2005.05.02	음식점업
애디폰코리아	2005.04.27	부가통신업, 자료처리업, 운영관련업
컴팩아시아	2005.07.28	농업용기계제조
비앤비	2005.09.15	의류업
엘엔티월드	2005.09.15	반도체, LCD부품 및 산업기계 제조, 무역
아니모테크놀로지	2005.11.11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 무역
새턴커뮤니케이션스	2006.09.20	홍보대행, 컨퍼런스
제스프린터내셔널코리아유한회사	2007.01.31	농산물 판매, 유통
라릭스인터내셔널	2007.01.08	건축자재 제조수출업
(주)씨앤엘	2007.06.01	열전반도체, 태양에너지접속장치개발생산 외
한창인터내셔널주식회사	2007.05.30	주류도매업 등
로지스넷	2007.05.31	포장이사업
태전중공업(주)	2007.06.29	강선구조물제조
와우영어학원	2007.10.11	외국어교육
세골목집	2008.02.05	음식점업(레스토랑)
주식회사 타겟오토	2009.03.25	자동차부품 수출업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기업정보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 유치 정책 개황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인 사업 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 투자(Land Investment)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토지 투자에 대해서는 민감 토지(Sensitive Land)인 해안 인접 토지와 호수, 도서, 농업용 토지 등과 수산 어획 쿼터 매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나. 투자 유치 관련 법규

1) 해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2005)

외국인의 뉴질랜드 내에서의 투자에 관한 관할 법으로서 이 법에 의해 해외투자실(Overseas Investment Office, OIO)이 개별투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외투자법의 세부 내용은 해외투자실 홈페이지(www.oio.linz.govt.nz) 내 Publication 항목에서 상세히 열람할 수 있다.

2) 해외투자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투자

토지 관련 투자 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 토지 총 면적 5 헥타르 초과 시
- 토지 총 면적 4,000 평방미터를 초과하고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일 때
- 토지의 크기와 상관 없이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일 때
- 토지의 총 면적이 4,000 평방미터를 초과하고 용도가 자연보존의 목적을 가진 경우,
- 공공위락 목적의 경우 또는 문화 유산이나 역사 보존 지역인 경우
- 해안선을 포함한 대지와 인접 토지의 총 면적이 2,000 평방미터를 초과할 경우

주식 투자 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 총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
- 주식 매입 금액이 NZ\$ 1 억을 초과하는 경우
- 회사 발행 주식 감정가 총액이 NZ\$ 1 억을 초과하는 경우
- 투자 대상 회사 주식 발행인의 자산액이 NZ\$ 1 억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 및 사업체 투자 시 투자 규모가 NZ\$ 1 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해외투자법에 의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 토지 투자 승인 절차(승인 필요 시)

□ 승인 신청서 작성 요령

별도의 승인신청 양식은 없으나 모든 신청서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아래의 주소로 송부해야 한다.

- The Manager
- Overseas Investment Office
- Land Information New Zealand
- Private Box 5501
- Wellington
- Fax: + 64 4 460 0111
- Email: oio@linz.govt.nz

모든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라 작성해야 한다.

신청인(Applicant)	-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및 주소지 - 신청인의 뉴질랜드 비자 사항 - 신청인의 사업 경력 또는 해외 투자 경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의 자산 상태
매각인 또는 회사 (Vendor/Target Company)	- 매각인 또는 회사의 이름, 국적 및 주소지 - 매각인의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에 대한 사항
투자(Investment)	- 신청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 -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 투자 예상가액에 대한 세부 설명 - 투자금액 조달 방법
토지(Land)	- 토지의 면적(헥터 또는 평방미터) - 법적 명세서 - 1 개월 이내 등기부 - 주소 및 지역을 포함한 위치 - 주변 지도 - 토지 소유권의 종류 - 매입 후 분할 예정인 경우 그에 대한 계획서
투자 이유 (Rationale for the Investment)	- 민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근거
제안서 근거 (Investment Criteria)	- 사업 경험, 재정적 능력, 인품, 영주권 취득 여부 및 영주 의사 등에 대한 설명

신청 수수료는 건당 최소 NZ\$ 8,200 이며 최고 NZ\$ 21,800 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신청서 접수 후 통상 10~12 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라. 토지를 제외한 사업체에 대한 투자

□ 승인 신청서 작성 요령

별도의 승인 신청 양식은 없으나 모든 신청서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아래의 주소로 송부해야 한다.

- The Manager
- Overseas Investment Office
- Land Information New Zealand
- Private Box 5501
- Wellington
- Fax: + 64 4 460 0111
- Email: oio@linz.govt.nz

모든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 및 내용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신청인(Applicant)	-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및 주소지 - 신청인의 뉴질랜드 비자 사항 - 신청인의 사업 경력 또는 해외 투자 경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의 자산 상태
매각인 또는 회사 (Vendor/Target Company)	- 매각인 또는 회사의 이름, 국적 및 주소지 - 매각인의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에 대한 사항
투자(Investment)	- 신청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 -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 투자 예상가액에 대한 세부 설명 - 투자금액 조달에 대한 설명
투자 이유 (Rationale for the Investment)	- 민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근거
제안서 근거 (Investment Criteria)	- 사업 경험, 재정적 능력, 인품, 영주권 취득 여부 및 영주 의사 등에 대한 설명

신청 수수료는 건당 최소 NZ\$ 2,100 이며 최고 NZ\$ 5,300 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신청서 접수 후 통상 10~12 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마. 투자 기업이 가지는 의무

1) 현지 법인

회계 자료의 제출: 재무보고법(1993)에 의거하여 재무재표가 완료된 날로부터 영업일 20 일 이내에 회계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회사 등기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례 보고서(Annual Return) 제출: 등록을 한 첫 해를 제외하고 모든 법인(지사 포함)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회사 등기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현지 법인의 등록된 사무실 주소
- 현지 법인의 서류 송달 주소
- 주식 자본금 요약
- 이사들의 인적 사항
- 과거/현재의 이사 명단
- 최종 연차총회일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 제출: 현지 법인은 연례 보고서 외에도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의 수신을 원하는 모든 주주들에게 발송해야 한다. 연차보고서는 회계 마감일 후 5 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필히 포함해야 한다. 또한 연차총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한다.

- 재무제표 사본
- 이사 보고서
- 감사보고(필요 시)
- 이사들의 인적 사항
- 연 수입이 NZ\$ 10 만을 초과하는 임직원의 수

기타의무사항으로는 세금, 연회비 납부, 회사명이 기재된 공식 문서 사용 등이 있다.

2) 지사

위 현지 법인의 제출 서류 중 연차 보고서 제출 의무를 제외하고 대부분 동일하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투자 진출 개요

외국법인(overseas company) 또는 개인이 뉴질랜드에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이 규정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에 한정된다.

- 뉴질랜드 내 현지 법인(자회사 포함) 등록(회사법 2 장)
- 뉴질랜드 내 지사 등록(회사법 18 장)
- 기존 외국 법인의 뉴질랜드 법인으로의 변경 및 등록(회사법 2 장)

뉴질랜드는 외국 기업 또는 개인의 투자 진출을 환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지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는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나. 현지 법인 설립 절차

회사명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등기소(Registrar of Companies)에 지정된 양식에 의거하여 회사명(이하, 상호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 설립 여타 회사와 상호명이 (거의) 같거나, 혐오감을 줄 경우 거절될 수 있다.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한 승인 신청도 가능하며 수수료는 NZ\$ 25 이다.

상호명 승인을 받으면 영업일20일 내에 회사 등기소에 NZ\$ 100의 수수료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법인 설립이 완료된다.

- 상호명 승인서
- 등록 신청서(신청인 인적 사항, 이사들의 인적 사항, 주주별 소유 주식의 수,
- 주사무소의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주주 및 이사 동의서(지정된 양식을 사용)
- 이사 확인서(모든 이사는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해야 함)
- 회사정관(의무 사항은 아니며, 미제출시 회사법이 정한 표준정관을 준용하는 것으로 봄)

회사 등기소장은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회사 설립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때부터 회사 명의로 영업을 가능하다. 부가가치세(GST), 법인세 및 현지 직원 급여 원천 공제 등을 위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자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납세자 번호(IRD Number) 신청은 회사 등기소에 법인등록 신청 시 함께 진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IRD 홈페이지(www.ird.govt.nz)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한 후 지역 세무서에 발송하면, 처리 후 납세 번호를 통보받게 된다.

설립 후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계 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 대주주(주식의 25% 이상 소유)가 외국의 모기업인 경우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Financial Reporting Act 1993 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재무제표를 결산일로부터 5 개월 20 일 이내에 회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연례 보고서(Annual Return) 제출 의무: 등록 첫해를 제외하고 모든 법인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회사 등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현지 법인의 등록된 사무실 주소
 - 현지 법인의 서류 송달 주소
 - 주식 자본금 요약
 - 이사들의 인적 사항
 - 과거/현재의 이사 명단
 - 최종 연차총회일
-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 제출 의무: 현지 법인은 연례 보고서 외에도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의 수신을 원하는 모든 주주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연차 보고서는 회계 마감일 후 5 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총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하는데 연차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재무제표 사본
 - 이사 보고서
 - 감사 보고서(필요 시)
 - 이사들의 인적 사항
 - 연간 수입이 NZ\$ 10 만을 초과하는 임직원의 수

다. 지사 설립 절차

지사라 함은 외국에서 설립된 외국 기업(overseas company)의 뉴질랜드 내 영업소로서 위의 현지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존재를 말하며, 현지 법인 설립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회사명 승인 신청: 지사 등록을 위해서는 회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상호명 승인을 받으면 영업일 10 일 내에 회사 등기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등록 신청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또는 첨부)되어야 한다
 - 모기업 명칭, 모기업 주주들의 이름과 자택 주소
 - 뉴질랜드 내 주사무소의 주소, 모기업의 권한 수임자 1 명 이상의 이름과 주소
 - 상호명 승인서
 - 뉴질랜드가 아닌 제 3 국에서 회사가 설립되었다는 증명
 - 모기업의 외국에서의 등록 서류, 정관이나 정관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회사 등기소장은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지사 설립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며, 이때부터 지사 명의로 영업이 가능하다.
- 국세청의 납세자 번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현지 법인과 동일하다.
- 설립 후 외국 기업의 지사도 현지 법인과 동일하게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회사 등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본사의 영문 재무제표(한글 재무제표일 경우 공증 번역된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연례 보고서 (Annual Return) 제출 의무: 등록 첫해를 제외하고 모든 법인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회사 등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사의 등록된 사무실 주소 및 서류 송달 주소
 - 주식자본금 요약
 - 이사들의 인적 사항
 - 과거/현재의 이사 명단
 - 최종 연차총회일
- 모기업에 관한 변경 사항 및 제출한 보고서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회사 등기소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라. 등록처 및 소요 비용

- 등록처: the Companies Office National Processing Center, Private Bag 92061, Auckland Mail Center, New Zealand
- 등록 신청 방법: 우편, 팩스는 물론 웹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함.
 - 웹사이트: www.companies.govt.nz
 - 팩스: (64-9)912-7787

마. 공장 설립 절차

공장 건설은 Resource Management Act(1991/RMA)를 준거법으로 하며, 건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 City Council(시청 또는 지역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RMA법은 세법과 더불어 가장 방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적용이 까다로운 바, 세밀한 주의가 요망된다.

City Council로부터 공장 건축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서 작성과 함께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 평가를 받아야 하며, 주변 주민으로부터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환경 평가 대상
 -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 소음 정도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
 - 연소 물질 배출 및 냄새 등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 상하수도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
 - 지역 경제 및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지역 문화 유산 등에 주는 영향

이 영향 평가가 완료되면 이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여 사전 공청회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며, 공청회를 갖게 될 경우 소집 절차 등의 이행으로 인해 약 2개 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공청회 결과에 대해서는 15일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다.

바. 기타 사항

뉴질랜드에서 현지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한 경우 국세청(Inland Revenue)으로 부터 납세자 번호(IRD)를 부여받아 발생한 영업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뉴질랜드에서는 상법상 지사와 개념이 다른 단순사무소(연락사무소 등)에 대한 개념이 없으나 부득이하게 연락 사무소를 유지해야 할 경우, 정보 수집이나 연락 업무 등은 가능하나 영업 활동은 할 수 없다

모기업이 송금하는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 직원의 장기 비자 획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현지 직원 채용이 불가능하여 현지 직원 채용 시 고용에 따른 경비 지출이나 환급 등 세무 문제가 발생되며, 이를 위해서는 납세자 번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상 연락 사무소라고 하더라도 지사나 현지법인 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법인 혹은 지사 설치 시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으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 형식적인 NZ\$ 1,000의 자본금으로 법인 등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에서의 투자도 부동산(토지) 취득, 소규모 자영업체의 개설 혹은 인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방식은 단독이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6. 투자입지여건

가. 투자 입지 여건 개황

뉴질랜드는 인구가 협소하여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조업 여건이 취약하다. 따라서 제조 분야에 외국인 투자는 극히 드물며 포트폴리오 투자와 자산 투자가 활발한 정도이다.

한국 기업의 제조업 투자도 식품 기업인 오뚜기가 유일한 정도인데 이는 투자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서도 높은 인건비와 제조업 부재로 인한 산업 연관 효과의 미약 등 투자 환경으로 인한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일부 목재 가공업체들이 뉴질랜드에서의 원목 가공 수입을 위해 진출한 바 있으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남태평양 참치, 오징어 잡이를 위해 일부 수산업체들이 남섬 지역에 진출해 있기도 하다.

투자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과정별 타당성 분석이 중요하며 특히 뉴질랜드는 환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자원관리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시장성 평가

- 투자 인센티브 및 주변 시장 여건, 인프라 등에 대한 종합 검토
- 정부의 규제 여부 및 기존 진출 기업에 대한 벤치마킹
- 경쟁 환경 및 인프라 검토 분석
-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분석
- 뉴질랜드 인증 제도 및 산업 표준 등에 대한 검토

2) 사업 계획 수립

- 뉴질랜드 유력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사업 계획서 작성 착수
- 규모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편의성, 경제성 및 접근 가능성을 고려한 교포 변호사 및 회계사 활용이 권장됨.

3) 사업 장소 입지 선정

- 입지 선정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 허가 용이성 여부
 - 개발 지역 여부 및 토지 획득 등에 따른 편의성
 - 인근 주민의 동의 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 가능성
 - 보건, 안전, 환경규제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침
 - 부동산 관련 세제
 - 노동력 확보 문제

4) 금융

- 은행 대출 가능성 및 비율 등
- 지주회사로부터의 현금 출자
- 주식 발행 등 자금조달 방법
- 금융 환경 전반에 대한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통한 사업 이해

5) 노무 관리

- 노동법 및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사전 이해
- 적정 고용 인력의 관리 및 소득세 등 세제 검토
- 교육 훈련 및 유용 인력의 확보 여부

나. 주요 지역별 특징 및 투자 여건

뉴질랜드는 제조업이 거의 발달하지 않아 지역별 산업 특성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으며 오클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소, 양을 중심으로 한 낙농 및 목축업이 발달해 있다.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에 따라 일부 지방은 해당 지역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하나 특별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단지 행정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정도에 그친다.

오클랜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투자할 경우 가장 유의할 부분은 노동력의 조달이다.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집중되어 있는 오클랜드 지역을 제외하고는 광활한 지역에 인구가 흩어져 있어 숙련된 노동 인력을 찾는 것이 사실상 거의 어려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투자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1) 오클랜드 지역(Auckland Region)

뉴질랜드 최대의 도시인 오클랜드가 속해 있는 지역으로 전체 430만의 인구 중 12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오클랜드를 이주 지역으로 정함에 따라 최근 5~6년간 부동산 투자 및 건축 붐이 일어난 바 있으나 현재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로 다소 주춤하는 상황이다.

세계 50위권의 오클랜드 대학 및 다수의 사립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육 산업 역시 크게 발달하였다.

2) 와이카토 지역(Waikato Region)

낙농, 목축업의 중심지로서 목장 및 관련 산업이 크게 발달해 세계 최대의 낙농 유통 기업이라 할 수 있는 폰테라의 유가공 공장 등이 위치해 있다.

3) 웰링턴 지역(Wellington Region)

행정 수도인 웰링턴 시가 위치해 있으며 시를 중심으로 관광 및 와인 산업이 발달하였다. <반지의 제왕>을 제작한 웨타 스튜디오가 위치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영화 산업 역시 각광받고 있다.

4) 캔터베리 지역(Canterbury Region)

뉴질랜드 제 2의 도시인 크라이스처치가 중심 도시이며 양을 중심으로 한 목축업이 발달해 있다. 인근에 퀸즈타운 등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위치해 관광 산업 역시 크게 발달해 있다.

7. 노무관리

가. 노동법 및 노동 시장

현 노동법(2003년12월4일 개정)은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협상을 강화하고,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노동자가 보호되고, 사용주가 기존의 고용 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특징 중 하나는 사업체가 매각될 경우에도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인데, 새로운 법안에 의할 경우 노동자는 이전 직장에서의 똑같은 조건으로 일자리를 승계할 권리를 부여 받게 된다. 해고될 경우 계약서에 해고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손해 배상금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다.

1) 기본적인 고용 여건

남한의 3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가 430만 명에 불과한 만큼 인력이 부족하다. 이를 아시아 및 남태평양 이민자들을 통해 해소하고 있으나 인건비 및 서비스 요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급 인력은 보수 조건이 보다 우수한 호주 및 미국 등지로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고급 인력과 단순 인력 사이의 노동 시장 차별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주택 및 건설 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경기 호조세가 유지되면서 숙련 노동 인력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임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정부 및 중앙은행도 이러한 변수가 물가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2) 고용 절차

뉴질랜드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10인 이하 회사 비율이 96%를 넘는다. 제조업은 취약한 반면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있는데, 신문광고나 취업 알선 전문 회사를 통해 채용하거나 일부 대기업은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직원 1, 2명 정도의 채용이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사내 문건(사내 E-메일, 사내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직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직원 채용 후에 통상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고용 계약 체결은 반드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노동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제도와 관행이 지배적임을 고려해야 한다.

3) 인력 수급

2009년 2/4분기 기준 뉴질랜드의 실업률은 5.8%로 1/4분기 5.6%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여파로 향후 7~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에 2002년을 시작으로 인구 순유입이 계속 감소하여 기업들의 경우 숙련된 노동 기술자들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이민 문호가 대폭적으로 축소되고 뉴질랜드인들이 보수 조건이 양호한 호주 등지로 이주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으나 최근 다시 이민이 늘어나면서 상황이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 외국인의 고용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뉴질랜드에 입국해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비자와 취업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뉴질랜드 입국을 위한 단기 비자는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으나 취업 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고용하고자 하는 피고용인이 특별한 경험과 기술이 있고, 뉴질랜드에서 피고용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취업 허가가 발급되는데, 그러한 노동력을 "뉴질랜드 현지 노동 시장"에서 구할 수 없을 때에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5) 임금 수준

2008년 말 기준 뉴질랜드 근로자들의 평균 주급은 NZ\$818 이며, 최저 임금은 2009년 9월 기준으로 시간당 NZ\$ 12.50 (약 US\$ 8.4) 이다.

6) 계속되는 최저 임금 인상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2006.3.27 성인 최저 임금을 시간당 NZ\$ 11.25 (청소년 최저 임금 NZ\$ 9.0)으로 인상한 바 있으나, 2008.4.1부터 성인, 청소년 구분 없이 일괄 NZ\$ 12.00로 인상하였으며 2009.4.1일에 다시 NZ\$12.50으로 인상되었다.

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복지제도 개요

뉴질랜드는 1930년대에 최초로 종합적인 사회복지제도를 수립했을 정도로 복지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사회적 약자와 실업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생계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광범위한 의료 혜택도 무료 제 공하고 있다.

현재 Work and Income이라는 기관과 IRD(국세청)에서 각종 수당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Work and Income은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실업자 등과 관련된 수당 지급을 담당하며, IRD에서는 중산층 이하의 세금 환급 및 소득 공제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지난 2005년 말에 있었던 총선에서 노동당 정부가 공약으로 발표했던 Working For Family라는 근로자 수당 지원 프로그램이 2007년 회계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중산층은 대 폭의 세금 혜택을 보게 되며 저소득층은 실질적인 수당의 증액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2) 주요 사회 보장제도

- 실업 수당(Unemployment Benefit): 16세 이상의 실업자에게 지급
- 노후 연금(National Super Annuation): 만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
- 가족 수당(Family Tax Credit; 이전의 Family Support에서 명칭이 바뀜): 만 18세 미만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부부 합산 연간 소득 NZ\$ 56,000~130,000 이하의 중, 저소득층에게 지급

2009/2010 회계연도 가족수당 지급기준

만13세 이하 기준 자녀 수	연간소득 상한 금액(세전)
1 명	\$74,000
2 명	\$89,000
3 명	\$105,500
4 명 이상	\$120,500

자료: 뉴질랜드 국세청

3) 출산 휴가 및 수당

현재 출산 휴가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 노동자에게 14주까지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주당 NZ\$ 372.12의 출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Department of Labour 웹사이트에서 입수 가능하다.

이외에도 뉴질랜드에는 학생 수당(Student Allowance)을 비롯해 양로 수당(Rest Home Subsidy), 고아 수당(Orphan's Benefit), 미망인 수당(Widow's Benefit), 장애인 수당(Invalid's Benefit)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다.

근로 수당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은 다음과 같다: Department of Work and Income New Zealand, IRD, Department of Youth and Family Services

4) 의료보험제도

뉴질랜드는 사회보장 선진국답게 의료보장도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제도 가입은 의무가 아니며 가입 여부 및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고, 가족 단위로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종류 및 옵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시 입원, 수술만 보장하는 사보험(연간 1인당 NZ\$ 200~300)에 가입하고 있다. 일부는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NZ\$ 1,000 이상의 상품에 가입하고 있기도 한데, 전반적으로는 가족 단위로 NZ\$ 1,000~2,500 정도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료는 성인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보험 혜택은 가입 이전의 질병은 해당되지 않으며 새로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5) 국가 부담의 의료 보장 체계 확립

뉴질랜드는 국립병원에서의 치료 비용, 사고 피해자의 치료 비용, 임신 기간과 출산 시의 모든 비용, 6세 이하 어린이의 가정의 방문 치료 비용, 유아, 초등학생을 포함한 14세까지 기본 치과 치료 비용 등은 국가 부담으로 무료로 가능하다.

교통사고, 부상, 화상, 골절 및 기타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각 지역에 소재한 응급 전문 기관(Accident and Emergency Clinic)에서 치료 가능하며, 비용은 정부기관(ACC)이 일괄 부담하는 체제를 유지한다.

의료 체계는 앰بول런스를 이용한 응급 환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경우 가정의(GP: General Practitioner)의 검진을 거친 후 2차 진료 기관으로 가게 되어 있다.

국립병원의 진료 비용은 영주권자 이상의 경우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는데 입원 시 진찰비, 치료비, 입원비 등은 무료이다. 사립병원은 국립병원보다 다소 규모가 작고 서비스가 좋지만 개인 부담이며 치료 비용이 비싸 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한 이용률이 아주 낮다.

뉴질랜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무상 치과 진료를 시작한 최초의 국가로서, 13세까지의 모든 아이들은 학교의 치과 간호사로부터 무료로 정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13세에서 18세의 미성년자들은 국가의 부담으로 치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8. 조세제도

가. 세제 개황

뉴질랜드의 조세 제도를 총괄하는 기관은 뉴질랜드 국세청(IRD)이며, 주요 세금으로는 법인 및 개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들 수 있다.

매년 4월 1일에서 익년 3월 31일을 기본 세무 회계 연도(이하, 세무 연도)로 하여 경상 비용을 제외한 순수 기업 이윤 및 부동산 거래 등에 따른 이윤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세무 연도의 제 4월, 제 8월 및 제 13월에 추정 세액(Provisional Tax)을 선납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세무 연도의 제 13월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IRD 승인 아래 기업별로 세무 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세무 연도 13월은 차 세무 연도 1월을 의미한다.

나. 조세 종류

법인 소득세(Corporate Income Tax)는 33%였으나 2008.4.1부터 30%로 인하했으며, 외국 투자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세율은 현행 연소득 NZ\$ 14,000까지 12.5%, NZ\$ 48,000까지 21%, NZ\$ 70,000까지 33%,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38%를 부과하는 누진 제도를 시행 중이다.

상속세는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지만 증여세(Gift Tax)는 연간 NZ\$ 12,000 이상은 IRD에 신고해야 한다. NZ\$ 27,000 이상의 경우 증여 금액에 따라 5~25%까지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등의 배당금에는 33%의 세율이 적용되며 예금 이자 소득은 개인의 연간 총소득 금액과 합산되어 개인 소득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금신고번호(IRD 번호)가 없는 경우 무조건 39%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GST)는 12.5%이며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가 종업원에 대하여 급여 이외의 부가급부 제공 시(예를 들면 업무 목적 외의 차량 제공 시, 원가 이하 금액으로 자사 제품 제공 시 등) 피고용인 한 명당 분기별 NZ\$ 200 또는 전체 피고용인에 대해 연간 NZ\$ 15,000을 넘기는 금액에 대해 64%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비거주 과세 보류자일 경우 뉴질랜드와 이중과세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시민은 10%, 그렇지 않으면 15%가 징수되며, 비거주 과세 보류자가 아닐 경우 2%가 징수된다. 비거주자가 배당금을 받는 경우도 비거주 과세 보류자로 분류된다.

다. 높은 법인세 부과가 투자 장애 요인

2008년 OECD의 발표에 의하면 뉴질랜드의 법인세율(2008년 기준 30%)은 OECD 평균인 26.2%보다 높아 투자 및 기업 활동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OECD 주요 국가 법인세 비교

상위 순위	국가	세율%	하위 순위	국가	세율%
1	스페인/미국	35	1	스위스	8.5
3	프랑스	34.43	2	아일랜드	12.5
4	벨기에	33.99	3	헝가리	16
5	이탈리아	33	4	아이슬란드	18
7	영국/호주/뉴질랜드	30	5	슬로바키아	19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금융 시장 개황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 The Reserve Bank of New Zealand)이 통화의 발행과 금융 및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재무 관리 및 재정 정책은 재무부(Treasury)에서 관장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경기 과열 및 인플레이를 예방하기 위해 2004년 6차례, 2005년 3차례 등 9차례 걸쳐 기준 금리(OCR)를 1.75% 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에는 부동산 시장 급락과 고물가 및 세계적인 경기 위축에 따라 금리를 2차례 걸쳐 7.5%로 낮췄으며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다섯 번에 걸쳐 금리를 5% 추가 인하하여 2009년 9월 기준금리는 2.5%를 나타내고 있다.

뉴질랜드 금리의 변동 추이(2009년 9월 기준)

변동일	변동폭(%포인트)	기준 금리(%)
4.30	-0.5	2.50
3.12	-0.5	3.00
2009. 1.29	-1.5	3.50
12.04	-1.5	5.00
10.23	-1.0	6.50
9. 11	-0.5	7.50
2008. 7. 24	-0.25	8.00
2007. 7. 26	0.25	8.25
6. 07	0.25	8.00
4. 26	0.25	7.75
3. 08	0.25	7.50
2005.12. 08	0.25	7.25
10. 27	0.25	7.00
3. 01	0.25	6.75
2004.10.28	0.25	6.50
9. 09	0.25	6.25
7. 29	0.25	6.00
7. 01	0.25	5.75
4. 29	0.25	5.50
1. 29	0.25	5.25

자료: Reserve Bank of New Zealand

한편 뉴질랜드의 5대 시중 은행은 모두 호주 등 외국계이며, 주요 상업은행은 BNZ(Bank of New Zealand), ASB Bank, ANZ Banking Corp., National Bank, Westpac Banking Corp. 등이 있다.

뉴질랜드 자본으로 운영되는 은행은 2001년에 설립된 Kiwi Bank가 유일한데, 비교적 성공적으로 착근(着根)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으로는 국민은행이 96년 5월 사무소를 개소하고 97년 9월부터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의 금융 기관으로는 Private Savings Bank, Building Society, Merchant Bank, Finance Companies 및 Stock and Station Agent 등이 있다.

나. 은행 제도

뉴질랜드 은행은 Reserve Bank Act 1998에 따라 허가 받은 상업은행이 중심이 되며 이들 은행은 registered banks로 중앙은행 지준율 염수는 물론 외환 신고 및 업무 감사 등을 받게 된다.

뉴질랜드 금융 산업은 1980년대 중반에 대폭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단행된 바 있다. 그 이후 자본 시장이 급속히 활성화 되었으며 증권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다. 또한 선물 옵션이 도입되었고 이자율과 환위험 방지에 기여하게 되었다.

최근 리먼 브러더스 등 미국 투자 은행들의 몰락에 따라 뉴질랜드 은행들도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뉴질랜드 금융 시스템은 안전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지만, 2008년 초 예금 지급 유예 신청을 낸 도체스터 बैं크와 같은 부실이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2008년 말부터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도 은행 살리기라는 데 맥락을 같이한다.

다. 기타 신용 기관

보험업으로 AMP, AXA(구 National Mutual), Colonial, NZ Insurance, Tower Corporation, Prudentials 등의 보험 회사들과 소규모의 신용 대출 회사들이 있다.

라. 변동 환율 제도 운영

뉴질랜드는 1985년까지 고정 환율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후 외환 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바스켓 방식의 변동 환율 제도로 변경하였다. 외환 시장도 완전히 개방하여 현재는 외환 관리상의 제약이나 국내 기업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뉴질랜드 달러화 가치의 변동이 심하여 2004년부터는 중앙은행이 일정 수준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2001년만 하더라도 미달러화의 42% 수준에 불과했던 뉴달러화가 2008년 3월에는 80%를 넘어섰다가 금융위기와 함께 폭락세를 보였다. 2009년 8월에는 NZ\$1=US\$0.67 수준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 달러화의 변동 추이(연도 말 기준)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8*
NZ\$1=US\$	0.42	0.51	0.65	0.71	0.70	0.69	0.77	0.71	0.67

주: * 2009.8월 월평균 대미환율 (2009년 9월 14일 현재 NZ\$1=US\$0.70)

자료: Reserve Bank of New Zealand

마. 은행의 경쟁력

뉴질랜드의 5대 시중 은행은 모두 외국 은행이며 최근 정부 주도로 KIWI BANK가 설립됐으며 외국계 자본의 투자가 활발한 상황이다. 뉴질랜드 은행들은 위기 발생 시 외부 도움이나 개입 없이 자력으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S&P 보고서도 뉴질랜드는 아-태 지역에서 호주, 싱가포르와 함께 은행 리스크가 가장 낮은 국가로 발표한 바 있으며,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인 영국의 피치(Fitch) 사도 뉴질랜드의 외화 표시 채권 신용 등급을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세계 3대 신용 평가 기관인 피치는 조정 사유에 대해 뉴질랜드가 국제 상품 가격의 변동에 크게 노출되어 있지만 2007년 중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했으며, 지속적인 공공 부문 개혁과 민간 부문 투명성 및 효율적인 외채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높은 저항력을 갖춘 점을 조정 배경으로 밝힌 바 있다.

바. 외환 시장 개입을 천명한 새로운 외환 제도 전환

변동 환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달러화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RBNZ: The Reserve Bank of New Zealand)은 필요할 경우 중앙은행이 직접 외환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외환 정책을 2004. 3. 17 발표했다.

중앙은행은 지난 1985년 자유 변동 환율 체제로 전환한 이후 한번도 외환 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개입은 중대한 정책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2003년 20% 절상에 이어 2004년에도 가파른 절상 추세를 이어오던 뉴질랜드 달러화도 외환 정책의 변화와 함께 강세가 일시 둔화된 바 있다.

사. 자금 조달

1) 주식 시장(NZX)을 통한 자금 조달

NZSX(New Zealand Stock Market):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으며 2009년 9월 기준 모두 173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2009년 9월 15일 기준 시가총액 NZ\$526억)

NZAX(New Zealand Alternative Market): 중소 규모 회사의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시장으로서 NZSX의 상장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회사 등을 상대로 한다. 2009년 9월 기준 34개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다. (2009년 9월 15일 기준 시가총액 NZ\$6.6억)

NZDX(New Zealand Debt Market): 채권 시장으로 2009년 9월 기준 총 120개 사의 채권이 등록되어 있다.

2)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

전국의 은행 및 제2금융권을 통한 다양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중앙은행의 연속된 금리 인하로 은행권 담보 대출 금리가 6~8%로 상당히 내린 상태이나 기업 신용 대출은 여전히 14~15% 대를 유지하고 있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가. 협소한 시장 규모

인구가 430만 명에 불과해 수입, 수요가 크지 않으며, 인구가 남한의 2.7배에 달하나 남섬과 북섬에 흩어져 있어 품목별 마케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로 제조업이 취약하고 소비재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 구조는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무역 의존도가 50% 이상이고 개혁 개방을 통한 자유 무역을 추구하고 있다.

나. 소비자 특성

1인당 국민 소득은 US\$ 25,000~30,000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하지만 미국 달러의 약세로 초래된 수치인 데다 최고 39%에 이르는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낮아 실질적인 구매력은 제한적이다.

검소하고 보수적이며 실용적인 소비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유행이나 고가품을 찾는 경향이 덜하고 적정 가격의 품질이 좋은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며 구매한다. 중고가 상품을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또는 부활절과 같은 특수 세일 시즌을 최대한 활용하여 싸게 사려는 경향이 보인다. 일반 시민들은 중저가 실용적인 제품을 선호하고 첨단 신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구매력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 한국 상품 인지도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IT, 전자 및 기계 등을 중심으로 우리 제품에 대한 우수성과 경쟁력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 소비자들이 가격 위주의 실속 구매를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높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진출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인구가 적어 수입 규모가 작다는 점이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라. 치열한 경쟁 구도 형성

영업 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지만 수시로 폐지되며, 광범위한 중저가 제품 시장과 고가의 유명 브랜드 제품 시장이 공존하고 있다. 대부분 공산품들이 무관세나 저율 관세의 영향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어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전통적으로 호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최근 미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 및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저가품 시장도 급속히 늘고 있다.

마. 거래 방식, 제품 선호도 및 상관습

인구와 시장 규모 등 제반 여건으로 인해 다품종 소량 소액 주문이 주종을 이루며, 주문량이 적은 반면 주문 횟수가 비교적 많고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는 특색을 보인다. 대금 결제도 비용 절감을 위해 L/C 방식보다는 T/T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보수적 상관습을 갖고 있으나, 특별히 유의해야 할 상관습은 없다.

바. 유통 구조

과거의 전문 수입상→중간 도매상→소매상의 정형화된 구조에서 최근 대규모 수입상들이 일반 소비재를 직접 수입하여 대규모 직판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1회 주문 단가가 높은 품목(산업용 원자재 및 설비 등)은 소규모의 수입 업체들이 수출 기업들이 요구하는 최소 주문량을 맞추지 못해 극소수 수입상들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다.

2. 물가정보

(1 NZ\$ = 0.72 US\$ / 2009년 12월31일 기준 뉴질랜드 중앙은행)

구분	항목	가격 (NZ\$)
식품류	쌀 1kg (Sunrice Medium Grain Rice Calrose White)	3.75
	계란 12개 (Size 7)	4.99
	소고기 등심 1kg	27.99
	돼지고기 등심 1kg	21.99
	우유 500 ml	1.70
	식용유 1L (Azalea Grape Seed Oil)	9.65
	생수 1L (Waiwera Water Still)	3.33
	맥주 (하이네켄 355ml, 6팩)	13.99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11.50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4.90
	김치찌개 1인분	12.00
의료비	의료보험료(4인 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3600.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x, 몸살감기 내과초진)	75.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30.00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31,990.00
	무연휘발유 1L (91 Shell)	1.67
	자동차 등록비	388.06
	자동차보험료 의무 (2000cc신차, 운전경력 10년, 대인/대물커버, 1년)	834.95 (의무보험 없음)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12.00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1.40
	시내버스기본요금	1.60
	택시 기본요금	2.40
통신비	시내전화 요금 (3분)	0.75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0.75
	휴대전화 요금 (월 표준 1분)	1.39
	인터넷 월 사용료 (ADSL 기준) 1GB	80.0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3,300.00
교육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없음(기부금200.00)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없음(기부금300.00)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없음(기부금600.00)
숙박	특급호텔 (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250.00
	중급호텔 (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20.00
임금/노무	대졸 초임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3,00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 급여 초임)	2,80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 급여)	5,0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법적으로지정되지 않음, 개인이 고용주와 협상)	-
	출산휴가일수	70일 (14주)
	연간 국경일수	11 일
	주5일 근무 여부	5일 근무
기타	드라이 크리닝 (정장 1벌 기준)	20.00

주1: 호텔 요금은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성수기 요율은 정상 요율과 할인 요율의 중간 수준이라고 보면 무난함.

주2: 의료보험금은 개인별 건강상태, 나이, 흡연 유무에 따라 편차가 큼.

3. 바이어 발굴

가. 기업 디렉터리를 활용한 바이어 발굴

가장 일반적이거나 가장 강력한 바이어 발굴 방법은 디렉터리를 통해 1차 잠재 바이어를 찾는 것이며, 이를 D/B화하고 텔레마케팅을 전개한다.

수시 업데이트 되어 온라인 제공되는 기업 디렉터리를 활용해 다양한 품목 및 분야의 바이어를 발굴하여 시장 개척단 및 지사화 등 무역관 사업에 활용한다.

- Yellow page: <http://www.yellowpages.co.nz>
- Access New Zealand: <http://www.accessnz.co.nz>
- UBD: <http://www.ubd.co.nz/>
- Kompass: <http://www.kompass.com>

나. 신문 및 잡지 광고

시개단 상담 주선 등의 경우, 텔레마케팅을 통해 바이어를 발굴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문 및 잡지, 교포 신문 등을 통해 바이어를 찾기도 한다.

전국을 커버하는 일간지로는 The New Zealand Herald(www.nzherald.co.nz)가 유일하며, 광고료는 일반 지면 10Cmx15Cm 크기의 광고료가 US\$ 1,500 수준이다.

교포 신문으로는 잡지를 포함하여 10종 정도가 있으나, 뉴질랜드 타임즈(교포 신문, www.nzkoreatimes.co.nz)가 가장 활발하다.

다. 기존 고객 등 개별 바이어 접촉

시개단, 지사화 등 무역관 사업을 통해 관리되는 바이어를 직, 간접적으로 접촉하여 바이어를 발굴하고 이를 D/B로 구축하며, 매년 업데이트하여 활용한다.

고객 관리 및 신규 수요 발굴 그리고 새로운 거래선을 소개받는 등 복합적인 업무 효과를 도모할 수 있고 일정 수준 검증된 고객이라는 점에서 유용하다.

라. 전시회 참관/참가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 및 동향 그리고 바이어의 요구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전시회를 참관하여 잠재 바이어를 발굴하기도 한다.

마. 주요 기관 접촉을 통한 바이어 발굴

다음과 같은 경제 유관기관 및 단체 접촉을 통해 바이어를 발굴하기도 한다.

ID	Organization & Association	Website
1	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	www.nzte.govt.nz
2	Investment New Zealand	www.investnewzealand.govt.nz
3	Employers & Manufacturers Association	www.ema.co.nz
4	Waikato Chamber of Commerce	www.waikatochamber.co.nz
5	New Zealand Agritech	www.agritech.org.nz
6	Deer Industry New Zealand	www.nzgib.org.nz
7	FashioNZ	www.fashionz.co.nz
8	Fonterra	www.fonterra.co.nz
9	NZ Marine	www.nzmarine.com
10	Meat and Wool New Zealand	www.meatnz.co.nz
11	New Zealand Winegrowers	www.nzwine.com
12	Organic Products Exporters	www.organicsnewzealand.com
13	New Zealand P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www.pine.net.nz
14	Plastics New Zealand	www.plastics.org.nz
15	Seafood Industry Council	www.seafood.co.nz
16	Software New Zealand	www.nzsa.org.nz
17	Textiles New Zealand	www.textilesnz.org.nz
18	Turners and Growers & ENZA	www.turnersandgrowers.com
19	New Zealand Trade Centre	newzealandtradecentre.com
20	Canterbury Employer Chamber	www.cecc.org.nz
21	Automotive Parts & Accessories Association	www.apaa.co.nz
22	Business NZ	www.businessnz.org.nz
23	New Zealand Food & Grocery Council	www.fgc.org.nz
24	New Zealand Ice Cream Manufacturers Association	www.nzicecream.org.nz
25	Packaging Council of NZ	www.packaging.org.nz
26	NZ Juice & Beverage Association	www.nzjba.org.nz
27	NZ Bio	http://www.nzbio.org.nz
28	Marine Industry Association	http://www.nzmarine.com/
29	Boating Industry Training Organization	http://www.nzmarine.com/
30	Auckland Chamber of Commerce	www.b-vital.com

바. 기존 고객 대상 발굴

KOTRA 오uckland 무역관 홈페이지 인과이어리 정보를 활용하여 국내 고객 및 해외 고객을 발굴하거나 거래 알선에 활용한다.

사. 전시회 정보를 활용한 바이어 발굴

전시회 개최 기관을 통해 참가 업체를 확인하고 품목별로 이들 업체를 분류하여 업무에 활용한다.

- DMG world media (NZ) Ltd (뉴질랜드 전시회 주관업체)
 - 주소: Level 1, 99/107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PO Box 9682, Newmarket, Auckland, New Zealand
 - 전화: 64-9) 976 8300
 - 팩스: 64-9) 379 3358
 - E-메일: info@nz.dmgworldmedia.com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문화적 금기 사항

영국 이주민에 의해 형성된 사회로 종교나 관습에 기초한 특별한 금기 사항은 없다. 영국 등 서구 사회의 기본적 문화 예절과 상거래 관행이 통용되고 있으며 세일즈 출장이나 상거래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철저한 신용 사회라는 점도 서구 일반의 경우와 대동소이하여 시간 엄수 및 약속의 성실한 이행 등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신뢰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구인들은 가족 중심적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에 약속을 잡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삼가야 한다. 평일 저녁식사를 접대할 경우에도 주의를 요한다.

나. 수입 관행- 현금 거래 선호

통상의 수입 절차 및 관행이 일치하며 대금 결제 방식은 L/C보다는 T/T로 결제하는 것을 선호한다. T/T결제는 소액 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심지어 수출 업체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겠다는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할 하겠다는 수입상도 있다.

샘플 주문, 테스트 오더 등의 경우 최근 Kotra의 소액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인 KOPS 시스템을 이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KIWI(뉴질랜드 인들을 통칭하는 언어) 수입상들이 L/C 대신 T/T 송금을 원하는 이유는 L/C 개설 비용(거래 금액의 0.3% 내외의 수수료, 대개 거래 은행과 수수료 상한선에 합의하며 상한선은 대체로 NZ\$ 300 내외임)을 절약하기 위해서인데, 거래 상대방과 최소한의 신뢰가 형성되면 L/C 개설에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는 경향이 강하다.

T/T 거래 방식에 커다란 불안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일상적 거래에서 신용 위주의 거래가 정착되었기 때문인데, 사전 일정 금액을 송금하고 2차 분할 송금은 마지막 선적 물품의 도착과 인도 시 잔액을 지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나름대로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

다. 거래 유의 사항

우리 제품을 경험해 보지 못한 바이어들은 아직도 한국산을 중국 혹은 동남아 제품과 유사하게 보는 경향도 없지 않다. 일부 고가의 브랜드성 제품을 제외하고는 저가이면서 품질 보증이 되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고, 실용적이며 사치에는 관심이 없고 실생활에 대한 기여도를 거래의 우선 요소로 여긴다.

최근 들어 자동차, 가전 제품들의 소개로 가격, 품질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사후 서비스 미흡, 소량 주문 기피, 납기 지연 및 커뮤니케이션 미흡 등으로 가격 및 품질 이외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경쟁력이 일본이나 대만 등에 뒤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

뉴질랜드 시장을 호주와 묶어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규모는 작지만 뉴질랜드를 별도의 시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한국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으로 현지 업체와 직거래하는 경우도 점증하는 추세이다.

라. 비즈니스 에티켓

시간을 엄수하고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적인 서구 생활 방식과 비즈니스 사고가 거의 그대로 통용된다. 문화 혹은 관습과 관련되어 요구되는 특별한 에티켓은 없다.

마. 상담 유의 사항

기존 거래선이 있는 바이어를 접촉할 경우에는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된다. Sample, 가격, 품질 보증 등 상당히 까다로운 사항들을 요구하기도 하나 원칙에 어긋날 정도는 아닌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침 일찍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3~4시경 끝내고 남은 오후 시간을 즐기려 하는 경향이 있고, 휴가 기간이나 휴일을 방해 받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확실하여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바. 상담 체크 포인트

1) 바이어를 배려한 상담 준비

- 회사 PR 자료 준비(영문): 회사 규모, 연혁, 재정 상태, 생산 능력 등
- 카탈로그 및 견본 준비
- 복장: 상담 복장은 정장이 원칙
- 명함
- 오퍼 시트, 인보이스 양식 준비
- 메모지

2) 바람직한 바이어 접촉 방법

□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성의 있는 자세로 상담에 응하고 바이어와 눈높이를 조절하며 의사 소통을 통한 우호적인 분위기와 신뢰감을 조성한다. 현지의 럭비 관련 대화가 유익하다.

□ 시장 특성 인지 및 신뢰

상담 시 뉴질랜드가 소량 소액 다품종 시장임을 감안하여 최소 주문량 및 바이어 요청 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어야 한다. 상담 이후 바이어의 문의 사항은 회신 기한을 준수하여 답하며, 바이어와의 상담 시 약속했던 사항은 확실하게 이행하여 거래의 기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T/T 거래 방식 선호

소액 주문으로 대금 결제 시 L/C가 아닌 T/T로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에 설명한 L/C 수수료 문제로 실제로 T/T의 이점을 살린 거래가 상당히 많으며 선호도도 매우 높다.

□ 가격 산정 및 적기 배송에 주의

Wood Packing 또는 Pallet을 사용할 때 수출 전 사용 목재에 대한 방역 검사가 필수 조건이므로 가격을 산정할 때 반드시 소요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선편이 월 2~3회 이므로 딜리버리 스케줄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유럽 업체와 거래 중인 업체와 상담 시 기존 거래선을 변경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아 품질, 납기 등에 대한 확신과 엄수가 필수적이다.

시장 조사 시 소매 가격이 높은 것은 유통 기간이 길고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소매 가격을 기준으로 수출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것이 상담에 도움이 된다. 일반 제품의 소매 가격은 수입 가격의 4배 수준임을 기억해두면 좋다.

□ 바이어 접촉 방법 및 사후 응대

많은 한국 업체들이 접촉 방법의 미숙으로 거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어 입장을 고려한 접촉 방법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바이어에게 제품 검토를 요청한 경우 E-메일이나 단순 레터보다는 카탈로그 등이 포함된 세부 자료를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 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각종 거래 조건, 제품 설명서, 샘플 등 제품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거래 희망 여부를 팩스, 전화, E-메일 등으로 문의하는 편이 좋다.

□ 침착한 대응

뉴질랜드 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1~2명의 직원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맡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구매 담당자가 해외 출장, 휴가, 외출 등으로 상당 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한국 업체가 보낸 서류도 자신들의 계획에 맞춰 검토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당시에는 필요성이 없어 회신하지 않았더라도 장시간이 소요된 후에 연락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독촉할 경우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 정확한 담당자를 알게 되면 관련 자료를 송부한 후 회신이 없더라도 좀 더 기다리거나 우호적인 안부 편지를 보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A/S 및 신뢰성 유지

A/S나 클레임 해결 등 한국 업체들의 사후 관리는 현지에서 제기되는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소량 주문에 따른 부수적인 영향으로 판단되나 신뢰도 저하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역으로 A/S나 클레임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신뢰도가 높아지면 거래 물량 확대 등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인구 400만의 소규모 시장

뉴질랜드는 인구가 430만에 불과한 소규모 시장이고 그 중 상공업이 가장 발달한 오클랜드 광역권은 인구가 120만 명 수준이다. 뉴질랜드 회사의 96% 정도가 직원 5명 이하인 소규모 비즈니스로 운영되며 1차 낙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3차 서비스 산업(관광, 유학)이 발달한 반면 상대적으로 2차 제조업은 부진한 상태이다.

인구 규모가 적어 공산품 수요도 적으므로, 소량 다품종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나. 보수적 성향

일단 좋은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는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 값싼 단가를 이유로 여기저기 거래처를 옮기기 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 동안 신뢰를 쌓아온 기존 파트너와의 거래를 지속하고 싶어한다.

이에 따라 이미 거래처가 있는 업체와 신규 거래 관계를 형성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며 Sample, 가격, 품질 보증 등 까다로운 사항들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다. 저가품 선호

국민 소득에 비해 세금 공제 후 가구당 가처분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저가품의 시장이 발달했다. 통계 수치상 1인당 국민 소득이 US\$ 25,000~30,000에 달하나 소득세가 최고 39%에 달해 가처분 소득은 많지 않으며, 검소하고 실용적인 생활 태도상 중저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라. 소비재 특수

소비재의 구매 시즌은 12월의 성탄절 특수와 4월의 부활절 특수가 있으며 선물용품, 의류, 장난감류 및 전자 제품 등은 계절적인 수요에 많이 좌우된다. 특수 기간 중에는 30~50%의 할인 판매가 일반적이다.

마. 결제 방법으로 T/T 선호

비용 절감을 위해 대금 결제 방식은 L/C 보다는 T/T 를 선호한다. 심지어 수출상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수입상도 있다. 하지만 첫 거래일 경우, L/C 를 오픈하는 것을 권장한다.

바. 철저한 회사 및 제품 소개 자료 구비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회사 영문 카탈로그, 영문 홈페이지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미리 준비하여 보여주는 것이 좋은 인상을 준다. 대부분 한국 제품하면 유럽이나 일본 제품보다는 품질은 떨어지지만 가격에서 경쟁력이 있고 중국 제품보다는 가격은 높지만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보다는 품질 위주로 초점을 맞추어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회사 대표보다는 담당자와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

중, 상 규모의 회사에서는 담당자가 구매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직책보다는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여 제품의 장점을 설득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반면 규모가 작은 기업과 접촉을 할 때는 Managing Director 혹은 General Manager 와 직접 접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에서 업무의 분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대표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담당자 부재 시나 휴가 시에는 업무 진행이 중단되는데 뉴질랜드에서는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심지어 관공서에서도 담당자 부재 시에는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쓰레기 압축 기계 전문 생산업체 K사의 사례

가. 뉴질랜드 현지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국내 K 사는 쓰레기 압축 기계 전문 생산업체로 국내의 우수 기업과 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고, 우리 KBC에서는 뉴질랜드 쓰레기 처리 정책 및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정보를 업체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당시 뉴질랜드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는 있었으나 효율적인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른 처리 비용의 증가로 쓰레기 압축에 관심이 일고 있었다. 이런 현상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하고 있던 중 세 명의 현지 바이어들과의 연락에 성공하였으며, 수차례의 상담 및 협상을 통해 이들 중 K 사의 요구에 따라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바이어를 발굴하여 2006년 6월 사이버 상담을 통해 양 업체 간 첫 만남을 성사시켰다.

나. 현지 시장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AS

첫 상담 이후 K 사의 제품에 큰 관심을 보인 바이어는 곧바로 샘플 주문을 내었고 K 사도 신속하게 주문에 응하였다. 샘플을 받아 본 바이어는 쓰레기 압축 기계가 뉴질랜드 시장

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신하였고, 현지 실정에 맞게 안전 장치의 강화 등을 요구하여 현지화에 성공한 제품을 새로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은행 지급 보증서 수령 및 샘플 기계 이상으로 인한 AS 처리 등 양사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KBC가 중간에서 거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며 현지 바이어의 홍보를 돕던 중 양사 간 1차 선적분에 대한 계약이 성사되어 10월 초 20대의 압축기가 오uckland에 처음으로 도착했다.

다. 성공적인 시장 진입

이와 같은 성공에는 한국 K 사의 적극적인 시장 개척 의지와 바이어의 요구에 누구보다 빠르게 대처하는 결단력이 큰 몫을 하였으며 무엇보다 여타 외국의 압축기보다 가격 및 품질에서 뛰어난 우수한 제품의 개발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뉴질랜드의 쓰레기 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현지 실정 및 법규에 맞는 기계의 개량과 바이어와의 긴밀한 협력이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내는 데에 큰 몫을 했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이주 정착 개요

2002년 11월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이민법이 개정되어 외국인 이민이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한국 교민 수는 2009년 4월 기준 약 3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1) 외국인 투자 이민의 제한 추세

2007.6.6 발표된 신 투자이민법은 2005년 6월 발표되었던 이민법보다 실질적인 투자 금액을 더 올림으로써 사실상 투자 이민의 문호를 더 좁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7년에 발표된 투자이민법에는 모두 세 종류의 카테고리가 있다.

- 먼저 Global Investor 카테고리는 투자 금액만 무려 NZ\$ 2,000만(최소 실제(Active) 투자 금액이 NZ\$ 500만)으로 4년 이상의 사업 경력이 요구됨. 그러나 IELTS 영어 시험이 면제되고, 최소 정착 자금과 나이 제한 역시 없으며 다만 전체 기간 중 매년 20% 이상의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기존 투자이민법과 또 다른 점은 예치 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1년 줄어든 것임.
- 다음으로 Professional Investor는 NZ\$ 1,000만(최소 실제 투자 금액이 NZ\$ 200만)을 투자해야 하고, IELTS 4.0점의 영어 점수와 4년 이상의 사업 경력이 필수임. 나이 제한은 최대 64세이고, 4년 중 매년 30%이상 뉴질랜드에 반드시 체류해야 함.
- 마지막으로 General Investor-Point System은 현재의 투자이민법과 크게 다르지 않음. 4년 동안 NZ\$ 250만 투자(Semi-Active), IELTS 5.0점, 최소 정착 자금 NZ\$ 100만, 최소 4년 이상의 사업 경력, 매년 40% 이상의 뉴질랜드 체류가 필요하며 나이 제한은 54세임.

또한 장기 사업 비자의 수혜 등에 힘입어 초등학교 저학년 조기 유학생이 9,000여 명에 이르는 등 한때 유학 대상국으로도 인기를 얻었으나 이민 심사 강화로 사실상 장기 사업 비자 발급을 중지함으로써 주요 유학 대상국으로서의 인기를 잃고 있다.

2) 주택 구입 방법

주거 희망 지역의 부동산 업자를 접촉하여 매물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며 많은 교민들이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의사소통이 불편한 경우 도움이 된다. 구매를 원하는 주택의 등기 상황이나 건축물 허가 상황 등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해야 한다.

등기소와 City Council에서 유료로 사본을 입수할 수 있으며 그 사본에 무허가 증축 또는 미등기 상태, 금융권의 지당권 설정 등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가급적 열람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택 구매에는 수수료가 없으나 판매에는 주택가의 약 4~5%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주택 구매 시에 등기는 직접 해도 무방하나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사는 사전 조사, 조건부 구매 및 쌍방간 대금 지불, 권리 등을 정리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구매 후 등기 이전 또는 조건 이행 등의 정리는 본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변호사에게 의뢰도 가능하다.

또한 임대로 계약하여 장기 또는 단기로 거주할 수도 있는데, 시내 APT와 가까운 거리의 일반 주택들도 임대 시장에 나와 있어 선택의 여지가 다양하다. 통상 임대료는 주간 단위로 결정되어 2주마다 지불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개 수수료는 1주 임차료에 해당되는 금액에 상당한다. 보증금(BOND FEE)은 2~4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 기관에 예치하여 일방(대부분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다.

집기와 가구를 구비한 임대 주택을 구할 수도 있으나 임대료는 더 비싸며, 입주와 전출할 때 가구와 집기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망실이 있을 경우 변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통상 입주 때 부동산 업자만 만나거나 집주인과 대면할 경우에 입주 전의 하자에 대해 미리 서면이나 사진으로 통보하여 이주할 때 억울하게 수리 비용을 지불(원상복구)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택의 구매 때도 하자에 대해서는 미리 수리를 요청하거나 그에 상당한 비용을 거래 가격에서 할인받는 지해도 필요하다.

3) 계좌 개설

은행 계좌 개설은 은행의 영업 시간에 언제라도 가능하며 임대 주택의 임대료, 전화, 전기, 가스 등의 사용료를 자동 이체할 수도 있다. 국민은행 오클랜드 지점(전화: 64-9-366-1000)을 이용하면 외국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그 외 ASB, BNZ, Westpac, National 및 ANZ 등의 은행에도 교민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4) 전화 신청

각 지역의 Telecom 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 즉시 번호를 부여 받고 최소한 2~3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2009년에는 당일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시기가 단축되었다.

요금은 임차료로 일정액이 부과되고 사용량에 따라 이용료가 정해지는데, Auckland지역 내에서 일반 전화를 이용해 일반 전화 라인으로 통화할 경우 사용료가 무료이다. 그러나 일반 전화로 시외 전화, 국제 전화 또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 경우 각각 정해진 사용료가 부과된다.

일반 전화로 국제 전화를 이용할 경우 비싼 요금이 부과되는데, 한국 식품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전화카드를 이용할 경우 NZ\$ 50짜리로 20시간 정도 통화할 수 있다.

5) 비품 구입 및 사용

한국에서와 달리 뉴질랜드의 단독 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면 정원 손질 도구와 사다리 등 예상하지 못했던 집기가 많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가전 제품은 플러그 모양이 우리와 달라 어댑터를 사용해야 하며 240V로만 전력이 공급되어 100V용은 변압기를 필요로 한다.

TV와 VTR은 한국과 방송 방식이 달라 구입 시 NTSC 와PAL 방식 겸용의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각 주택 지역별로 있는 SHOPPING MALL에 유명 체인점들이 입주하고 있어 가전 제품, 집기 및 가구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자동차는 한국과 달리 운전석이 반대쪽에 있는데 자동차 전문점, 수입상, 지역의 자동차 매매장 또는 경매장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교민 잡지의 웹사이트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매매되기도 한다.

나. 자녀 교육 여건

1) 기본적인 여건

한국인들은 저학년 영어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 이민 또는 유학하는 사례가 많은데, 초등, 중등 및 고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학군제에 따라야 한다. 즉 주거지에서 근접한 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므로 입학시킬 학교 주변에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

2000년 이후,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은 아시아계 이민이 늘면서 학군이 좋은 지역의 주택은 학군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기타 여건이 동등한 주변에 비해 10% 이상 높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국립 및 공립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으로 입학금과 수업료가 무상이지만(유학생 제외) 의무적으로 약간의 기부금(고교의 경우 약 US\$ 600)을 내도록 되어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상당한 학비(약 US\$ 12,000)와 기부금을 지불해야 한다.

2) 뉴질랜드 교육의 개요

뉴질랜드는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로 국제적인 평판을 얻고 있으며 해외 유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 정보와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교육 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나뉘며 입학 시기는 우리와 유사하게 2월이나, 학교 학년제는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

유치원은 만 4세까지이며 만 5세에는 6년제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중학교는 2년, 고등학교는 5년이며 의무 교육이고, 대학교는 종합 대학교(University)와 교육 대학, 기술 단과 대학인 전문 대학(Polytechnics)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종합 대학교는 뉴질랜드 전국에 7개에 불과하며 모두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국립 대학교이다.

전문 대학은 직업 교육과 기술 훈련을 가르치는데 전국에 25개가 있다.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며 초보적인 교육에서부터 전문적 학위 과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 과정은 1년 미만도 있고 4년에 걸친 학사 과정도 있으며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전문 대학도 있다.

교육 대학은 전국에 4개뿐이며 유치원 및 초등 및 중등교사를 모두 양성하며, 2~4년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3) 유아원/유치원

만 1세부터 Day Care Centre, 만 2세부터 Play Centre에서 탁아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형화된 교과 과정은 없고 주로 놀이를 통하여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리도록 지도한다. 만 3세부터는 유치원(Kindergarten)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4) 초·중등학교

어린이들은 만 5세부터 초등 교육을 시작하여 13세쯤 중학교(FORM 3) 과정에 입학한다. 다양한 학과목을 제공하는 400여 개의 국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하이스쿨 혹은 칼리지)가 있다.

5) 대학 교육

종합 대학교는 모두 국립 대학교로 Auckland, Hamilton, Palmerston North, Wellington (이상 북섬), Christchurch, Canterbury, Dunedin(남섬)에 있으며 학교마다 특색을 지닌다.

전공과 학위 등급에 따라 3년에서부터 6년까지의 과정이 있다. 17~18세의 고등학교 과정인 Form 7을 마치고 대학 입학 자격 시험(Bursary)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원하는 학교의 학과에 입학 신청서를 제출, 서류 전형과 인터뷰를 거쳐 입학하게 된다.

□ 뉴질랜드 종합 대학

- University of Auckland(Auckland): 15,000명의 재학생을 자랑하는 뉴질랜드 최대 대학
- The University of Waikato(Hamilton): 과학, 기술, 경영학 우수
- Massey University(Palmerston North): 농업, 원예, 수의학 우수
- Victoria University(Wellington): 행정 수도인 Wellington에 있으며 행정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우수
- Lincoln University (Canterbury): 원예와 농업 우수
- University of Otago (Dunedin): 의학, 치의학 등 건강과학 우수
- The University of Canterbury(Christchurch): 공학 부문 우수

다. 현지 생활 여건

1) 생필품 조달 여건

식품이나 생활 용품은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SHOPPING MALL의 생필품 체인점(PAK'N SAVE, BIG FRESH, WOOLWORTHS, COUNT DOWN, NEW WORLD, WAREHOUSE, K-MART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야간에도 생필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요즈음은 이전과 달리 공휴일 없이 매일(OPEN 7 DAYS) 개장하는 곳도 많아 한국과 별 다른 점이 없다.

상당수 매장들이 저녁 7시경 문을 닫지만 24시간 내내 영업을 하는 매장도 있다. 24시간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체인점은 COUNT DOWN이 대표적인데 식품을 중심으로 팔고 있다.

2) 한국 식품 조달 여건

한국인이 필요로 하는 채소, 양념 및 기타 국산 제품은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나, 가격은 국내보다 약간 비싼 편이다.

한국으로부터 다양한 포장 김치가 수입되고 있으며, 오uckland에는 김치 제조업체도 있다. 오uckland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매점)이 수십 개 존재하며 라면을 비롯하여 고추장, 된장 등 대부분의 한국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Hamilton, Wellington, Christchurch, Rotorua 등에는 각각 3~5 곳의 한국 식품점이 있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오uckland보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식당의 경우도 지역별로 많이 산재해 있는 데다 오uckland 시내에만 약 50여 개 이상의 한국 식당이 있어 원하는 종류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시내 일부 지역(Queen Street)에는 밀집된 한국 식당가도 형성되어 있다.

3) 레저 여건

지역별로 축구 경기장, 스포츠 센터, 수영장, 테니스장 등 사회체육 시설을 갖추고 있어 스포츠 활동을 하기에 좋으며, 요소요소에 산재한 골프장은 저렴한 값에 이용할 수 있다.

가까운 숲이나 공원, 해변 등지에서 산책, 피크닉, 자전거 타기 및 요트, 윈드서핑, 제트스키, 낚시 등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캠프 장소도 많아 레저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4) 치안 상태

치안 상태는 양호하다. 그러나 대부분 퇴근 후에는 외출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한밤중에 차량이 없이 단독으로 외출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매 가구당 2대 정도의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최근 낮에도 빈집을 터는 좀도둑이나 소매치기가 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치안 상태가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 특성(최상의 기후 여건을 가진 12~3월이 관광 시즌)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사계절이 한국과 반대이다. 온대성 기후이면서도 4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해양 국가로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크지 않고 온화하다.

그러나 하루에도 4계절이 있다고 할 정도로 날씨가 변덕스러운데, 봄과 여름 및 가을은 괜찮으나 겨울(6~9월)에는 체감 온도가 실제보다 낮다. 이 기간은 우기와도 겹치는 데다 일반 주택은 한국처럼 난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균 최저 기온이 영상10도 안팎인데도 불구하고 집안 내부에서는 땀 속까지 시리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전기 히터나 가스 히터를 사용해야 할 정도이며 한국인의 경우 전기 장판 이용이 보편화 되어 있다.

9월 하순 이후 점차 날씨가 온화해지고 쾌적해져 아침 저녁 체감 온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생활 및 현지 출장 등에 아주 쾌적하다.

또한 매년 9월 말부터 익년 4월 초까지는 일광 절약제가 시행되어 낮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제조업이 취약하고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뉴질랜드는 통상 오후5시경 업무가 종료되어 여가 활용 및 취미 생활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준다.

뉴질랜드는 서안 해양성 기후로 서풍이 불고 북동에서 남서의 방향으로 산맥이 위치해 있어 동서의 강수량 차이가 매우 크다. 최대 상업 도시인 오클랜드는 겨울에도 기후가 온화한 편에 속하며 북섬 하단에 위치한 수도 웰링턴은 바람이 몹시 강하다. 넬슨 지역은 일조 시간이 가장 길고, 남섬의 중심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는 연간 강수량이 가장 적은 특성을 보여 준다.

2) 주요 도시의 기후

구분	여름(1월)		겨울(7월)	
	최저	최고	최저	최고
WHANGAREI	15.4	24.4	7.2	15.1
AUCKLAND	15.3	23.3	7.1	14.5
HAMILTON	12.8	23.8	3.9	13.6
ROTORUA	12.7	23	3.1	12.1
GISBORNE	13.6	24.9	4.6	14.1
NEW PLYMOUTH	13.6	21.8	5.6	13.3
PALMERSTON	13.4	22.4	4.7	12.5
WELLINGTON	13.4	20.3	6.3	11.4
NELSON	13	22.4	1.6	12.4
CHRISTCHURCH	12.2	22.5	1.9	11.3
TIMARU	11.3	21.1	1.2	10.1
MILFORD SOUND	10.4	18.9	1.3	9.1
QUEENSTOWN	10.7	22.6	0.1	8.2
DUNEDIN	11.5	18.9	3.2	9.8
INVERCARGILL	9.4	18.6	0.9	9.5

자료 <http://www.niwa.cri.nz/edu/resources/climate/maxairtemp>

3) 출장에 필요한 추천 복장

6~8월은 뉴질랜드의 겨울로 비가 많고 날씨가 쌀쌀하여 여행이나 외부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낮에는 해가 있어 따뜻하기도 하나, 출장 시에도 추,동복을 준비해 오는 것이 필수적이다.

11~3월은 여름으로 낮에는 기온이 높고 자외선이 매우 강하나 밤에는 선선한 정도이기 때문에 출장 추천 복장으로는 춘추복이면 무난하다. 자외선이 강해서 선글라스도 필요하다.

일조 시간이 가장 긴 12월 말에는 저녁 9시까지도 여가 및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Mission Bay 등 시내 인근의 주요 지역은 인파로 붐빈다.

나. 시차/근무 시간

1) 한국과의 시차(+3 또는 +4)

한국과의 시차는 KST+3(또는 4)시간이며 한국 시각 12:00가 뉴질랜드 시간으로 15:00 (또는 16:00)이다.

이는 매년 9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익년 4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일광 절약제(Daylight Savings)를 실시하기 때문인데, 이 기간에는 한국과의 시차가 4시간이 된다.

2009년 4월 첫째 주 일요일 - 2009년 9월 마지막 주 일요일: 시차 3시간
2009년 9월 마지막 주 일요일 - 2010년 4월 첫째 주 일요일: 시차 4시간

2) 근무 시간

사기업은 물론 관공서의 근무 시간은 09:00~17:00가 일반적이고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은행의 경우 근무 시간은 업무 특성상 09:00~16:30이다. 상가는 10:00~18:00까지 영업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으나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이들이 영업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인 Countdown 등은 소재 지역에 따라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생겨나는 등 다양한 업태가 등장하는 추세이다. 일반 슈퍼마켓도 20:00 또는 21:00까지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 회계 연도는 7월1일부터 익년 6월30일까지이며 기업의 회계 연도는 4월1일부터 익년 3월 31 일까지이다. 예외적으로 일부 기업은 1.1~12.31 혹은 7.1~6.30을 택하기도 한다.

근무 시간

관청	월-금	08:30 - 16:30
은행	월-금	09:00 - 16:30
상업권	월-금	09:00 - 17:00
대형쇼핑몰 (Westfields)	월, 화, 수/금/토	09:00 - 18:00
	목	09:00 - 21:00
	일	10:00 - 17:30

다. 도량형

1) 미터법의 사용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어 한국과의 차이는 없으며 전기 규격은 한국과는 다른 240V 50HZ 3 PIN 플러그를 표준 규격으로 하고 있다.

넓이	평	에이커(acre)	제곱야드(yd²)	제곱피트(ft²)	아르(a)	제곱미터(m²)
1 m²	0.3025	0.00025	1.196	10.7683	0.01	1
1 a	30.25	0.02471	119.6	1076.83	1	100
1 ft²	0.0281	0.00002	0.111	1	0.00093	0.09287
1 yd²	0.2529	0.00021	1	9.0038	0.00836	0.83614
1 cre	1224.2	1	4840.04	43578.7	40.4693	4046.93
1 평	1	0.00082	3.95367	35.598	0.03306	3.3058

길이/거리	마일(mile)	야드(yard)	피트(feet)	인치(inch)	미터(m)	센티미터(Cm)
1 cm	0.000006	0.010936	0.0328	0.39370	0.01	1
1 m	0.000621	1.093613	3.2808	39.3701	1	100
1 inch	0.000016	0.027778	0.0833	1	0.0254	2.54
1 feet	0.000189	0.333333	1	12	0.3048	30.48
1 yard	0.000568	1	3	36	0.9144	91.440
1 mile	1	1760.00	5280.0	63360.1	1609.4	160935

대부분의 호텔이나 모텔에 비치된 전기 플러그는 모양이 달라 한국의 제품은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플러그를 구입하여 부착해야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플러그는 공항 매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한국	뉴질랜드
전기규격	220V용 둥근 핀(Pin)	230V용. 3개의 일자Pin
사용 시	110볼트 AC 소켓(20와트)을 제공하고 있어 사용이 가능하나 이외의 다른 전기 제품을 사용할 경우 멀티볼트가 아니라면 어댑터나 변압기가 필요함	

라. 출입국/비자

1) 여권 및 비자

뉴질랜드 여행에는 입국 후 출국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함. 양국간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3개월 미만 체류 희망 시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데(뉴질랜드 공항에서 90일 방문 허가 스탬프를 찍어 줌), 이 경우에는 필히 돌아갈 (Return) 항공 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한국 또는 제3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취업 비자 없이 취업할 수는 없다. 무비자(방문 비자)로 3개월 입국 시에는 3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할 수 있다.

비자 종류로는 방문 비자 외에 학생 비자, 취업 비자, 뉴질랜드로 이민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영주권 비자 등이 있으며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이나 이민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보다 상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전화:(02)730-7794)

2) 까다로운 세관 검사

뉴질랜드는 농업과 목축업 등 1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환경보호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농산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병균이나 해충 등의 전염을 방지하고 유해한 물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출장자나 여행객들이 소지한 식품과 동식물 관련 제품에 대해 세관 검사를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빈번히 문제가 되는 사례로는 골프 신발과 식품(멸치, 미역) 등이며 골프화의 경우 사전에 물로 세척해서 흙이 묻어 있지 않으면 된다.

식품이나 목공예 제품, 골프화 등은 도착 전 기내에서 신고 대상 물품이 있다고 신고하고 검사를 받는 것이 편리하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려다가 X-레이 검사에서 적발되면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능장 심사 및 벌금 부과)까지 당하게 된다.

반입 물품 허용 한도는 담배 200개피(1보루), 위스키 1,125ml 등으로 제한되는데, 보다 자세한 정보는 뉴질랜드 검역청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국 시에 내던 공항세(NZ\$ 25)는 2008년 8월부터 항공료에 포함, 별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3) 무비자 입국 주의 사항

우리나라와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사전 준비 없이 입국하려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 시에는 귀국 항공권과 충분한 유효 기간의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입국 신고서 작성 시 여행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일정의 현금이나 카드 등을 제시하여 관광객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테러 분자의 입국을 봉쇄하는 등 자국 안보를 위해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여행 경비가 충분치 못해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사증 협정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입국 목적을 관광이 아닌 비즈니스로 하거나 짐을 직접 꾸리지 않았다고 표기하면 오해를 살 여지가 많다. 또한 왕복 항공권이 없는 경우나 카드나 충분한 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채 화려한 복장을 하는 경우 등도 오해를 살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마. 환율/환전

1) 화폐 단위

뉴질랜드 달러(NZ\$)로서 NZ\$ 1은 100 Cents이고, 주화는 10,20,50Cent와 1, 2Dollar 등이 있으며 지폐로는 5, 10, 20, 50, 100 Dollar가 있다.

2) 환율

98년 이후 아시아 경제권의 금융 위기, 세계 경제와 자국의 경기 침체, 경상수지 적자, 미국 달러 강세로 뉴질랜드 달러화 가치가 하락했으나, 2002년 초부터 경기 회복과 6년만의 무역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평가절상 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까지 5년 여간 70% 이상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졌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경기침체의 여파로 한때 급락하여 2009.4월에는 미 달러 대비 0.55수준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최근 다시 상승하여 2009년 9월 14일 기준 0.74를 나타내고 있다.

구분	2005년 말	2006년 말	2007년 말	2008년 말	2009.8월
환율(US\$: NZ\$)	0.68	0.70	0.77	0.57	0.67

자료: 뉴질랜드 중앙은행

3) 환전

환전은 평일 영업 시간에 일반 은행과 공항 환전소 및 주요 변화가의 사설 환전소 등에서 환전이 가능하고 공항이나 호텔에서는 항상 가능하다.

뉴질랜드에서는 US\$ 10정도만 되면 거의 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많이 소지할 필요가 없으나 식품점이나 식당 등에서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적지 않으므로 일정 수준의 현금을 지닐 필요가 있다.

환전 환율은 은행, 공항 환전소, 변화가의 사설 환전소 중 은행의 환율이 가장 유리하나 (크게는 10% 정도의 차이가 있음), 은행 소재지를 잘 모르는 비즈니스 출장자의 경우 US\$ 100 정도의 소액은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신용카드 사용

뉴질랜드에서는 모든 주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에 개인 비밀번호(PIN number)가 부여되었다면 전국의 은행이나 쇼핑센터에 있는 자동 현금 출납기(ATM)에서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 여행자 수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바. 교통/통신

1) 교통 및 통신 개요

인구가 많지 않고 국토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데 반해 개인 교통 수단이 주류를 이뤄 상대적으로 대중 교통 수단은 미흡하다. 남섬과 북섬을 연결하는 항공, 해상, 철도 그리고 육상편의 공급이 많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현재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500여 만대에 이르고 있어 1가구 2차량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개인 교통 수단의 확산은 대중 교통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지난 2003년 7월에는 오클랜드 지역 열차, 버스, 페리 등 전 교통 수단을 하나로 묶는 브리토마트(Britomart) 재건 사업이 완료되어 열차 문화권을 형성하고 교통, 휴식 및 쇼핑에 걸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용자 수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동전화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양대 이동통신사인 New Zealand Telecom과 Vodafone 가입자 수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역시 중요한 통신 수단으로 가구당 인터넷 보급률은 87%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나 물건을 구매하는 비율이 21%에 달하고 있다.

2) 뉴질랜드 항공 노선

뉴질랜드는 매년 9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익년 4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일광 절약제(Energy Savings)를 실시하고 있어 한국과의 시차가 기존의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되므로, 경계 기간에는 항공기의 출발 및 도착 시간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뉴질랜드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26개 사로 국영 AIR NEW ZEALAND와 호주의 Qantas, 일본 JAL 그리고 CX, Singapore Air Line 등이 있고 대한항공(직항)도 운항하고 있다.

관광객이 많은 관계로 연중 항공권 구입이 어려운 지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전에 티켓 확보를 위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현지 관광 여건이 좋은 여름(보통 11-3월)에는 티켓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직항인 대한항공보다 조금은 저렴하나,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 OSAKA공항과 Narita공항을 경유하는 Air New Zealand항공편은 매일 출발하는 날짜와 시간대가 다르므로 스케줄 확인이 필수이다.

Air New Zealand 항공 스케줄 조회 화면



The image shows the Air New Zealand website's flight search interface. At the top is the Air New Zealand logo. Below it, a text prompt says: "Planning your trip is easy. Simply tell us where you would like to go from and to, and when you'd like to travel." The main search area is titled "» Search Timetables". It includes radio buttons for "Return" (selected) and "One Way". The "From:" field is set to "Tokyo-Narita Airport (NRT)" and the "To:" field is set to "Auckland (AKL)". The "Depart:" date is "Sat 19 Sep" and the "Return:" date is "Wed 30 Sep". At the bottom, there are radio buttons for "All flights" and "Direct flights only" (selected), and two buttons: "Daily Timetables" and "Weekly Timetables".

주: <http://airnewzealand.innosked.com/default.aspx?countrycode=JP&language=EN>

뉴질랜드 내 Auckland와 남섬의 대표 도시 Christchurch간 항공편은 하루 30여 편이 운행되고 있으며, 요금은 약 편도 NZ\$ 300 (One Way)정도이다. 그러나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3배까지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예약은 www.airnewzealand.co.nz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예약으로 가능하다.

3) 우리나라와의 교통(항공편)

인천과 오클랜드를 연결하는 노선에 대한항공이 1993년부터 취항하고 있으며, 2003. 10. 28부터 아시아나 항공이 인천-오클랜드 간 신규 취항을 개시하였으나 2005. 3. 1부로 아시아나 항공이 운항을 중단했다.

□ 대한항공

매일 1편씩 운항하였으나, 최근의 고유가 파동으로 비수기 기간 중 주 5회로 운항 횟수를 줄였다. 2008.11월부터는 주 7회 운항으로 정상화할 예정이었지만, 특별한 변동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확한 항공 스케줄은 <http://www.koreanair.com> 사이트를 확인하면 좋다.

- 인천->오클랜드: 월, 수, 금, 토, 일 출발 17:10 분 도착 07 시:30 분+1 일
- 오클랜드->인천: 월, 화, 목, 토, 일 출발 09:10 분 도착 18:10 분

4) 국내 교통

□ 택시

오클랜드는 많은 택시 회사가 영업하는 곳으로 택시 이용이 편리하다. 그러나 일부 대형 호텔 등을 제외하면 대기중인 택시가 없다. 모두 콜택시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인데, 요금은 택시 회사별로 차량에 따라 상이하나 기본 요금 NZ\$ 2.00 + KM 당 NZ\$ 1.95 정도이다. 대표적인 콜택시 호출 전화번호(오클랜드)는 300-3000 이며 별도의 팁은 주지 않아도 된다.

공항에서 시내 중심지까지 택시로 이동할 경우, 도로 상황 및 이용 택시 회사에 따라 시간과 요금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약 NZ \$80 정도가 소요되며 시간은 교통 상황에 따라 약 35-60분이 소요된다.

□ 버스

버스는 출퇴근시의 러시아워를 제외하고는 배차 간격이 보통 30~60분으로 운행 횟수가 적고 운행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 여행자의 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운 바 택시 이용이 권장된다.

□ 공항 버스

뉴질랜드의 모든 공항에는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따라서 숙소 또는 여행지의 중심 상가 지역에서 공항 셔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셔틀버스 회사는 유통성을 발휘해 승객의 숙소까지 운행해 주기도 한다.

□ 철도

뉴질랜드의 선로망은 별로 많지 않지만, 철도를 이용한 관광 코스에는 환상적인 코스가 몇 개 있는데, 도로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을 기차를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5) 국제 통화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통화: 00(국제 전화번호)+82(한국 국가번호)+2(서울 지역번호)+ 해당 전화번호 (예: KOTRA 본사: 00+82+2+3460-7114)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통화: 001 또는 002+64(뉴질랜드 국가번호)+9(지역번호)+해당 전화번호 (예: 오클랜드 무역관 1) 한국통신: 001 + 64 + 9 + 373-5792)

한국으로의 수신자부담 전화(콜렉트 콜)는 DACOM과 한국통신을 이용할 수 있으며 DACOM은 0009-080-상대방 전화번호를 순차적으로 누르면 되고 한국통신은 자동 Collect Call(000-982-4번을 누르고 지역번호와 전화번호)과 고국 교환원 전화번호(000-982-0)를 누른 후 교환원을 통해 전화하는 방식이 있다. 직통 전화는 000-984-지역번호와 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한국인 유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저렴한 국제전화 방법은 국제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현지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는 월드폰, 이코노폰(문의 및 신청: 366-0533)을 비롯하여 SMART LINK(문의 및 신청: 309-6360) 등 다수가 있다. 오클랜드-서울 통화가 분당 10센트 미만으로 저렴하며 US\$ 10~20 정도의 전화 카드를 구입하면 보통 8~10시간 통화가 가능하다.

6) 국내 통화

공중전화는 주로 전화카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화 카드를 미리 구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치된 부스가 적어 상대적으로 전화 이용이 아주 불편하며, 일부는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전화카드는 Pharmacy, Chemist 또는 Phone Card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소매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공항이나 시내 중심가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와 동전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으며 요금은 통화당 70센트이다.

공중전화 사용은 먼저 수화기를 들고 시내 통화는 전화번호 버튼을 누른 후 전화기 전면 설치된 스크린의 메시지에 따라 동전이나 카드를 집어넣으면 통화가 가능하다.

7) 인터넷 사용 환경

한국에서 노트북을 가져갈 경우 뉴질랜드 방식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하면 대부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5성급 호텔의 대부분 객실 내에는 인터넷 라인이 연결되어 있다.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시내에 산재한 인터넷 카페(주로 한국인이 운영하며 한국어 버전도 공급)가 많이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다. (1시간 US\$ 1.5~2)

8) 특사 운송 회사 가격 및 사용 방법

가장 손쉽게 특사 운송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국에 지점망을 가지고 있는 NZ Post를 이용하는 것이며 TNT Express 등도 이용할 수 있다

□ NZ Post 연락처

- 웹사이트: www.nzpost.co.nz
- 가까운 지점 문의 무료 전화번호: 0800 113 355
- 국제 특사운송 문의 무료 전화번호: 0800 736 353

□ 가격

Weight	Australia (Zone A)	South Pacific (Zone B)	East Asia & North America (Zone C)	UK & Europe (Zone D)	Rest of World (Zone E)
0.5kg	\$20.40	\$36.40	\$41.70	\$42.60	\$52.10
1kg	\$26.20	\$38.00	\$52.80	\$52.30	\$70.40
Over 1kg	Documents over 1kg are charged the same as merchandise pricing. Prices are available on the Rate Finder .				

주: 1kg 내외의 서류 발송 시 (1~5일 이내 도착)

사. 호텔/식당

1) 호텔 여건

뉴질랜드는 관광 국가로 호텔이나 모텔이 많아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으며 가격도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뉴질랜드 달러화가 지속적으로 절상되고 있어 어느 정도 부담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성수기에는 호텔 이용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는데 11~3월 중에는 시내 호텔 예약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광객이 넘쳐나는 경우가 많다.

2) 필수적인 예약 관행

높은 인건비로 인해 호텔 예약은 통상 현지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는 것이 관행이며 일정 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무역관도 현지 출장자나 업무 유관 방문객들에게는 여행사에 예약을 의뢰하고 카드로 직접 이용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거나 모텔 등 숙박 시설을 직접 접촉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3) 참고 및 유의 사항

관광 시즌(11~3월)이나 주요 행사가 있을 때에는 호텔 예약이 곤란하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비수기(계절 요인)를 감안하여 숙박 시설을 크게 확충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일례로 2002년도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아메리카 컵 요트 대회 때에는 호텔 등 대부분의 숙박 시설의 예약이 불가능해서 비즈니스 출장 및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광 성수기는 물론 대형 행사 때에도 매번 반복되고 있는데, 일반 출장자는 시 외곽의 호텔이나 민박, 모텔 등 다른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모텔 등 대부분의 숙박 시설이 예약이 불가능(NO VACANCY)하거나 최악의 경우 객실 요금을 2배 정도 비싸게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기간을 피하거나 부수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4) 호텔 예약 안내

한국의 여행사가 많아 이들을 통해 예약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예약도 일반화되어 정보 입수 및 예약 자체가 어렵지 않다. 많은 기관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호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예약도 처리하고 있다. 여행 정보 및 호텔 정보를 제공하는 곳인 AA센터(www.nz-accommodation.co.nz)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금은 여행사마다 다르고 관광 성수기인 11~3월이 비싼 편이다. 구체적인 요금은 상황에 따라 10~20% 내외에서 변동 가능함을 참고해야 한다.

주요 호텔 및 연락처

호텔명	주소
	연락처
The Stamford	Lower Albert St., Auckland TEL : (64 9) 309 8888, FAX : (64 9) 379 6445
Rendezvous Hotel	Cnr. Mayoral Dr. & Vincent St. Auckland TEL : (64 9) 366 3000 FAX : (64 9) 366 0121
Sky City Hotel	Cnr Victoria St., & Federal St., Auckland TEL : (64 9) 363 6000 FAX : (64 9) 363 6010
Hyatt Regency	Cnr. Waterloo Qdt. & Princess St., Auckland TEL : (64 9) 355 1234 FAX : (64 9) 303 2932
Langham	Cnr. Symonds St. & City Rd., Auckland Tel : (64 9) 379 5132 Fax : (64 9) 377 9367
Plaza Int'l	148-176 Wakefield St., Wellington Tel : (64 4) 473 3900 Fax : (64 4) 473 3929
Parkroyal Hotel	Cnr Grey & Featherston St. Wellington Tel : (64 4) 472 2722 Fax : (64 4) 472 4724
Copthorne Plimmer	Cnr Boulcott St & Gilmer, Wellington Tel : (64 4) 473 3750 Fax : (64 4) 473 6329
Millennium Hotel	14 Cathedral Square, Christchurch Tel : (64 3) 365 1111 Fax : (64 3) 365 7676
Holiday Inn City Centre (구: Centra Hotel)	Cnr Cashel & High St, Christchurch Tel : (64 3) 365 8888 Fax : (64 3) 364 5143

호텔명	주소
	연락처
Crown Plaza Christchurch Hotel	Cnr. Kilmore & Durham Sts., Christchurch Tel : (64 3) 365 7799 Fax : (64 3) 365 0082
Millennium Hotel	Cnr Frankton Rd. & Stanley St. Queenstown Tel : (64 3) 441 8888 Fax : (64 3) 441 8889
Gardens Parkroyal	Cnr Earl St & Marine Parade, Queenstown Tel : (64 3) 442 7750 Fax : (64 3) 442 7469
Novotel Queenstown	Cnr Earl St and Marine Parade, Queenstown Tel : (64 3) 442 7750 Fax : (64 3) 442 7469
Millennium Hotel	Cnr Eruera & Hinemoa St., Rotorua Tel : (64 7) 347 1234 Fax : (64 7) 348 1234
Novotel Rotorua	Lake End Tutanekai St. Rotorua Tel : (64 7) 346 3888 Fax : (64 7) 347 1888
Rydges Hotel	272 Fenton St., Rotorua Tel : (64 7) 349 0099 Fax : (64 7) 349 0900

뉴질랜드 여행객들은 호텔 외에 모텔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뉴질랜드 모텔은 주방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가족 단위 여행 시 많이 찾고 있다. 성수기에는 빈 방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모텔 연락처

Rock Field	100 Rockfield Rd. Greenlen. Auckland Tel: (64 9) 579 4525 Fax: (64 9) 579 7403
Aristotles	Corner Link Dr & Sunnynook Rd. Auckland Tel: (64 9) 444 1177
Takapuna Golf Lodge	27 Ocean View Rd. Northcote Tel: (64 9) 419 8080
Northland Motel	232 Main North Rd. Papanui .Christchurch Tel: (64 3) 352 8478
Rotorua Gate Motel	1322 Hinemoa St. Rotorua Tel: (64 7) 348 1623
Tauranga GardenCourt	44 Sixteenth Avenue. Tauranga Tel: (64 7) 578 5858

5) 식당 개요

현지 식당은 NZ\$ 10 내외의 FAST FOOD식당부터 최고급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24시간 영업하는 일부 카페를 제외하고 영업 시간은 11:30-15:00(점심) 및 18:00-21:00 이나 영업 시간이 연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교포 및 한국 여행객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 음식점이 Auckland에 50여 개, 시외 지역에 20개 이상 있으며, Queen Street 끝에 20여 개의 한국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어 교포 및 비즈니스 출장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어 현지 활동에 불편함이 없으나 중국, 일본 식당 등과 비교해 볼 때 고급 음식점이나 연회석을 갖추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일부 음식점만이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

가격은 한국보다 약간 비싼 수준이며 특히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로 2~3년 전보다 가격 부담이 더해졌다. 식당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생이거나 한국에서 여행 및 출장을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교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태의 식당 및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있어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 식당의 개점이 매우 활발한 편이다.

6) 주요 식당

한식은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나 대형 음식점이 없이 분식점 형태에서 중소도시의 일반 식당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자들이 늘어나던 지난 몇 년과는 달리 유학생 및 이민자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오클랜드 시내는 물론 외곽 지역에도 한식 및 중식 식당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식당

식당 명	전 화	소재지 및 특징
미 가	09-377-9131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편리
낙 원	09-369-1900	시내에 위치하고 연중 무휴 개업
The Koreans	09-355-6770	뷔페 식당으로 해변에 위치
부뚜막	09-309-5060	476 Queen St. City 감자탕, 아구찜, 찜닭, 칼국수, 냉면
왕릉갈비	09-444-0092	43-51 Downing St. Glenfield. 갈비, 영양탕, 감자탕, 굴밥
전주식당	09-309-2775	4 Upper Queen St. City, BBQ 뷔페

중국 식당

식당 명	전 화	소재지
Ding How	09-358-4838	55 Albert Street
Grand Harbour	09-357-6889	Viaduct Harbour 18-28
Sunshine	09-302-3322	39 Market Place. Viaduct Harbour
Dragon Boat	09-379-6996	7-37 Elliot St. City
New Orient	09-379-7793	20 Elliot St. City
취선루	09-444-9987	20 Link Dr. Glenfield ,한국인 경영
태화루	09-488-0166	25 Shakespear Rd. Millford, 한국인 경영
야루끼	09-838-4463	385 Great North Rd. Henderson, 한국인 경영
이화원	09-489-1800	72-78 Hurstmere Rd.Takapuna, 한국인 경영

일본 식당

식당 명	전 화	소재지
ARIAKE	09-379-2377	Cnr Albert & Quay Streets
DAIKOKU	09-302-2432	48 Quay St
NIKKO	09-309-8266	239 Queen St., 한국인 경영
GENJI	09-360-5050	26 Ponsonby Rd., 한국인 경영
Katsura	09-366-3000	Cnr Mayoral Drive & Vincent Street
Soto Japanese Garden Restaurant	09-360-0021	17 St.Mary's Rd. Ponsonby 10 NZ Restaurants 순위에 오름
Zipangu	09-376-4565	45 Ponsonby Road. Auckland
Wagamama	09-359-9266	1 Courthouse Lane.CBD

European 식당

Sails	09-378-9890	WestHaven Marina. Westhaven Drive
Soul	09-356 -7249	Viaduct
Aquamatta	09-302-0478	2A/48 Courthouse Lane
Toto	09-302-2665	53 Nelson Street
Orbits	09-363- 3000	Skycity Hotel
Angus Steak House	09-379-9815	35 Albert St.City
Mecca	09-358-1093	85 Customs Street West
Harbourside	09-307-0556	1 st Floor. Ferry Bldg. Quay St
Pompino	09-309-3559	Cnr Quay & Queen St.
Prego	09- 376-3095	226 Ponsonby Rd.Ponsonby

아. 관공서 관행

1) 모범적인 행정 조직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는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행정 조직 체계 및 운영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01년 부패 지수가 핀란드에 이어 2위에 오를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은 물론 기업 등 사회 전체가 부정이나 비리 없는 깨끗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의 모범적인 행정 개혁을 단행한 국가로서 행정편의주의나 관료주의 성향도 찾아보기 힘들고 행정 조직 구성 및 운영이 잘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부정이나 부패와는 거리가 먼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깨끗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전자 정부 구현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004년 9월 발표된 미국 브라운 대학 평가에서도 뉴질랜드는 전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12위에 선정될 정도로 정부의 행정 업무에 대한 인터넷 이용이 활성화 되어 있다.

2) 높은 담당자의 재량권 및 자율권

업무 담당자의 재량권 및 자율권이 높으며 상급자도 업무 담당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업무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식적이고 순리적인 업무 처리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고 예측이 가능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면담은 미리 약속을 해야 하며 (창구 업무 제외) 청렴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업무상으로 뇌물을 주는 것은 금물이다. 뇌물을 줄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인 앞의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국가로서 차별이나 시혜를 보기 힘들며 정보도 항상 공개되어 있어 민원 소지는 극히 낮다.

자. 공휴일

1) 휴일 지정 방식

2009년도 뉴질랜드의 휴일은 아래 표와 같으며 Waitangi Day와 Anzac Day는 요일에 관계 없이 그날이 휴일이다. 나머지 공휴일은 금 또는 월요일로 지정되는데 신청과 성탄절 휴가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로 이월되고 있다.

역사가 짧아서 전반적으로 공휴일은 많지 않은 편이며 특히 하반기에는 휴일이 3일에 불과해 10월 말 노동절과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전부이다. 그러나 주 5일제 근무와 정시 퇴근이 일반화되어 있어 노동 강도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2009년도 공휴일

공휴일 명	공휴일	공휴일 내용
New Year's Day	1월1일-1월2일	신정 연휴 2일
Auckland Ann Day	1월 26일	오uckland/ 북섬 기념일
Waitangi Day	2월 6일	영국-마오리 원주민 조약 체결일
Good Friday	4월10일	부활절
Easter Monday	4월13일	부활절
ANZAC Day	4월25일	현충일
Queen's Birthday	6월1일(첫째 월요일)	영국 여왕 탄신일
Labour Day	10월 26일(넷째 월요일)	노동절
Christmas Day	12월25일	크리스마스
Boxing Day	12월26일 또는 28일	크리스마스 익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로 이월

주*: 이외에 도시별로 공휴일이 다른 Anniversary Day가 있는데, 오uckland는 1.26일이었음

2) 출장 지양 기간

전반적으로 공휴일이 많지 않아 특별한 출장 지양 기간은 없으나 부활절 연휴에는 관공서, 은행, 일부 대기업 등에서 일주일 전후의 휴가 기간을 가지며 사기업의 경우 2주일 정도 휴무임을 고려해야 한다.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의 한달 기간 동안은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 연시인 관계로 대부분의 기업, 관공서가 휴무에 돌입하는 바, 의사 결정권자들의 접촉은 물론 정상적인 업무 추진도 어렵다.

이외에 지역별 공휴일은 해당 지역만 하루씩 기업 및 공공기관이 휴일인 경우도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차. 여행 시 유의 사항

1) 전반적인 유의 사항

뉴질랜드는 유럽 성향의 선진 국가로서 치안도 안정되어 있고, 관광 국가로 외국인이 여행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안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외국인 만큼 사고를 당하거나 건강의 이상이 생기는 등 여행 도중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대사관, 영사관 및 기타 한국 관련 기관의 연락처나 비상 연락망을 확보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본적으로 현지인들의 성향을 파악해 둘 필요도 있다.

2) 의약품 구입 및 병원 활용

간단한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은 의사 처방 없이도 Chemist나 Pharmacy에서 구입할 수 있고 관광지나 호텔에서는 구급 병원 및 약국의 연락처를 수록한 관광 안내 책자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사고가 날 경우 국가에서 사고 보험으로 치료해 주지만 손해 배상 제도는 없음을 참고하길 바란다.

3) 국민 성향 및 생활 태도

영국인의 국민성을 이어 받아 보수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성격이 느긋하고 친절하나 자존심이 강하다. 개인주의 의식이 생활화되어 있으며, 질서 의식이 강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교통 질서나 줄서기 등을 위반하면 전혀 무관한 시민 또는 행인으로부터 지적을 당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친절하지만 금전에 관한 한 외국인이 불리한 경우가 많다. 교통 사고를 당하면 사진을 찍어 두거나 증인을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은 한국과 별로 다르지 않다.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악수를 하며, 아주 친밀한 사이거나 현지인인 마오리족들이 아니고는 뺨에 키스하는 경우는 드물다.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큰 실례이며, 상대방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예의이다.

Mr. Miss 등은 공식적인 경우에 지칭되며, 일반적으로는 First Name만을 부른다.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관계로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인사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초면에도 불구하고 반갑게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한 후 사기 범죄나 강도를 하는 사례도 드물기는 하지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른을 공경하는 관습은 없으나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되며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대화나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 심지어 여자 아이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뉴질랜드식 영어 발음이 알아 듣기 힘들 때도 있으므로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말해 달라고 부탁해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 공식 행사가 아니면 정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초대를 받았을 때에는 공식 또는 비공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선물 제공 및 현지인 대응

선물은 한국을 알릴 수 있거나 대표할 수 있는 물품이면 좋으나, 뉴질랜드는 Manuka 꿀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 식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 한국의 특산품이 많이 선호되지는 않는다.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영어 책자, 비디오테이프, 한국 노래 CD 등이 실용성 면에서는 뒤쳐질지 모르나 생동감 있고 색다른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지리적인 여건과 경제적인 교류 등을 감안하여 아시아와의 유대를 강조하고는 있으나 아시아 이민이 늘어나면서 반아시아, 반이민 감정을 가진 현지인이나 유럽 이민자들을 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도 좋다.

5) 현지 기관 접촉

공공 기관 및 일반 기업 모두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담당자의 판단 하에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급자는 담당자의 결정을 최대한 수용한다. 매우 친절하지만 속도는 빠른 편은 아니며, 공무원의 청렴도가 세계적인 수준(2003년도 핀란드에 이어 2위)인 것에서 나타나듯이 모범적인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업무상 뇌물 제공 등을 통한 편의 기대는 통하지 않는다.

카. 유용한 연락처

1) 행정 수도의 별도 위치

주뉴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노광일)은 행정 수도인 웰링턴(Wellington)에 소재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Auckland)에는 대한민국 대사관 오클랜드 분관(분관장 김영걸)이 소재해 교민 및 여행객들을 위한 영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KOTRA를 비롯한 여타 주요 기관 들도 이곳에 위치해 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만여 명의 교민 대부분도 오클랜드에 체류하고 있고 기타 웰링턴과 크라이스트처치 등 3대 도시에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다.

2) 유용한 연락처

유용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으며 한인 사회와 관련해서는 현지에서 발행되는 교민 신문(인터넷 서비스 동시 제공)인 뉴질랜드타임즈, 한국신문 등을 활용하면 주요 기관 연락처는 물론 필요한 생활 정보 다수를 입수할 수 있어 편리하다.

□ 공공 기관

기관 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R.O.K.)	Wellington	64-4)473-9073
대사관 분관(Consular Agency)	Auckland	64-9)379-0818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Auckland	64-9)373-5792
대한항공(Korean Air)	Auckland	64-9)914-2000
국민은행(Kookmin Bank)	Auckland	64-9)366-1000
재 오클랜드 한인회	Auckland	64-9)489-5700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	Christchurch	64-3)348-2766
뉴질랜드 한국교민회	Wellington	64-4)123-123

□ 긴급 연락처(현지기관)

- 화재, 경찰, 구급: 111
- 교통 정보: 0900-33-222(Transit NZ)
- 전화번호 문의: 018 (건당 사용료 50 센트 부과)

타. 관광 명소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자연 조건과 기후 그리고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한 천혜의 관광 국가로서, 우리나라 관광객도 연간 12만 명에 이르고 있어 뉴질랜드의 5대 관광 국가에 들 정도로 인기 있는 지역이다.

관광 국가이자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어서 한국에서도 많은 여행 상품이 있고 이곳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관광 명소나 여행에 필요한 정보는 쉽게 입수할 수 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북섬의 오클랜드와 로토루아(Rotorua)에서는 1박 정도를 하고 일정의 상당 부분을 남섬에서 보내는 관광 일정을 보낸다.

1) 북섬

□ 노스랜드/ 베이오브 아일랜드 (Northland/Bay of Islands)

- 파이히아(Paihia)
 - 품격 높은 숙박 시설과 특유의 고급 해산물 음식점이 즐비한 Paihia 는 베이 오브 아일랜드의 자랑이다. 베이 오브 아일랜드의 거점으로 사용되는 파이히아에서는 유람선이나 보트, 선박 등을 이용한 여행이 유명하다.
- 와이탕이(Waitangi)
 - 와이탕이 조약([hyperlink-about nz](#))으로 유명한 와이탕이는 뉴질랜드의 역사에 깊은 관련이 있다. 1840 년 이곳에서 원주민인 마오리족과 영국 왕실이 조약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해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가 된 바 있다. 조약의 체결 장소였던 트리티 하우스(Treaty House)는 이 지역의 명소이다. 여러 마오리 부족을 대표하는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전통 마오리 공회당(마라이: Marae)도 있다.
- 러셀 (Russell)
 - 뉴질랜드 최초의 수도이며 파이히아에서 배편으로 20 분 정도 소요된다. 19 세기 초 선원들과 상인들의 특이한 행동으로 한때 남태평양의 지옥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러셀은 정착 초기의 건축 양식을 지닌 건물들과 전경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 케리케리 (Kerikeri)
 - 파이히아에서 북쪽으로 약 23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감귤 및 키위 농장과 공예품의 중심지로 도자기나 직물과 같은 특산품으로 유명하다.

베이 오브 아일랜드는 낚시, 다이빙, 요트, 카약, 돌고래와의 수영 등 바다에서 여러 가지 레저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금빛 모래 사장은 휴식을 취하며 선뜩하기 아주 좋다.

대부분의 유람선 크루즈는 파이히아 항에서 출발하며 아름다운 섬들과 여러 종류의 바다 새들, 바다표범, 돌고래를 볼 수 있는데 유람선 크루즈는 종류에 따라 1시간에서 종일 코스가 있다.

□ 오클랜드(Auckland)

뉴질랜드 최대 도시로 다양한 관광 소재가 있는 상업 도시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관광 대상이 있다. 아래와 같은 관광 코스를 총괄하여 반나절 혹은 하루 관광이 가능한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 오클랜드 주변의 관광지

- Auckland Domain
- 전쟁기념 박물관
- 식물원(winter Garden)
- 동물원(Auckland Zoo)
- Western Springs Lakeside
- One Tree Hill
- 콘월 공원(Cornwall Park)
- 오클랜드 천문대 (Auckland Observatory)
- 에덴 동산(Mt. Eden)
- 지하 수족관(Kelly Tarton's Underwater World & Antarctic Encounter)
- 홉슨 부두 해상 박물관 (Hobson Wharf Maritime Museum)
- 아트 갤러리 (Auckland City Art Gallery)
- 파넬 스트리트 (Parnell St)
- 레인보우 엔드 어드벤처 공원(Rainbow's End Adventure Park)
- 마운트 이든 (Mt Eden)
- 데본 포트 (Devon Port)
- 타마키 드라이브(Tamaki Drive)
- 해상페리(Ferry)

○ 반나절 관광

- 하버 브릿지(Harbour Bridge) →에덴동산 →전쟁박물관(마오리쇼 매일 11:00,13:30)
→로즈가든(Rose Garden) →지하수족관 →미션베이 해변도로(총 3 시간 소요)
- 버스 투어: 매일 09:00 - 16:00 1 시간 간격으로 출발 (NZ\$ 36)
- 예약 전화: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 로토루아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로토루아(마오리 언어로 Roto-호수, Rua- 2번째 의 합성어임)는 화산 지대 중심으로 온천, 간헐천 등이 유명하다.

- 당일 투어: 매일 08:00 오클랜드 Downtown Terminal Air Terminal 출발하여 저녁 7시에 돌아오는 당일 일정이 있다. (NZ\$ 135)
- 예약 전화: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 와이토모 동굴

동굴 속 천장에 가득 찬 수만 마리의 개뿔벌레가 빛을 발산하고 있어 한밤의 은하수를 보는 것과 같은 감동을 안겨 준다.

- 당일 투어: 매일 08:00 에 오클랜드 Downtown Air Terminal 에서 출발하여 저녁 7 시에 돌아온다. (와이토모 동굴과 로토루아 동시 관광 NZ\$ 145)
- 예약 전화: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추천 당일 코스

로토루아	아그로돔 양쇼-와카레와레와 마오리 민속촌 및 간헐천-진흙열탕- 로토루아 호수- 유황 온천욕	어른NZ\$105 어린이NZ\$89
베이오브	카우리 조림지 - 왕가레이 폭포 - 돌고래 크루즈 - 와이탕이 전망대 - 카우리 시계 박물관	어른NZ\$ 129 어린이NZ \$109
코로만델해안	템즈금광체험 투어 - 와카테테베이 - 엘가리무 베이 - 스론톤베이 - 타푸 - 코로만델 - 워터웍스	어른NZ\$129 어린이NZ\$109

추천 1박 2일 코스

로토루아/타우포 타조농장	타우포후카폭포-번지점프장-타우포호수-지열발전소-타조농장-아그로돔 양쇼- 와카 마오리 민속쇼-레드 우드 삼림욕-가버먼트 가든- 로토루아 호수- 유황 온천욕	어른NZ\$ 249 어린이NZ\$199
베이오브 아일랜드	카우리 조림지 - 왕가레이 폭포 - 돌고래 크루즈 - 와이탕이 전망대 - 90 마일 비치	어른NZ\$259 어린이NZ\$229
코로만델	타이루아-조개잡이-Hot water Beach-위티항아-쿡스비치-크루즈탑승-기암절벽의 머큐리섬 투어- 코로만델-워터웍스-타푸-와이오무-와카타베이-스론톤베이-앵거리무베이- 템즈	어른NZ\$259 어린이NZ\$229

○ 기타

타우포 호수, 뉴플리머스, 코로만델 반도, Bay of Island 등이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Downtown Air Terminal(전화: 64-9-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로 하면 된다.

2) 남섬

□ 크라이스트처치

크라이스트처치는 남섬 동해안 캔터베리 평야 중앙에 위치한 뉴질랜드 3위이자 남섬 최대 도시로 인구는 약 30만 명이다. 고딕 양식의 대성당, 웅장한 Saint Paul 등 유럽풍의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전원 도시(Garden City)이다.

□ Mt. Cook

Southern Alps라고 불리는 3,767M의 Mt. Cook과 3,000M 급의 수 많은 봉우리 및 태즈먼, 마티슨, 프란츠조셉, 폭스 등의 빙하(헬기 관광 가능), 푸카키 호수, 테카포 호수, 퀸스타운, 밀포드 사운드 등 수려한 경관을 관광하고 스키를 즐길 수 있다.

□ 퀸스타운(Queenstown)

19세기 초 금광이 발견되기 시작하여 개발되었다. 근처에는 수준 높은 설비와 규모를 자랑하는 일부록 골프 리조트가 있으며 클린턴 대통령이 라운딩 한 것으로 명성이 높다.

뉴질랜드 관광의 메카로 불리며 아름다운 와카티푸 호수를 끼고 있으며 리마커머블스 산맥을 마주하고 있다. 어드벤처 스포츠의 중심지로 급류타기, 제트보팅과 글라이딩은 물론 낙하산 타기, 글라이딩 등을 즐길 수 있다.

또 4군데의 번지 점프 장소가 있으며 Kawarau Bungy Centre가 원조를 이루고 있는데 높이는 43미터에서 102미터까지 다양하다. 겨울에는 스키를 즐길 수 있으며 대표적인 스키장으로는 코로넛 피크, 리마커블 스키장 등이 있다.

□ 기타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풍의 건축물을 자랑하는 교육 도시 Dunedin과 최남단의 도시 Invercargill 등의 관광지가 있다.

- 한국인 여행사
 - 뉴질랜드 호주 투어: 64-9)307-1234
 - 좋은 여행사: 64-9)300-3720
 - Family 관광: 64-9)625-2525
 - 레인보우 관광: 64-9)377-1061
 - 하나투어: 64-9)300-3040

이외 약 10개 이상의 여행사가 있으며 이들 여행사를 통하면 호텔 및 다른 예약들을 기준 가격보다 저렴하게 예약이 가능하다.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오클랜드 식품전(The Food Show)

- 개최국가/도시 : 뉴질랜드/오클랜드
- 개최주기 : 매년
- 최초개최년도 : 1995년
- 개최기간 : 2009.07.30 ~ 2009.08.02
- 개최규모 : 5000 m²
- 전시장 : ASB Showgrounds (Auckland Showgrounds)
- 참가국수 : 1개국
- 개최국 참가업체수 : 없음
- 외국참가업체수 : 300 개업체
- 개최국 참관객수 : 35,000 명
- 주요 참가국 : 자국업체와 다국적 기업등 외국기업이 다수 참가.
- 전시분야 : 식품.음료, 유통.요식산업
- 주최기관 : Dunkley Ltd
- 전시품목 : 음식, 음료수 관련 모든 제품. 음식 재료, 향신료, 부엌용품, 건 강식품, 와인 등

□ 오클랜드 호텔용품 전시회(Hospitality NZ)

- 개최국가/도시 : 뉴질랜드/오클랜드
- 개최주기 : 매년
- 최초개최년도 : 1980년
- 개최기간 : 2009.08.30 ~ 2009.09.01
- 개최규모 : 6700 m²
- 전시장 : ASB Showgrounds (Auckland Showgrounds)
- 참가국수 : 10개국
- 개최국 참가업체수 : 150개업체
- 외국참가업체수 : 없음
- 개최국 참관객수 : 10,000 명
- 주요 참가국 : 캐나다, 미국, 영국등의 정부기관 부스.
- 전시분야 : 가구.가구산업 , 보안.안전설비, 식품.음료, 청소.세탁.수선
- 주최기관 : DMG World Media (NZ) Ltd
- 전시품목 : Fine food, 음료수, 레스토랑 관련 용품, 식품기술, 호텔용품, 와인, 가구, 유흥용품등.

□ 2009 오클랜드 홈 쇼(Auckland Home Show 2009)

- 개최국가/도시 : 뉴질랜드/오클랜드
- 개최주기 : 매년
- 최초개최년도 : 1982년
- 개최기간 : 2009.09.01 ~ 2009.09.30
- 개최규모 : 12593 m²
- 전시장 : ASB Showgrounds (Auckland Showgrounds)
- 참가국수 : 7개국
- 개최국 참가업체수 : 630 개업체
- 외국참가업체수 : 6개업체
- 개최국 참관객수 : 72,000 명
- 주요 참가국 :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태평양 국가
- 전시분야 : 가구.가구산업 , 가정용품 , 건축.건설.빌딩, 냉난방, 실내.외장식.인테리어, 청소.세탁.수선
- 주최기관 : dmg world media (NZ) Ltd
- 전시품목 : home appliances, furniture, furnishings, building products, bathroomware or that new kitchen

□ 오클랜드 크리스마스 선물용품 전시회(Christmas Gift Fair)

- 개최국가/도시 : 뉴질랜드/오클랜드
- 개최주기 : 매년
- 최초개최년도 : 1990년
- 개최기간 : 2009.10.04 ~ 2009.10.06
- 개최규모 : 10000 m²
- 전시장 : ASB Showgrounds (Auckland Showgrounds)
- 참가국수 : 1개국

- 개최국 참가업체수 : 435 개업체
- 외국참가업체수 : 없음
- 개최국 참관객수 : 9,000 명
- 주요 참가국 : 뉴질랜드 및 외국 에이전트
- 전시분야 : 가정용품 , 공예품, 미술.골동품, 발명.특허.아이디어산업, 선물.판촉용품, 스포츠.레저용품, 완구.게임, 취미.기호.DIY
- 주최기관 : DMG World Media (NZ) Ltd
- 전시품목 : 아이디어 상품, 선물용품, 장식품 등 선물용품.

□ 뉴질랜드 실버박람회(뉴질랜드 실버박람회)

- 개최국가/도시 : 뉴질랜드/오클랜드
- 개최주기 : 매년
- 최초개최년도 : 2005년
- 개최기간 : 2009.10.09 ~ 2009.10.11
- 개최규모 : 200부스
- 전시장 : ASB Showgrounds (Auckland Showgrounds)
- 참가국수 : 8개국
- 개최국 참가업체수 : 121 개업체
- 외국참가업체수 : 13개업체
- 개최국 참관객수 : 10,000 명
- 주요 참가국 : 중국, 호주, 노르웨이, 섬나라, 유럽
- 전시분야 : 건강.복지.실버산업, 관광.여행, 교육.유학.훈련
- 주최기관 : Senior Events Ltd
- 전시품목 : 실버산업관련 제품 및 노후 인생설계, 자금, 여행등

□ 오클랜드 아동용품 전시회(Parents and Child Show)

- 개최국가/도시 : 뉴질랜드/오클랜드
- 개최주기 : 매년
- 최초개최년도 : 1994년
- 개최기간 : 2009.10.30 ~ 2009.11.01
- 개최규모 : 6000 m²
- 전시장 : ASB Showgrounds (Auckland Showgrounds)
- 참가국수 : 1개국
- 개최국 참가업체수 : 180 개업체
- 외국참가업체수 : 없음
- 개최국 참관객수 : 14,269 명
- 주요 참가국 : 뉴질랜드
- 전시분야 : 교육.유학.훈련 , 서적.출판물, 아동.유아, 완구.게임, 의류.패션.악세사리, 애니메이션.캐릭터.영화.게임
- 주최기관 : North Port Events
- 전시품목 : 아동 및 유아용품, 장난감, 학습용 교재, 이유식, 산후용품

□ 빅 보이즈 토이즈(Big Boys Toys)

- 개최국가/도시 : 뉴질랜드/오클랜드
- 개최주기 : 매년
- 개최기간 : 2009.11.13 ~ 2009.11.15
- 전시장 : ASB Showgrounds (Auckland Showgrounds)
- 참가국수 : 5개국
- 개최국 참가업체수 : 190개업체
- 외국참가업체수 : 4개국
- 개최국 참관객수 : 70,000 명
- 주요 참가국 : 호주, 영국, 캐나다
- 전시분야 : 스포츠.레저용품, 시청각, 자동차.이륜차, 조선.보트, 애니메이션.캐릭터.영화.게임
- 주최기관 : DMG World Media (NZ) Ltd
- 전시품목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상품 및 기술. 자동차, 오토바이, 오디오, 비디오, 제트스키, 보트 등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가. 정부기관

- 경제개발부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 주소: 33 Brown Street, PO Box 1473, Wellington
 - 전화: 64-4)472-0030, 팩스: 64-4)473-4643
 - 홈페이지: www.med.govt.nz
 - E-메일: info@med.govt.nz
- 해외투자실 (Overseas Investment Office, OIO)
 - 주소: 160 Lambton Quay, Private Box 5501, Wellington
 - 전화: 64-4)462-4490, 팩스: 64-4)460-0111
 - 홈페이지: www.oio.linz.govt.nz
 - E-메일: oio@linz.govt.nz
- 회사등기소 (Companies Office)
 - 주소: Northern Business Centre. Private Bag 92061, Victoria Street West, Auckland
 - 전화: 64-3)962-2602 (국제전화), 0508-266-726 (국내 무료전화), 팩스: 64-9)912-7787
 - 홈페이지: www.companies.govt.nz
 - E-메일: 홈페이지 Q&A 이용
- 무역진흥청 (New Zealand Trade & Enterprise)
 - 주소: Level 11, ANZ Centre, 23-29 Albert Street, PO Box 8680, Symonds Street, Auckland
 - 전화: 64-9)366-4768, 팩스: 64-9)366-4767
 - 홈페이지: www.nzte.govt.nz
 - E-메일: 홈페이지 Q&A 이용

- 투자진흥청 (Investment New Zealand)
 - 주소: Level 11, ANZ Centre, 23-29 Albert Street, PO Box 8680, Symonds Street, Auckland
 - 전화: 64-9)366-4768, 팩스: 64-9)914-9896
 - 홈페이지: www.investmentnz.govt.nz
 - E-메일: info@investmentnz.govt.nz

나. 주요 도시 시청

- 오클랜드 시청 (Auckland City Council)
 - 주소: 35 Graham Street, Auckland Central
 - 전화: 64-9)379-2020, 팩스: 64-9)375-3358
 - 홈페이지: www.aucklandcity.govt.nz
 - E-메일: 홈페이지 양식 이용
- 노스쇼어 시청 (North Shore City Council)
 - 주소: 1-7 The Strand, Takapuna, Private Bag 93500, North Shore City
 - 전화: 64-9)486-8600, 팩스: 64-9)486-8500
 - 홈페이지: www.northshorecity.govt.nz
 - E-메일: actionline@northshorecity.govt.nz
- 와이타케레 시청 (Waitakere City Council)
 - 주소: 6 Henderson Valley Road, Henderson, Waitakere
 - 전화: 64-9)836-8000, 팩스: 64-9)836-8001
 - 홈페이지: www.waitakere.govt.nz
 - E-메일: info@waitakere.govt.nz
- 마누카우 시청 (Manukau City Council)
 - 주소: 31-33 Wiri Station Road, Private Bag 76917, Manukau City
 - 전화: 64-9)262-5104, 팩스: 64-9)262-5151
 - 홈페이지: www.manukau.govt.nz
 - E-메일: 홈페이지 contact us 양식 이용
- 웰링턴 시청 (Wellington City Council)
 - 주소: 101 Wakefield Street, PO Box 2199, Wellington
 - 전화: 64-4)499-4444, 팩스: 64-4)801-3138
 - 홈페이지: www.wellington.govt.nz
 - E-메일: info@wcc.govt.nz

다. 뉴질랜드 전체 법규

- 국회사무국 (Parliamentary Counsel Office)
 - 주소: Level 12, Reserve Bank Building, 2 The Terrace, PO Box 18070, Wellington
 - 전화: 64-4)472-9639, 팩스: 64-4)499-1724
 - 홈페이지: www.legislation.govt.nz
 - E-메일: contact.pco@parliament.govt.nz

라. 해외투자승인 관련 법규

- 해외투자실: www.linz.govt.nz/overseas-investment
- 무역진흥청: www.nzte.govt.nz
- 투자진흥청: www.investmentnz.govt.nz

마. 노무 관련 법규

- 노동부
 - 주소: P.O. Box 3705, Wellington, New Zealand
 - 전화: 64-4)915-4400
 - 팩스: 64-4)915-4015
 - 홈페이지: www.dol.govt.nz
 - E-메일: info@dol.govt.nz

바. 조세 관련 법규

- 국세청
 - 주소: PO Box 761, Waikato Mail Centre, Hamilton 3240
 - 전화: 64-4)472-0030
 - 팩스: 64-4)890-4510
 - 홈페이지: www.ird.govt.nz
 - E-메일: nonres@ird.govt.nz